

FTA FOCUS

FTA 기회를 활용한 한류 브랜드 세계화

FTA EXPERTS

- 한-영 FTA의 주요내용과 기대효과
- 한-중미 FTA 발효 의미와 한국 기업들의 진출 시사점

FTA ANALYSIS

- 인도네시아의 신규 통상통관환경 및 FTA 활용
- 우리나라 FTA 체결현황 및 용어정리

FTA 품목분류

FTA 시대의 유탄(流彈) - 부분품 품목분류와 갑을(甲乙)의 문제

해외통관애로

베트남 통관환경 및 최근 베트남 진출기업 애로 사항



FTA TRADE REPORT

FTA 무역리포트

Vol. 04 December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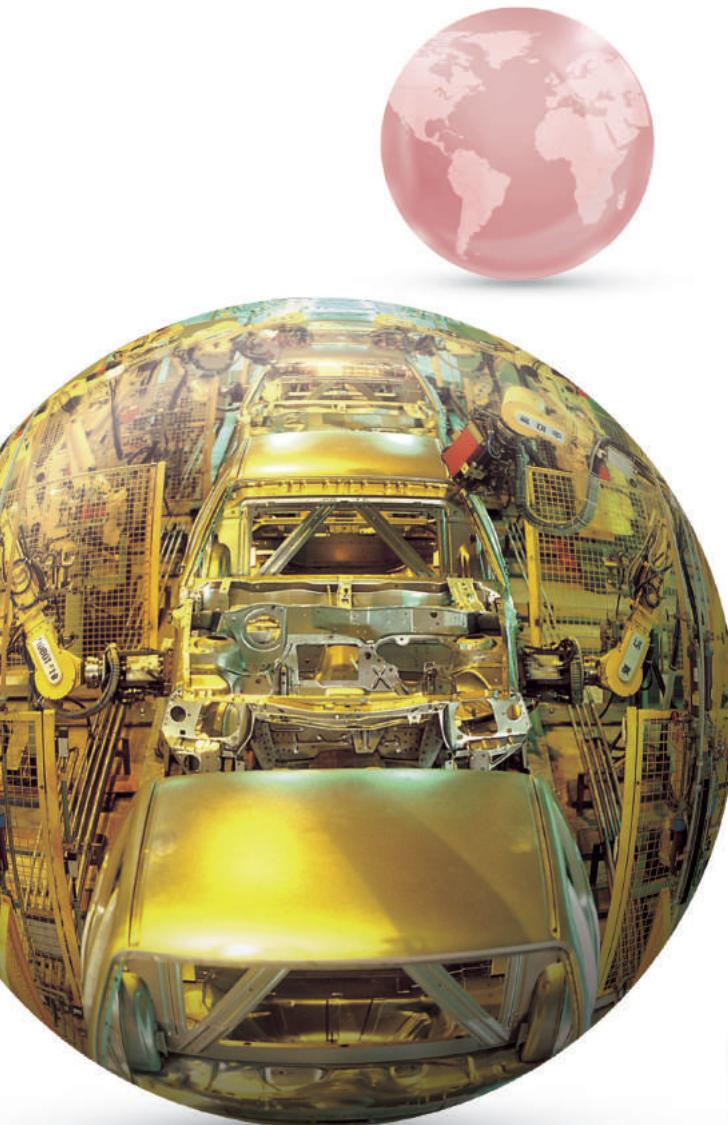
관세청
Korea Customs Service



국제원산지정보원
Korea Institute of Origin Information

발 간 등 록 번 호

11-1220000-000342-08



FTA TRADE REPORT

FTA
무역리포트

Vol. 04 December 2019



관세청

Korea Customs Service



국제원산지정보원

Korea Institute of Origin Information

Contents

FTA TRADE REPORT

Vol. 04 December 2019

FTA FOCUS

- 006 FTA 기회를 활용한 한류 브랜드 세계화
한충민 | 한양대학교 국제경영학과 교수

- 014 FTA 동향

- 035 FTA TOON

FTA EXPERTS

- 038 한-영 FTA의 주요내용과 기대효과
금혜윤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통상실 무역협정팀
전문연구원

- 048 한-중미 FTA 발효 의미와 한국 기업들의 진출 시사점
오성주 | 포스코경영연구원 수석연구원

FTA ANALYSIS

- 056 인도네시아의 신규 통상통관환경 및 FTA 활용
안소영 | 국제원산지정보원 활용연구팀 부연구위원
황선영 | 국제원산지정보원 활용연구팀 전문연구원
이주연 | 국제원산지정보원 활용연구팀 전문연구원

- 084 우리나라 FTA 체결현황 및 용어정리

김수정 | 국제원산지정보원 연구기획실 선임연구원

FTA 품목분류

- 092 FTA 시대의 유탄(流彈) -
부분품 품목분류와 갑을(甲乙)의 문제
김성채 | 기획재정부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
사무관

해외통관애로

- 106 베트남 통관환경 및
최근 베트남 진출기업 애로 사항
양승혁 | 베트남 관세관

FTA 100% 활용하기

- 120 한국-이스라엘 FTA와 기술 무역
최태훈 | 한-이스라엘 산업연구개발재단 사무총장

130 쉬어가는 페이지

FTA 지도

- 134 한눈에 보는 2019년 9월 기준 FTA 활용현황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활용

- 158 FTA 원산지상품의 관세품목분류 : 수산물
김용태 | 관세법인 탑스(대산지사) 관세사 /
컨설팅 & 연구본부장, 법학박사

활용하기 쉬운 FTA-PASS

- 170 영문 FTA-PASS 서비스
곽재권 | 국제원산지정보원 전산관리팀 팀장

원산지관리, 현장의 목소리

- 180 중소기업의 FTA 활용 역량강화를 위한
내부 프로세스 정립 팁(Tip)
신성훈 | 관세법인 드림 관세사

FTA TRADE REPORT



FTA FOCUS

FTA 기회를 활용한 한류 브랜드 세계화

한충민 | 한양대학교 국제경영학과 교수



한충민
한양대학교 국제경영학과 교수

FTA 기회를 활용한 한류 브랜드 세계화

우리나라가 지난 10여 년간 추진하여 온 FTA로 인해 해외 시장기회가 확대되어 온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 기회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는 것은 사실이다.

본고에서 FTA로 인해 시장 기회가 확대되고 있는 아시아 및 기타 개도국에서 한류 브랜드의 성공을 위한 전략과 과제를 소개하고자 한다.





1. 한류 브랜드의 세계화 과제와 추진 체계

한류를 활용하는 브랜드 세계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단순 한류 마케팅에 의존해서는 성공이 담보되지 않는다. 일부 기업은 한류 스타를 활용하여 한류의 반짝 인기에 편승하여 마케팅하는 경우가 많다. 일본의 한국 막걸리 열풍에서 보듯이 한류 인기가 시들해지면 시장 수요가 급격히 줄어들 수 있다. 한국농수산 식품유통공사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막걸리 수출은 2011년 5,300만 수출을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다. 2014년도에는 일본에의 수출이 전년 대비 30% 이상 격감하였다. 그 후, 일본에서의 막걸리 수요는 회복되지 않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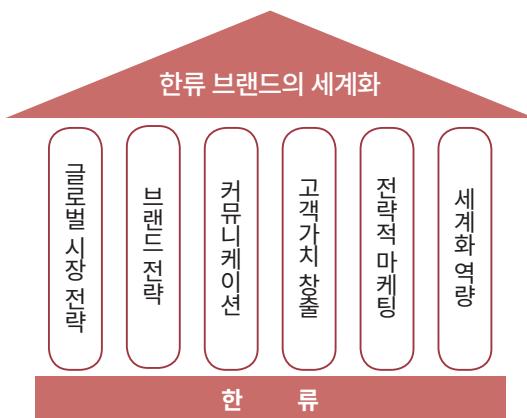
또한, 한류 마케팅에 의해 창출된 수요는 결국 현지 브랜드에게는 시장 진입 유인이 되어 경쟁 격화와 모방 브랜드에 의한 시장 잠식이 필연적으로 나타나게 된다. 예를 들면, 락앤락은 2000년대 중반 대장금의 인기 덕분에 큰 성공을 거두었으나, 최근에는 모방 제품의 범람으로 매출신장률이 떨어지고, 영업비용 증가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류를 활용하여 반짝 인기를 얻을 수 있지만, 이를 지속하는 것은 또 다른 노력이 필요하다. 초기 성공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단순한 한류 마케팅에서 벗어나 현지 시장에서 진정한 고객 가치를 창출하고 현지 마케팅 체제를 구축하여야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시장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한류 브랜드의 세계화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달성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과제를 수행해야만 할 것이다. 적어도 6개 분야의 과제가 실행되어야 하는데, 구체적으로 ① 적절한 글로벌 시장 전략, ② 한국 정체성을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브랜드 전략, ③ 한류 브랜드로서의 효율적인 커뮤니케이션, ④ 진정한 고객 가치 창출, ⑤ 한류 브랜드를 지원하는 전략적 마케팅, 그리고 ⑥ 한류 브랜드 전략의 집행에 필요한 세계화 역량 개발이 필요하다.

그림에서 보듯이 이들 요소들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이들이 종합적으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달성되어야 한다. 즉 모든 요소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진정한 고객 가치 창출이 없이는

【한류 브랜드의 세계화 실행 체계】



한류 브랜드 개발과 한류 커뮤니케이션만으로는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동시에 한류 브랜드 세계화를 지원하는 전략적 마케팅 체제와 필요한 역량 개발 없이는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기 어려울 것이다.



2. 한류 브랜드 세계화에 필요한 전략적 과제

한류 브랜드의 세계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주요 과제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한류 브랜드의 세계화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과제를 위에서 제시한 6개 요소별로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① 한류 브랜드의 글로벌 시장 전략

한류 브랜드의 세계화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기획해야 할 전략 과제는 “어느 시장으로 진출해야 하는가?” 일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한류 브랜드의 해외에서의 시장 기회 요인인 무엇인지를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우선 한류 브랜드의 해외 시장 기회는 한국 제품 이미지와 한류 확산 정도에 따라 다를 것이다. 구체적으로, 저소득 아시아 지역, 평균 연령이 낮은 국가, 그리고 중산층 규모가 크고, 성장률이 높은 국가에서 한류 브랜드의 성공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② 한류 브랜드 세계화를 위한 브랜드 전략

브랜드 전략에 있어, 우선 브랜드 정체성을 어떻게 가져가야 하는지를 결정해야 한다. 한류 브랜드가 성공하기 위해서 기업과 브랜드에 한국 정체성을 적극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우리 한류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경쟁우위는 단순히 한국 브랜드이기 때문일 것이다. 대표적인 예로 중국에 진출한 설빙이나 다양한 한류 패션 제품을 들 수 있다.

한국 브랜드가 한국적 정체성을 강조하는 대안으로 아시아 정체성 또는 오리엔탈리즘(orientalism)을 강조할 수 있다. 이 전략은 상대적으로 한국의 이미지가 확립되어 있지 않은 서구권에서 유효할 수 있다.

③ 한류 브랜드의 커뮤니케이션 전략

가장 흔히 사용하는 커뮤니케이션 방법은 한류 스타와 브랜드를 직접 연계하는 하는 스타 마케팅 전략이다. 한류 스타 마케팅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우선, 가장 전통적인 방법으로 한류 스타를 광고 모델로 직접 광고하는 방법일 것이다. 그 외에 한류 스타 광고와 함께 콜라보레이션(collaboration) 브랜드를 개발하는 방법과 한류 스타의 특집 화보에 제품을 협찬하는 방법도 흔히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한류 스타를 광고 모델로 사용할 때는 엄청난 비용이 발생한다. 최근 한류 마케팅이 보편화됨에 따라 모델 비용도 크게 오른

것이 사실이다. 한류 스타 마케팅의 저비용 대안으로 PPL (product placement)의 간접 광고와 온라인 홍보 방법이 있다. 특히 한류와 한류 브랜드를 선호하는 계층이 연령대가 낮고,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이들 계층의 소비자는 전통적인 미디어나 오프라인 방식 보다는 인터넷, 모바일 수단의 소통 방식에 익숙하다.

④ 한류 브랜드 세계화에 필요한 고객 가치 창출
 한류를 활용하여 반짝 인기를 얻을 수 있지만, 이를 지속하는 것은 또 다른 노력이 필요하다. 초기 성공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단순한 한류 마케팅에서 벗어나 현지 시장에서 진정한 고객 가치가 창출되어야 한다. 그러면, 어떠한 가치가 창출되어야 하는가?

우선, 한류 브랜드가 현지에서 성공하기 위해선 문화적 고객 가치를 창출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한류 브랜드가 현지에서 지속가능성이 있는 사업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기능적 가치도 창출되어야 할 것이다. 화장품의 예를 들면, 한국 화장품은 아시아 여성의 피부에 잘 맞고, 일본 화장품 보다 가성비가 높으며 이러한 소비자 인식이 한국적 가치의 기능적 우위에 해당한다.

⑤ 한류 브랜드 세계화를 지원하는 전략적 마케팅체제와 세계화 역량

기업들이 한류 브랜드 세계화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한국적 정체성과 가치를 바탕으로 적절한 브랜드 전략과 이를 뒷받침하는 마케팅 전략이 수립되어야 한다. 그러나



아무리 훌륭한 전략이 수립되어 있어도 이를 올바르게 집행하지 않으면 시장 성공으로 이어질 수가 없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한류 브랜드 세계화를 지원하는 전략적 마케팅 체제와 역량 확보가 이루어져 할 것이다.

기업에게 필요한 전략적 마케팅 체제로는, 적절한 브랜드 조직이 있어야 한다. 브랜드 세계화에 합당한 조직 문화, 조직 구조 및 관리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동시에 역량 확보를 위해 브랜드 세계화를 추진할 수 있는 인력이 확보되어야 하고, 인력관리 시스템도 마련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브랜드 세계화를 기획하고, 모니터하고, 평가할 수 있는 시장정보 시스템에도 투자 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업들은 FTA 체결로 발생하는 경제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FTA로 발생하는 시장 기회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현지에서 성공 가능성이 높은 제품을 발굴하여 효과적인 마케팅을 수행할 수 있는 전략과 역량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도 FTA 체결에 따른 제도 개선과 함께 사업 기회와 구체적인 활용 방안을 홍보하고, 기업의 세계화 역량 개발에도 적극 지원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FTA TRADE REPORT



FTA 동향

T

관세청, '수출입기업을 위한 성실신고 가이드북' 발간

관세청은 복잡한 수출입 통관 절차를 쉽게 이해 할수 있도록 돋는 '수출입 기업을 위한 성실신고 가이드북'을 발간하였다. 관세청은 어려운 무역환경 하에서 우리 수출입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사후 추징보다는 사전에 기업의 정확한 신고를 지원하는 방식에 중점을 두고 노력해왔으며, 그 노력의 일환으로 기업이 성실신고 의지가 있어도 복잡한 통관 관련 규정을 잘 알지 못해 부정확하게 신고하는 경우가 없도록 지원하기 위해 이 책을 발간하게 되었다.

이 책은 중소 수출입기업 등이 실무에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통관 흐름 단계별로 기업이 준비해야 할 사항, 유의할 점, 세관의 지원 제도를 가이드라인 형식으로 담았다. 통관 이전 단계에서 품목분류에 대해 미리 세관의 심사를 받는 방법, 자유무역협정(이하 FTA)을 활용하기 위해 준비할 사항이나 통관 이후 단계에서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요건, 관세조사를 받을 경우 유의사항 안내 등이 그 예이다.



【주요 내용】

- ① 통관 이전 단계 (품목분류, 과세가격, 원산지 등에 대한 사전심사)
- ② 통관 단계 (기업 및 개인통관 절차, FTA 활용방법)
- ③ 통관 후 기업지원 (관세환급, 중소수출입기업 협력지원 프로그램, 보세공장 제도 등)
- ④ 사후심사 및 납세협력 프로그램 (AEO, 납세도움정보 제공, 수입세액정산제 등)
- ⑤ 납세자 권리보호 (권리구제 절차 등)

이번 개정판에서는 기업이 가산세 절감,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납세협력 프로그램의 활용방법에 대한 안내와 함께, 국민의 관심이 높은 해외 직구 반품환급 방법, 면세점 이용시 주의사항 등 개인통관과 관련된 내용이 추가되었다.

이 책자는 전국 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 센터 등 민원부서를 통해 원하는 기업에 배포할 예정이며, 관세청 누리집, 전자국회 도서관 및 교보문고에 e-book을 무료 게시하여 국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게 하였다.

※ 관세청 누리집(www.customs.go.kr) > 관세행정안내 > 성실신고 지원

이 책에 대한 문의는 관세청 심사정책과 또는 가까운 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로 연락하면 된다. 한편, 관세청은 개별기업에

대해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납세도움정보 서비스’도 기존에는 기업이 관세청에 신청 하던 방식에서 10월 중 웹 기반 시스템을

구축하여 기업이 필요할 때 언제나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였다.

FTA 원산지증명서 검색 용이해져 협정상대국 FTA 특혜적용 거부시 적극활용 가능

수출기업이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특혜를 적용받기 위해 필수서류인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이하 C/O) 인터넷 조회가 수월해진다.

그동안 세관과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행한 C/O 조회를 위해서는 각 기관의 사이트에 각각 접속해 조회하는 불편함이 있었는데,

【간소화 주소】



Korea Customs Service

Authenticity of a certificate of origin

Reference No.
Please enter reference No only

Reference Code.
Please enter reference Code only

Check it out

【기존 주소】

Authenticity of a certificate of origin

ID (Reference No.)

PW (Reference Code)

You can verify the authenticity of this Certificate of Origin at www.customs.go.kr/co.html

관세청은 세관 사이트 조회만으로 통합 조회가 가능하도록 두 시스템을 연계하는 한편 주소도 간소화*했다고 밝혔다.

* (간소화 주소) <http://www.customs.go.kr/co.html> ⇒ 세관 및 상공회의소가 발급한 C/O 모두 조회 가능
(기존 주소) <http://www.customs.go.kr/kcshome/co/CertificateOfOriginViewNew.do>

우리나라 기업이 수출한 물품이 FTA 협정 상대국으로부터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상대국 세관에 제출한 C/O에 대해 진위를 의심받을 경우, 통합 조회 사이트를 활용해 상대국 세관 및 수입자에게 적극 대응할 것을 수출기업에 당부하였다. 협정 상대국 세관의 C/O 진위 의심 탓에 특혜관세 부여를 거부당하는 수출기업의 해외통관 애로사례는 연 평균 1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나아가,

관세청은 수입업체의 편의를 위해 수출상대국 C/O 사이트 회원가입 없이도 조회가 가능하도록 FTA 협정 상대국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8개국의 C/O 조회사이트를 관세청 FTA포털*(Yes FTA)을 통해 접속할 수 있으나, 일부 국가 사이트에는 회원가입 절차 등이 필요하다.

* 관세청 홈페이지 → 패밀리사이트 → FTA포털 → CO-PASS → 국가별 C/O 발급정보

이는 최근 일부 외국 수출자가 위조한 C/O로 우리나라에서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았다가 적발된 사례가 있어, 우리 수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외국 수출자의 C/O 검색을 보다 수월하게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국내 수출입 기업이 FTA를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법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수출입기업이 FTA 활용 과정에서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이 있는 경우 적극 의견을 제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관세청, 영문 원산지관리시스템 서비스 개시

관세청은 10월 28일부터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원산지관리 시스템(이하 FTA-PASS) 영문 서비스를 개시하였다.

* FTA-PASS : 2010년부터 관세청과 국제원산지정보원이 개발하여 무료로 보급하는 원산지관리시스템으로 중소기업 등이 협정별 원산지 판정, 원산지 증명서류의 발급과 보관 등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

영문 FTA-PASS 서비스를 이용하면 외국에서 한국으로 수출하는 물품의 원산지가 FTA 기준에 맞는지 판정하거나, FTA 특혜 신청에 필요한 원산지증명서를 수출자 스스로 발급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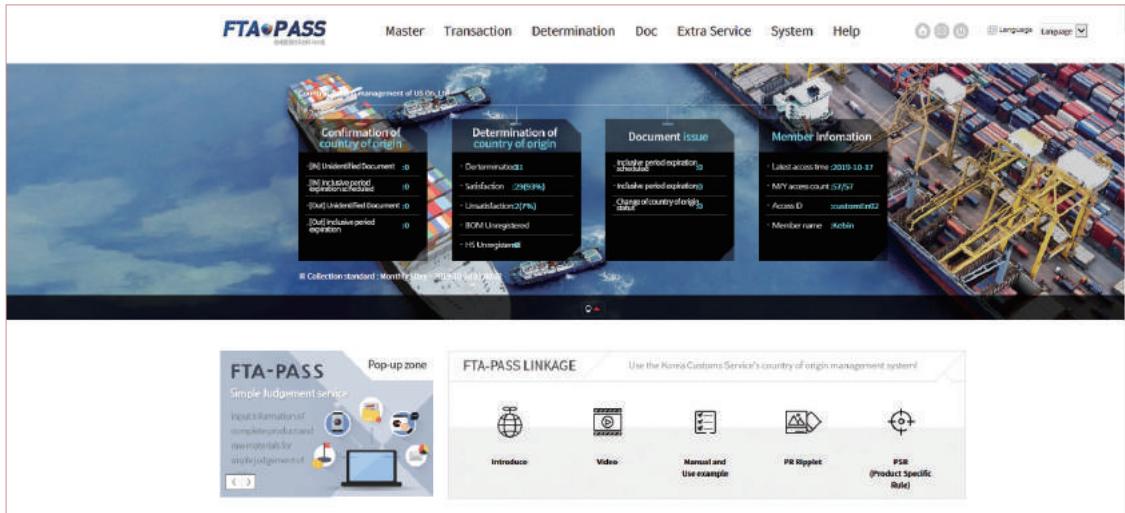
또한, 원산지 관리 시스템이 따로 없던 해외 진출 기업이 원산지 관리를 수월하게 할

수 있기에 FTA 활용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관세청은 그동안 FTA-PASS의 사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기능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왔다. 대표적으로 ‘맞춤형 FTA-PASS’의 개발로 회원가입 항목을 28개에서 7개로 축소하여 이용 절차를 단순화시켰다.

‘간편 ERP연계모듈’의 개발로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와 FTA-PASS 연계에 필요한 항목을 74개에서 40개로 줄임으로써 개별 기업이 부담해야 할 연계 비용을 2,000 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8백만원 가량 절감 시켰다.

【영문 FTA-PASS 화면】



특히 FTA-PASS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현재까지 2만 1천여 개 기업이 가입해 1억2천만건 이상의 원산지 판정을 수행했고, 28만여 건의 원산지 증명서류를 발급하는 등 효율적으로 FTA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수출입

기업에게 제공하고 있다. 이번 영문 FTA-PASS 서비스 등의 기능개선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FTA-PASS 홈페이지(www.ftapas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FTA 원산지증명서 정정발급 제도개선으로 통관애로 해소

관세청(청장 김영문)은 수출기업이 자유무역 협정(이하 FTA) 특혜를 적용받기 위한 필수서류인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이하 C/O)를 ‘정정발급’하는 경우 신규 발급번호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C/O 발급시스템을 개선·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C/O에 포함된 정보 중 일부를 정정하여 C/O를 다시 발급하더라도 ‘발급번호’는 최초 번호를 그대로 부여*해 왔다.

* C/O 정정발급의 경우 ‘발급번호의 체계 및 운영기준’ 등은 각국의 자율에 맡겨져 있음. 그간 우리나라는 동일 발급번호를 차택

그러나 C/O 정정발급시 신규 발급번호를 부여하고 있는 일부 아세안 국가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정정발급한 C/O의 발급번호가 수정 전 C/O와 동일하다는 이유로 정정 발급된 C/O의 진위나 유효성 여부에 의문을 제기하거나 특혜적용을 거부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해 왔다. 더욱이 우리나라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 2017년 1월부터 원산지 정보를 전자적으로 교환(EODES)* 해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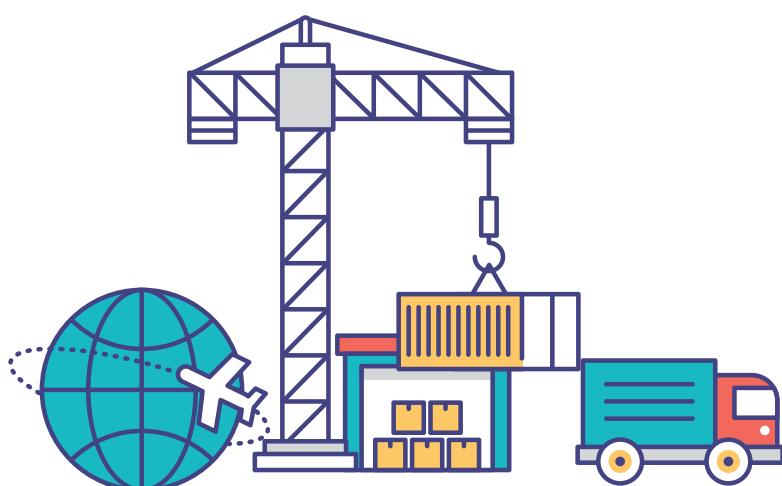
* 전자적 원산지정보 교환 시스템(Electronic Origin Data Exchange System)

우리나라 발급기관에서 정정 후 재전송한 C/O 중 일부가 중국측 시스템에서 정상적으로 수신되지 않는 등의 문제*(2017년 1,860건, 2018년 4,730건)가 있어 왔다. 이 또한 최초 발급 C/O와 정정발급된 C/O의 발급번호가 동일한데 기인한다.

* 중국은 ‘정정발급’의 개념이 없어, 현행 시스템 상 최초 수신된 (韓→中) C/O번호와 동일한 C/O번호(정정발급)가 재 수신시 오류 메시지 통보

관세청은 이번 조치로 그간 C/O 정정발급에 따른 우리 수출기업의 해외 통관애로 및 특혜 적용 거부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되는 것은 물론, 원산지정보의 전자적 교환과 관련한 걸림돌을 미연에 제거함으로써 향후 인도네시아, 베트남, 인도 등과의 EODES 구축 확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C/O 정정발급 개선방안은 2주간의 안내 및 홍보기간을 거쳐 11월 19일(화)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이와 관련한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이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관세청, 「수출기업 지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 개최

관세청은 지난 11월 6일 「수출기업 지원 우수사례 경진 대회」를 개최하고, 총 10편의 우수 사례를 선정하여 시상했다. 이번 경진대회는 지난 3월 6일 발표한 「관세행정 수출지원 종합 대책」에 따라 전국 30개 세관에 구성되어 활동중인 「수출기업 지원팀」의 중소기업 수출 지원 성공사례를 공유하고, 더 많은 기업이 정부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하기 위하여 개최되었다.

통관 및 기업지원 행정의 전문가로 구성된 서면심사위원회가 총 46편의 응모작에 대하여 기업지원의 「충실성」, 「창의성」, 「효과성」, 「노력도」 등 총 4개 분야로 엄정한 심사를 진행한 결과 총 10편이 본선에 진출하였다.

6일 개최된 발표대회에서는, 김영문 전 관세청장, 박창언 한국관세사회장, 서정일 국제원산지 정보원장, 반정식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해외직판처장 등이 현장에서 엄정히 심사한 결과, 최우수작 4편, 우수작 3편, 장려작 3편을 최종 선정하여 시상하였다. 관세청이 이번 경진대회에 제출된 총 46개 출품작에 사용된 단어를 행정안전부 Big Data 분석툴인 “혜안”을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수출」 · 「기업」 · 「지원」 단어가 월등히 많았다.

베트남 등 신남방국으로의 수출 거래선 다변화 지원, 다양한 수출지원 정책과 전문성을 보유한 유관기관의 협업 지원, 최근 급증하고 있는 전자상거래 수출 중점 지원, FTA 활용 · 수출통관 · 관세환급 등 관세행정 모든 분야를 망라한 종합지원 등의 관세청 수출기업 지원 활동의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행안부 Big Data 분석툴 “혜안”을 활용하여 출품작 46편의 단어 빈도 분석

각 세관별로 주요 수출지원 사례를 살펴보면, 인천세관은 세관-경기도-코트라 등과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개성공단 패쇄로 큰 손실을 입은 R사에 대한 동남아 신흥 시장인 베트남으로서 최초 수출(약 40만불)과, 휴대용 미세먼지 측정기를 제조하는 H사의 미국, 터키 등으로의 최초 수출(약 5만불) 성공을 지원하였다.

서울세관은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전자상거래 수출기업을 중점적으로 발굴·지원하며, 싱가포르 등 신남방국 시장에 헤어, 화장품 등을 전자상거래를 통해 판매하는 G사에 대해 관세행정 지원은 물론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해외 규격인증, 판로개척 등을 포괄적으로 지원하여, 해외 진출국을 대폭 확대(2개→9개)하고 전년 대비 1,700배가 넘는 수출성과(금액기준)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부산세관도 지역 기업, 대학이 함께 참여한 「전자상거래 연구회」를 발족하고, 민·관 협력 전자상거래 교육체계 마련, 유관기관 협동으로 온라인 마케팅 설명회 개최 등 기업-대학-세관간의 3각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전자상거래 무역 활성화에 매진한 결과, 3개 내수기업의 신규 수출판로 개척(20만불)에 성공하였다.

광주세관은 광주광역시 등 18개 수출 유관 기관이 참여하는 수출지원거버넌스 협의회를

운영하며, 각종 수출 관련 정보와 지역에서 제공하는 74개 수출지원 사업을 통합하여 안내하는 통합포털 구축을 추진하였다. 또한 중기청, 코트라, 무역협회 등과 합동으로 현장지원단을 구성하여 지역의 수출유망 핵심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실시하였다.

평택세관은 안성시 주관 시장개척단 참여 기업 9개사를 대상으로 한국농수산식품 유통공사(aT)의 비관세장벽 해소 자문*을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주요 수출 물품의 FTA 특혜 적용 여부, 현지통관 애로 사례 등 관세행정상 지원도 함께 제공하였다.

* 현지의 전문기관이 통관절차, 식품 관련 통관법령 등을 사전 조사

마지막으로 울산세관은 수출 시작 기업이 자금부담 등으로 수출을 조기에 포기하지 않도록 최초 수출기업을 추출할 수 있는 분석툴을 자체 개발하여, 유망 중소기업이 FTA 컨설팅 등 관세행정상 지원 외에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경영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여 지원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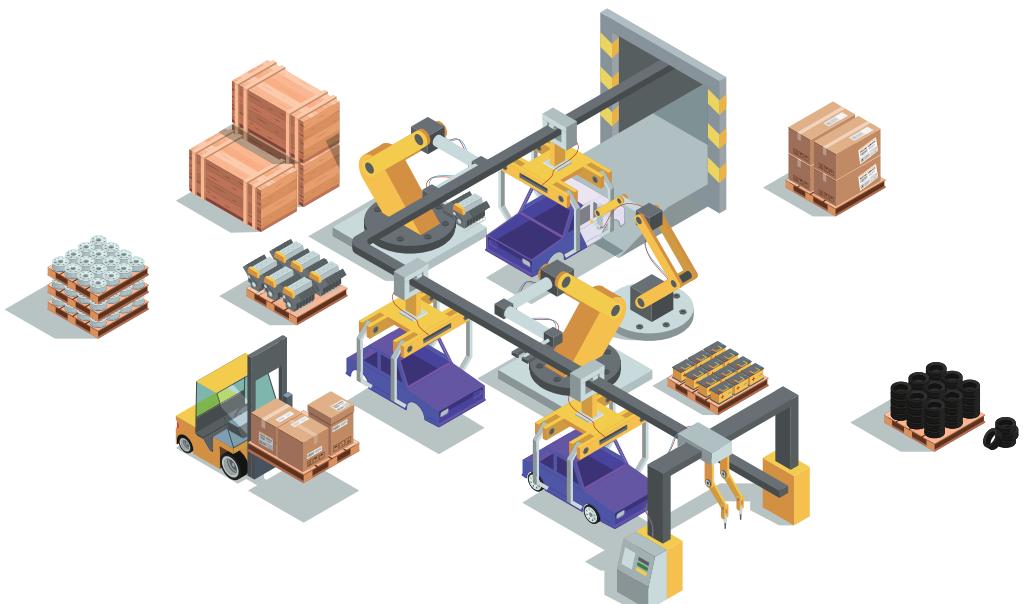
자동차 산업분야 품목분류(HS code) 설명회 개최

관세청 산하 관세 평가분류원(원장 신현은)은 11월 6일(수) 서울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회의실 (서초동, 자동차회관)에서 ‘자동차 산업분야 품목분류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설명회는 관련 산업에 특화된 품목분류* 전문 교육으로 한국자동차산업협회(완성차) 및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자동차부품)과 공동개최하여, 회원사를 주대상으로 실시하였다.

* 품목분류(HS, Harmonized System)는 세계관세기구(WCO)가 정한 상품 분류체계 코드로 수출입 물품의 세율과 인증요건, 원산지충족 여부를 판정하는 중요기준

이날 설명회에서는 FTA 확대 이후 체결국과의 품목분류 해석차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자동차 업계의 어려움 해소를 지원하고,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자동차 부품에 대한 분류 사례 등을 실무 중심으로 소개 하였으며, 품목분류 담당자가 업체의 어려움을 현장에서 해결해 주는 1:1 전문 컨설팅도 함께 제공하여 큰 호평을 받았다. 관세평가분류원 관계자는 “수출 주력품목에 대한 대외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이나 관련 협회에서 필요로 할 경우 다른 산업분야에 대한 품목분류 설명회도 지속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세청 2019 국제 원산지 세미나 개최

관세청은 11월 11일(월) 서울 더케이호텔 컨벤션센터에서 ‘신남방정책의 성공적 이행을 위한 FTA 활용촉진 방안’이라는 주제로 2019 국제 원산지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개회사에서 성태곤 FTA집행기획관은 FTA의 안정적 활용과 교역증대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관세청의 EODES 구축 사업을 소개하고 많은 국가들의 사업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신남방 정책 추진의 비전과 전략을 공유하고 이를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FTA 활용방안을 모색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마련되었으며, 국내 기업 관계자, 신남방지역 6개국(태국, 말레이시아,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 세관공무원 11명을 비롯하여 주한 대사관, 국내 FTA 전문가 등 약 150여명이 참석하였다.

오전 세션에서는 신남방지역과의 안정적 FTA 활용을 위한 전자적 원산지정보 교환 시스템* 도입 등 원산지 디지털 무역 플랫폼 구축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 전자적 원산지정보 교환시스템(Electronic Origin Data Exchange System): 특혜관세 적용 신청시 필요한 원산지 증명서(C/O) 정보를 세관 당국간 교환함으로써 무역업체가 C/O를 세관 당국에 서면으로 제출하는 절차 생략 가능
(한-중: 2016.12월 도입, 한-인니/인도: 2019.1월부터 개발중)

이어진 오후 세션에서는 ‘신남방지역의 FTA 활성화 및 비관세장벽 등 해소방안’이란 주제로, 태국의 FTA 통관애로 사례(태국 관세청), 베트남 수출입기업의 FTA 활용 및 활성화 방안(신한 관세법인), 신남방지역의 비관세장벽 동향 및 대응전략(KOTRA) 및 신남방국가의 주요 쟁점사항 분석 및 관련 사례발표(패스원 관세법인)가 있었다.

세미나의 마지막 순서는 심갑영 교수(좌장)의 진행으로 관세청, 기재부, 오후세션의 발표자가 참여하여 신남방국가와의 상생발전을 위한 FTA 활용촉진 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토의하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오후세션 발표내용에 대한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토론의 마지막 질문은 유사누적과 교차누적 도입시 원산지 검증에 관한 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관세청에서의 대응방안에 관한 사항을 질의하였다. 이에

대해 관세청 자유무역협정 집행기획관담당관 이철재 과장은 “원산지검증이 이루어질 경우 제3국까지 같이 검토해야 하므로 관세청의 입장에서는 인력증대가 필요하나 먼저 전문성을 키워서 효율적으로 업무를 대처하는 것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답변”하였다.

성태곤 FTA집행기획관은 이번 세미나가 서로의 관점을 공유하고 경험을 나누는 활발한 토론의 장이 되기를 기대하며, 이번 세미나를 발판으로 삼아 FTA 활용을 극대화하고, 향후 FTA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인도에 원산지증명서(C/O) 소급 발급 적극 요청

관세청은 우리 수출입기업에게 한-인도 CEPA* 특혜관세 사후적용에 필요한 원산지 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이하 C/O)를 선적 이후라도 인도측 C/O 발급당국(이하 EIC)**에 적극적으로 소급 발급을 요청 하도록 권고했다.

* CEPA :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으로 ‘자유무역협정(FTA)’ 개념과 유사

** EIC(Export Inspection Council of India) : 인도수출검사위원회로 인도측 C/O 발급기관

인도에서 한국으로 물품을 수입하면서 인도에서 C/O를 발급받지 못해 특혜관세를 적용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한-인도 CEPA 협정*에 따라 인도측에서 소급 발급한 C/O를 제출할 경우 특혜관세를 소급 적용 받을 수 있다.

* 한-인도 CEPA 협정문 제4.4조에 따라 C/O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 선적일로부터 1년 이내 발급받을 수 있음

그럼에도 그동안 인도 현지 진출 한국기업들이 C/O 소급 발급을 요청하더라도 인도

측은 세부 검토 필요, 추가자료 제출요구 등으로 C/O 소급 발급을 회피·지연하거나, 심지어 불허하기도 하였다. 관세청은 이러한 우리 수출입기업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대구본부세관을 통해 인도 수출입 업계의 어려움을 폭넓게 수렴하는 한편, 인도 EIC에 협정문과 국내법 따라 양측은 C/O를 소급 발급할 수 있다는 공식 서한문을 송부 하였다.

아울러 주인도 관세관도 EIC를 방문하여 C/O 소급 발급 불허 등에 따른 우리 수출입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EIC는 향후 한-인도 CEPA 협정에 따라 C/O 소급 발급이 원활하게 이행되도록 할 것과 인도 전국 5개 수출검사위원회에도 같은 내용을 하달하겠다고 최근 밝혀왔다.

이에 따라, 인도 EIC는 우리기업 A사에게

C/O를 소급 발급하여 A사는 국내 세관에 특혜관세 사후 적용 신청으로 1억원 이상의 관세를 절감할 수 있었다. 관세청은 이번 조치로 한-인도 CEPA 특혜관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현지 진출기업*과 인도와의 수출입업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며, 더불어 양국간 교역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 전기·전자, 자동차, 건설, 무역분야 등 470여개 우리 기업 인도 진출(KOTRA, 18.6월 기준)

관세청은 우리 수출입기업들이 해외에서 겪는 통관애로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어려움 발생시 관세청 수출입기업 지원센터 또는 해외주재 관세관 등에 도움을 요청할 것을 우리 수출입업체에게 주문하였다. 아울러 수출입기업이 FTA 활용 과정에서 어려움이나 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도 적극 의견을 제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참고 1 : 관세청 수출입기업지원센터】

세관명	지원센터 전화	E-mail
인천본부세관	032-452-3644	incheonsupport@korea.kr
서울본부세관	02-510-1382	seoulsupport@korea.kr
부산본부세관	051-620-6956	busansupport@korea.kr
대구본부세관	053-230-5183	daegusupport@korea.kr
광주본부세관	062-975-8197	gwangjusupport@korea.kr
평택본부세관	031-8054-7047	fta016@korea.kr

【참고 2 : 관세청 해외주재 관세관 연락처】

국가	전화
베트남(호치민)	+84-28-3822-5757(내선 139)
인도네시아(자카르타)	+62-21-2967-2555
인도(델리)	+91-11-4200-7064
태국(방콕)	+66-2-247-3242
미국(워싱턴)	+1-202-939-0844
미국(LA)	+1-213-385-9300(내선 70)
중국(북경)	+86-10-8531-0844
중국(상해)	+86-21-6295-5000 (내선 205)
중국(청도)	+86-532-8399-7732
홍콩	+852-2860-1566
일본(동경)	+81-3-6400-0695
EU(벨기에)	+32-6-661-0070

※ 관세관 상세 연락처(이메일 등)

www.customs.go.kr > 패밀리사이트 > 해외통관지원센터

관세청, 원산지조사 정보분석 경진대회 개최



관세청은 11월 27일(수) 대전 연수원 채움관에서 ‘2019년 하반기 원산지 조사 정보분석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우수 사례를 시상했다. 전국 세관의 원산지조사 직원들이 제출한 총 28건에 대해 엄격한 서류심사를 거쳐 8건을 선정하였고, 이날 발표대회를 통해 최종 시상하였다.

이번 경진대회는 인접국가간 세율차를 악용한 원산지세탁과 다국적 기업의 수출가격 적용 오류 등과 같은 위험요소 발굴 및 정보분석 기법을 공유·확산하고 직원들의 동기 부여를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하반기에는 환경·안전관련 물품, 다국적 기업관련 위험 등 실질요건 위반이 의심되는 정보분석사례를 우대 평가하였다. 이날 ‘최우수상’은 중국 주변국가 광물의 중국산으로 우회수입 가능성을 심도있게 분석한 광주세관 오가영 관세행정관이 수상하였다. ‘우수상’은 최근 반입이 급증하고 있는 수입 자동차의 부당특혜 가능성을 분석한 서울세관 정은영 관세행정관과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가리비의 원산지 위반 가능성을 분석한 평택세관 김태형 관세행정관 등 2명이 수상했고, ‘장려상’에는 인천세관 장현규 관세행정관 등 5명이 선정되었다.

관세청은 자유무역협정(FTA) 교역비중 확대에 따라 고위험 품목·기업 타겟팅 강화, 부서간 통합조사를 통해 불법·부정 특혜 위반을 엄정 차단하는 동시에 형식요건 위반에 대해서는 사전 안내·계도함으로써 기업이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등 공정무역체계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섬유·의류 등 검증취약산업군, 중국산 부품을 사용하여 미국으로 수출하는 기업, 체약상대국의 과도한 사후검증 요청*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 수출기업의 대응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기업별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 도움이 필요한 수출기업은 관할 세관의 수출입기업지원센터로 연락하면 된다.

* (사후검증) 2016년 228개사 → 2017년 814개사 → 2018년 636개사 → 2019.9월 256개사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15개국 간 “협정문 타결” 선언

아세안 10개국과 한국·중국·일본·인도·호주·뉴질랜드 등 16개국이 참여하는 「역내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정상회의가 11.4일(월) 오후 태국 방콕에서 개최되었다.

RCEP 참여국 정상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인도를 제외한 15개국이 20개 챕터의 모든 협정문을 타결하였음을 선언하였으며, 2020년 최종 서명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아울러, 인도가 RCEP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와 관련된 잔여 이슈 해소를 위해 참여국 모두가 노력하기로 하였다.

또한, 각국 정상들은 보호무역주의 등 세계 경제가 직면한 위협 속에서 규범에 기반한 다자무역체제인 RCEP이 중대한 의의를 지닌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였다.

RCEP은 2013년 5월 1차 협상이 개시된 이래 약 7년가량 협상을 진행하였으며, 20개 챕터의 협정문을 타결하고, 상품·서비스·투자 시장개방 협상도 막바지 단계로 일부국 간 합의만을 남겨두고 있다.

【RCEP 챕터 구성】

- ◆ 상품, 무역규제, 서비스(금융, 통신, 전문서비스 부속서), 인력이동, 전자상거래, 투자, 원산지, 통관, 위생 및 검역조치(SPS), 기술규제 및 적합성평가(STRACAP), 지식재산권, 경쟁, 정부조달, 중소기업, 경제기술협력, 총칙 5개 챕터(예외, 분쟁해결 등)

▶ RCEP의 의의

- RCEP은 우리나라 최초이자, 세계 최대의 메가 FTA로써 세계인구 절반, 전세계 GDP의 1/3을 차지하는 거대 경제 블록을 형성하여 안정적인 역내 교역 · 투자 기반 확보 효과가 기대됨
 - * RCEP 對세계비중 : GDP 27.4조불(32%), 인구 36억명 (48%), 교역 9.6조불(29%)(2018년 IMF)
- RCEP에는 최빈개도국부터 선진국까지 다양한 경제발전 수준을 가진 여러 지역의 국가가 참여하고 있으며, 특히 짧고 성장 잠재력이 풍부한 국가들이 다수 참여하고 있는 바,
 - * 중위연령(2017, UN) : 인도 26.7세, ASEAN 29.2세 vs 한국 40.8세 일본 46.3세, 미국 37.6세
- RCEP 타결은 우리 기업들에게 빠르게 성장하는 유망시장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진출기회를 제공하는 교두보가 될 것으로 전망됨
- 또한, 아세안 중심성(centrality)을 표방하고 있는 RCEP 타결은 아세안, 인도 등과의 협력관계를 한단계 도약시킴으로서 현 정부가 적극 추진해온 신남방정책의 본격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됨
 - 특히 최근 보호무역주의 우려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기업을 포함, 역내 교역 · 투자 여건 개선과 인적 · 물적 교류 활성화 뿐 아니라, 세계경제에 대한 긍정적 신호로 작용할 것이라 전망됨
- 아울러, 제품 생산 과정에서 역내 여러 국가를 거친 제품도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역내 가치사슬이 강화되고, G2를 넘어 신남방 핵심국가들로의 교역 다변화 계기를 마련함
 - 특히, 우리기업들이 아세안 등 RCEP 역내국에 지속적 투자를 통해 다양한 역내 생산기반을 확보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RCEP을 통한 우리 업계의 FTA 활용 편의성 제고가 기대됨

▶ RCEP 협정문 합의 주요 내용】

- ① (최신 무역규범 확립) 한-아세안 FTA에 미포함된 전자상거래, 지식재산권 챕터를 도입하는 등 무역환경 변화를 반영한 최신규범 확보
 - 전자상거래 확산 등 최근의 디지털 기술발전을 반영하여, 한-아세안 FTA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전자상거래 챕터를 신규 도입하고, 성장하는 RCEP 역내국의 전자상거래 시장 진출 확대 기반을 마련함
 - 이를 통해 중소기업 등 다양한 주체들의 디지털 가치사슬 참여 촉진과 4차 산업혁명 관련 산업발전 가속화가 기대됨
 - 또한, 지식재산권 챕터를 통해 저작권 · 특허 · 상표 · 디자인 등 지재권 전반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보호 규범을 마련하여, 그동안 지식재산권 챕터가 없었던 한-아세안 FTA를 보완함
 - RCEP 역내가 한류 중심지임을 고려할 때, 저작권 보호 강화를 통해 RCEP 지역 내 한류 콘텐츠의 안정적인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아울러, 중소기업 역량강화의 중요성을 고려, 중소기업 챕터를 도입하고, 정부조달, 경쟁 등 기존 한-아세안 FTA에서는 포함되지 않았던 다양한 챕터를 마련하여, 해당 분야의 투명성을 제고함
- ② (무역원활화 기반 마련) 16개국에 대한 통합 원산지 기준을 설정하여 기업의 FTA 편의성을 제고하고, 역내 가치사슬 강화 기반 마련
 - 원산지 기준 관련 그간 RCEP 참여국과 맺은 7개 FTA*마다 각각 다른 원산지기준을 통일하고 원산지 증명 절차를 개선하여 기업의 활용 편의성을 제고함
 - * 한-싱 / 한-아세안 / 한-인도 / 한-호주 / 한-중국 / 한-베트남/ 한-뉴질랜드
 - 우리기업의 FTA 활용을 가장 어렵게하는 요인 중 하나인 원산지 제도를 개선하여 기업의 부담과

비용을 크게 절감하고, FTA 활용역량이 미진한 중소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 또한, RCEP 참여국 전역에서 재료를 조달·가공하여도 재료누적이 인정되어 역내 생산 가치사슬 형성 및 역내 산업과의 연계 강화를 통한 우리 기업의 경쟁력 확보가 기대됨
- 아울러, 한-아세안 FTA 등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통관 및 무역원활화 챕터를 도입하여 통관분야 원활화를 통한 우리기업들이 RCEP 활용 편의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 ③ (서비스 및 투자 규범 개선) 한-아세안 대비 서비스·투자 시장 자유화 규범 강화 및 우리 투자자의 권리 보호 수준 제고

◦ 서비스의 경우, 기존 아세안 등과의 FTA에 비해 자유화 요소를 강화하여, 역내 서비스 무역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또한, 금융·통신 부속서 챕터를 통해 핀테크, 금융 및 통신사업 진출 기반을 확보함
- 투자 분야에서는 對RCEP 국가 최근 투자증가 추이를 반영하여, 한-아세안 FTA 이상의 수준 높은 투자 자유화 및 보호규범을 확보함

④ (신남방 핵심국가들과 장기적 파트너십 확보) 역내 경제발전 및 성장을 위해 협력 촉진 기반을 마련

- 협력 챕터를 통해 발전 수준 격차가 큰 참여국이 상호호혜적 관계 속에서 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마련함으로써 아세안 등 역내국과 전략적 협력 관계 발전의 기반을 마련함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한-뉴질랜드 FTA, 교역 확대와 농림수산협력에 크게 기여중

산업통상자원부는 뉴질랜드 외교통상부와 한-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5년 차를 맞이하여 제4차 한-뉴질랜드 FTA 공동 위원회*를 11월 7일(목) 서울에서 개최하였다.

* 한-뉴 FTA 제18.3조(발효일부터 1년 이내에 회합하고, 그 후 매년 또는 양 당사국이 달리 상호 합의하는 대로 회합한다)에 의거해, 2015.12월 한-뉴 FTA 발효 후, 총 3차례(2016.3월, 2017.4월, 2018.4월) 개최

우리측은 김기준 산업통상자원부 FTA교섭관이, 뉴질랜드측은 미셸 슬레이드(Michelle Slade) 외교통상부 무역경제국장이 수석 대표로 참석한다.

- 일시 및 장소 : 2019.11.7(목) 10:00~12:00, 서울
- 참석자 : 김기준 산업통상자원부 FTA교섭관, 미셸 슬레이드(Michelle Slade) 뉴질랜드 외교통상부 무역경제국장, 양국 관계부처 담당자 등 20명
- 주요 내용 : 한-뉴 FTA 발효 후 5주년 평가 및 이행 현안 논의

그간 한-뉴질랜드 FTA는 높은 시장개방* 등을 토대로 양국간 교역 증대와 함께 농림수산협력(전문가 훈련, 농어촌학생 어학 연수), 워킹홀리데이 인원 확대 등 경제협력 및 인적교류 강화에 크게 기여해 왔다.

* 뉴질랜드 7년 이내 전품목, 한국 15년 이내 수입액 기준 96.4% 관세 철폐

2015년 FTA 발효 이후 양국교역량은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FTA 특혜 품목들이 양국 교역의 든든한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 한-뉴 교역(억불) : (2006) 16.4 → (2010) 21 → (2015) 24.9 → (2016) 24 → (2017) 25 → (2018) 31

우리측은 FTA 발효이후 관세가 철폐된 건설 중장비 · 축전지 · 아연도강판*등 공산품 위주로 뉴질랜드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 對뉴질랜드 수출(2015년 → 2018년, 백만불) : (건설중장비, 기존관세율 5%→0%) 41 → 83, (축전지, 5~12.5%→0%) 19 → 24, (아연도강판, 5%→0%) 15 → 20

금번 공동위원회에서는 한-뉴질랜드 FTA 이행 상황과 양국의 관심사항을 논의하고, 그간 개최되었던 분야별 이행 기구* 활동 등을 평가할 예정이다.

* 농림수산협력위원회(2019.3.19일, 웰링턴), 위생 · 식물위생 위원회(2019.5.14일, 웰링턴), 상품무역위원회(2019.7.18일, 웰링턴)

특히, 인력교류 협력의 대표적 성공사례인 농어촌 지역 청소년 대상 뉴질랜드 어학연수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내용을 협의하고 양국간 신규 농림수산 협력사업을 모색할 예정이다.

김기준 FTA교섭관은 “제4차 한-뉴질랜드 FTA 공동위원회를 통해 전문직 일시고용 입국 비자 활용률 제고 방안 등을 함께 논의해 양국의 인력 교류를 더욱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중소기업의 자유무역협정(FTA)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스템 개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최근 다수의 자유무역협정(FTA)을 타결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중소기업이 이미 발효되고 있는 자유무역협정을 보다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에 나서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무역협회(회장 김영주)는 11. 13일(수) 공동으로 「전주기 FTA 플랫폼」 시범시스템 시연회를 개최하였다. 다양한 채널*에서 모아지고 있는 자유무역협정 활용 관련 애로를 「전주기 FTA 플랫폼」에서 통합 관리하고 산업계와 정부가 긴밀하게 소통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한 것이다.

* (예시) FTA 강국 코리아(www.fta.go.kr), 해외기술규제정보시스템(www.knowtbt.kr), FTA 1380(www.fta1380.or.kr), 트레이드내비(www.tradenavi.or.kr) 등

정부는 중소기업에게 연간 3만여 건의 FTA 상담 · 컨설팅을 제공하고 외국의 시험 · 인증 취득과 분쟁해결을 지원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다양한 지원 업무가 서로 연동되지 않아서 기업들은 불편하고 정부의 지원업무는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각 업무 시스템의 애로 · 건의 기능을 하나의 대표 시스템으로 연동시켜 기업의 애로해소와 정책반영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

지도록 「전주기 FTA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이다. 정부와 유관기관 관계자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동 행사에서는 「전주기 FTA 플랫폼」 시범시스템의 기능 시연회와 함께 정부 · 유관기관 대상 사용자 교육도 함께 진행되었다.

【전주기 자유무역협정(FTA) 플랫폼 시범사업 구축 완료보고회】

- 일시 및 장소 : 2019.11.13.(수) 14:00 ~ 16:00, 무역 협회 51층 대회의실
- 참석자 :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무역협회, 지역FTA 센터 관세사 등 60여명
- 주요 내용 : 전주기 FTA 플랫폼 시범시스템 시연회, 정부 · 기관 사용자 교육 실시

시연회에 참석한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앞으로는 「FTA 종합지원센터」등 다양한 채널로부터 입수되는 연간 수만 건의 상담 · 컨설팅 내용을 통합 데이터베이스(DB)로 일괄 · 관리하여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한편, 제도개선이나 외국과의 이행 협상에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초까지 시범시스템의 운영을 통해 시스템의 설계를 수정 · 보완한 후, 내년 상반기 중 「전주기 FTA 플랫폼」 본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하반기부터 정식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인도네시아-호주 경제동반자협정(IA-CEPA) 발효 눈앞

인도네시아-호주 경제동반자협정 배경 및 전망은 2007년 8월 호주와 인도네시아는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FTA)을 위한 공동 타당성 조사에 착수했으며, 2009년 4월에 연구가 완료되었다.

2010년 호주 줄리아 길라드(Julia Gillard) 총리와 인도네시아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Susilo Bambang Yudhoyono) 대통령을 통해 시작된 자유무역협정 협상을 시작으로 지난 8년간의 지속적인 협의 및 타진을 통해 2019년 3월 4일 두 국가는 인도네시아-호주 경제동반자 정(Indonesia-Australi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IA-CEPA)에 서명하였다.

한편 지난 2019년 10월 20일 호주 스콧 모리슨 (Scott Morrison) 총리가 인도네시아 대통령 2기 취임식 축하를 위해 인도네시아를 방문했으며, 조코 위도도(Joko Widodo) 인도네시아 대통령과의 긍정적 정상회담을 통해 가까운 시일 내 FTA 협정이 발효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호주 정부가 야당에서 요구한 FTA 관련 수정안 중 상당 부분을 수용해 지난 10월 21일 FTA 비준안이 하원에서 통과됐고 11월 상원에서도 무탈한 통과가 예상된다.

인도네시아로 수출되는 호주 원산지 상품의 99% 이상이 2020년까지 면세 또는 상당히 개선된 관세를 적용받도록 조정될 예정이다. 이는 현재 적용되고 있는 아세안-호주-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ASEAN- Australia-New Zealand)의 85%보다 높은 수준이다. 인도네시아는 호주산 송아지, 냉동 쇠고기, 양고기, 곡물사료, 강판 코일, 감귤류, 당근 및 감자 등의 주요 상품에 대해 수입 허가 자동 발급을 보장하기로 하였다. 호주는 수출 및 수입업자의 상품 무역 촉진을 위해 행정 절차를 개선하기로 했으며, 호주는 아세안-호주-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을 바탕으로 인도네시아 제품의 호주 수입에 대한 잔여 관세를 즉시 철폐할 예정이다. 또한 호주에서는 FTA 최초로 비관세조치에 대한 정기적 논의를 가능하게 하는 양자 협력 메커니즘을 마련해 양국 간 비관세 장벽에 대한 개선 방안을 지속 논의해 갈 예정이다. 해당 FTA의 일환으로 인도네시아 정부의 요청에 따라 호주는 인도네시아 전기차에 대한 자유로운 원산지 요건을 제공하기로 하였다.

출처 : 호주 외무성, 호주 통계청, The guardian 신문, 호주 주요 언론 및 KOTRA 시드니 무역관 자료 종합

한-캄보디아 자유무역협정 공동연구 개시 선언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뱐 소라삭(Pan Sorasak) 캄보디아 상무부장관은 11월 25일(월) 08시 30분, 제3차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열리고 있는 부산에서 「한-캄보디아 FTA 공동연구」개시를 공식 선언하였다.

양국은 지난 2019년 3월 한-캄보디아 정상회담시 캄보디아측의 교역 자유화 논의 제안을 시작으로, 국장급 실무협의 등을 거쳐 금번 한-아세안 정상회의 계기에 양국 통상장관간 FTA 공동연구 개시를 합의하였다. 금번 한-캄보디아 FTA 공동연구 개시 선언으로 지난 10월 한-인니 CEPA 실질타결, 11월 RCEP 협정문 타결에 이어, 신남방 지역과의 FTA 네트워크 개선 가속화에 탄력을 받게 되었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한-캄보디아 FTA가 성장잠재력이 크고 우리기업 진출 가능성이 높은 개도국과 추진하는 중요한 FTA가 될 것”임을 강조하면서, “최빈개도국에서 G20 국가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축적한

산업발전 경험을 FTA를 통해 후발 개도국과 공유함으로써, 개도국과의 경제협력과 동시에 우리기업의 시장 진출 확대를 도모하는 상생형 FTA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고로 캄보디아는 2011년 이후 매년 7% 내외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중이고, 전체 인구중 35세 이하의 인구가 72%를 차지하는 매우 높은 성장 잠재력을 지닌 국가로서, 동남아 중심부에 위치한 지리적 이점을 바탕으로 개방적이고 적극적인 외국인투자* 유치정책 추진하고 있는 바, 신남방지역의 주요한 생산 및 수출 기지로 성장할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 캄보디아 외국인 직접투자액/GDP(달러) : (2013) 45억/154억 (29.2%) → (2015) 39억/181억(21.5%) → (2017) 49억/222억(22.1%)

- 한국의對캄 투자 실적(1997~2017) 약 46.3억달러로 누적 FDI 2위(1위 중국)

산업부는 향후 1년간 심도 깊은 공동연구를 바탕으로 시장개방과 함께 경협확대 방안을 모색하고, 우리 기업의 캄보디아 진출 확대방안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한-인도네시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최종 타결

인도네시아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한-인니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이 최종 타결되었음을 공식 선언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과 인도네시아 무역부 아구스 수파르만토(Agus Suparmanto) 장관은 양국 정상 임석 하에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한-인도네시아 CEPA 타결 공동 선언문’에 서명하였다.

양국은 작년 9월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방한 계기에 정상간 CEPA 협상 재개를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하였으며, 금년 2월에는 양국 통상장관들이 협상 재개를 공식 선언하였다. 이후 양측은 수 차례 공식 협상과 회기간 협상 등을 집중적으로 추진

했으며, 10월 16일(수) 인니에서 양국 통상 장관은 상품, 서비스, 투자, 원산지, 협력, 총치 등 모든 분야 쟁점에 합의했고, 한-인도네시아 CEPA 협상이 실질 타결되었다고 발표하였다.

이후 양국은 13개 장(Chapter), 시장개방 등 부속서 등 문안 합의를 완료하여 금번 특별 정상회의 계기 최종 타결이라는 성과를 도출하였다.

양국은 협정문 법률 검토 등을 거쳐 내년 초 정식 서명을 추진하고, 영향평가, 국회 비준 동의 등 각각의 국내절차도 신속히 진행하는데 합의하였다.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한-필 자유무역협정(FTA) 상품협상 조기성과 패키지 합의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과 라몬 로페즈 (Ramon M Lopez) 필리핀통상산업부장관은 11월 25일(월) 부산에서 한-필 정상회담 직후 양국정상 임석 하에 한-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의 상품협상 조기성과 패키지에 합의하고 공동선언문(Joint Statement)*에 서명하였다.

* 정식명칭: “한국-필리핀 자유무역협정 협상의 조기성과 패키지에 대한 대한민국과 필리핀 공화국의 공동선언문(Joint Statement by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Republic of Philippines on the Early Achievement Package of the Negotiations of the Korea-Philippines Free Trade Agreement)”

양국은 지난 6월 통상장관간 한-필 FTA 협상 개시를 선언한 이후 네 차례 공식협상*을 개최하였으며, 이번 한-필 정상회담 계기에 양국 통상장관이 그간 협상에서의 조기 성과를 확인하는 것이다.

* 1차 : 2019.6.4-5 / 2차 : 2019.7.15-17 / 3차 : 2019.8.12-14 / 4차 : 2019.9.10-13

양국은 공동선언문을 통해 한-필 FTA 상품 협상 조기성과 패키지에 합의하고 협정문 협상에서 실질적 진전을 이룬 점을 평가하면서, 내년 상반기 타결을 목표로 협상을 진전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금번 상품협상 조기성과 패키지를 통해 양측은 상호 관심 품목 중 일부에 대해 개방 대상에 포함하기로 우선 합의한 바, 필측은 자동차부품(브레이크, 클러치 등), 의약품, 일부 석유화학제품(합성고무 등) 등을 개방하고, 우리측은 바나나, 의류, 자동차부품(에어백 등) 등을 개방하기로 하였다. 이번 패키지는 추후 협상 과정에서 상호 추가 양허 개선 협의를 거쳐 최종 한-필 FTA 협상 결과에 반영될 예정이다.

이번 한-필 FTA 협상 조기성과 합의로 양국은 한-필 수교 70주년을 맞아 양국이 교역·투자 및 경제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재확인하였으며, 내년 상반기 한-필 FTA 최종 타결을 위한 중요한 모멘텀이 형성된 것으로 평가되었다.

통상교섭본부는 이번 공동선언문 합의를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 한-필 FTA 협상이 타결되도록 잔여쟁점에 대한 협의를 가속화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FTA TRADE REPORT



FTA EXPERTS

한-영 FTA의 주요내용과 기대효과

금혜윤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통상실 무역협정팀 전문연구원

한-중미 FTA 발효 의미와 한국 기업들의 진출 시사점

오성주 | 포스코경영연구원 수석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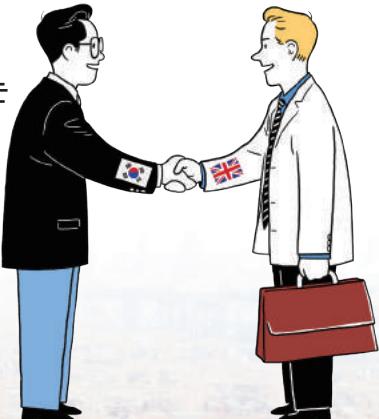
김혜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통상실 무역협정팀
전문연구원

한-영 FTA의 주요내용과 기대효과

영국은 세계 5위의 경제대국이며 인공지능(AI),
핀테크(FinTech)와 같은 미래 고부가가치 산업을 선도하는
매력적인 시장이다.

우리 기업은 한-영 FTA를 효과적으로 활용함으로서
영국과의 교역을 확대할 뿐만 아니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한 기술 및 제도를 업그레이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 한-영 FTA 개요

올해 10월 한-영 FTA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우리나라는 아시아 최초로 영국과 FTA 비준을 완료하게 되었다. 2016년 6월 브렉시트(Brexit)가 결정된 이후, 무역작업반을 설치하여 양자 FTA에 대해 논의해 왔던 양국은 2019년 6월 한-영 FTA를 타결하고 이제 후속 절차까지 마무리하게 된 셈이다. 이에 따라 향후 영국이 EU를 탈퇴하게 되면 한-영 FTA는 자동적으로 발효된다.¹⁾

한-영 FTA 체결로 우리나라는 브렉시트 시에도 EU에서 두 번째로 큰 교역 상대국인 영국과 안정적인 통상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이하에서는 한-영 FTA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양국 간 상품교역 현황을 살펴본다. 이를 통해 우리 기업의 영국 시장 진출 유망품목을 선정하고 더불어 보다 효과적인 한-영 FTA 활용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2. 한-영 FTA의 주요내용

한-영 FTA는 협정문의 구성뿐만 아니라 각 장에서 언급하는 이슈도 한-EU FTA와 동일한바 곧 한-EU FTA 수준의 협정이라 할 수 있다.²⁾ 그러므로 한-영 FTA의 상품양허는 2019년 7월 1일부로 이행 9년차에 접어든 한-EU FTA와 동일한 일정을 따르게 된다.

한국은 한-EU FTA 협정세율에 따라 영국에 대해 HS 코드 10단위 기준(HS2012) 전체

품목의 93.8%에 대하여 현재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관세가 남아있는 품목은 전체 품목의 6.1%로 농수산식품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관세율할당(TRQ) 품목도 일부 포함되어 있다. 유관세 품목의 2019년 협정세율은 0.1%에서 754.3%까지 다양하며 축산품 및 수산물을 비롯하여 치즈와 같은 유제품, 고추, 마늘, 양파 등의 채소가 포함되어 있다. 제조업 품목은 거의 관세가 철폐

1) 한-영 FTA의 발효 시점은 노딜(No deal) 브렉시트일 경우에는 영국이 EU를 탈퇴하는 즉시, 딜(Del) 브렉시트일 경우에는 이행 기간 이후가 된다.

2) 한-영 FTA 협정문은 크게 서문(preamble)과 15개의 장(chapter), 3개의 의정서(protocol)로 구성되어 한-EU 협정문 구성과 동일하다.

되고 HS 코드 10단위로 15개 품목의 관세만 남아 있는데, 정유(essential oil)의 추출물, 텍스트린과 그 밖의 변성전분, 옥스하이드

(ox hide)이다.³⁾ 미양허 품목은 다른 FTA에서와 마찬가지로 쌀 관련 16개 품목이다.

【표 1. 한국의 발효 9년차 한-EU FTA 수입관세율 현황】

유형	품목 수(개)	비중(%)
무관세	11,475	93.8
유관세	741	6.1
미양허	16	0.1
합계	12,232	100

자료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7[시행 2018. 4. 30]을 토대로 저자 작성.

한편 한-EU FTA에서 EU측은 쌀 품목을 제외한 모든 품목의 관세를 5년 내에 철폐하기로 한바 영국의 한국에 대한 수입관세율은 대부분 0%로 볼 수 있다. 즉 영국의 미양허 품목은 쌀에 해당하는 39개 세번으로 EU와 동일하다. 다만 영국은 상품 부속서를 통해 본 협정의 시장진입가격제도 적용 대상 품목을 명시하고 있다.⁴⁾ 이에 따르면 살구, 복숭아, 자두, 사과, 포도 등은 FTA 이행 7~20년차에 관세를 철폐키로 하였고, 토마토와 신선 스위트오렌지 등은 관세를 유지하게 된다.

농업 부문의 경우, 일부 품목에 대한 TRQ와 농산물 세이프가드(ASG)에 합의하였고 그 외의 품목에 대해서는 양국 모두 한-EU FTA 이행 9년차의 양허를 따르기로 하였다. TRQ는 영국산 맥아 및 맥주맥과 보조 사료에 제공하기로 하였으며, 물량 기준은 한-EU FTA의 TRQ 물량 중 영국의 비중에 해당하는 만큼으로 설정하였다. 한국은 한-EU FTA와 동일한 9개 품목(쇠고기, 돼지고기, 사과, 맥아, 감자전분, 인삼 등)에 대하여 ASG를 적용하기로 하였으며, 국내 농업의 민감성을 고려하여 한-EU FTA에서 보다 발동기준은 낮추었다.

3) 제조업 유관세 품목 15개에는 제3301호 3개, 제3505호 11개, 제4101호 1개 품목이 포함된다.

4) 시장진입가격제도란 영국으로 수입되는 과일 및 채소의 가격이 일정 가격보다 낮을 경우 관세 상당치를 추가로 부과할 수 있는 제도로 WTO 양허표 XI X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한-EU FTA에서도 일부 품목에 대하여 적용하고 있다.

한-영 FTA에서 원산지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의정서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그 구성과 내용은 한-EU FTA와 거의 동일하다. 다만 한국과 영국 간 비즈니스 환경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원산지 누적(cumulation of origin)과 직접운송(direct transport)을 적용함에 있어 유예기간을 두고 있다. 즉 3년 한시적으로 EU산 재료를 사용하여 생산한 제품을 역내산으로 인정하며, EU를 경유 하여도 직접운송으로 간주하기로 하였다.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양국은 부속서에 등재된 농산물, 식품, 포도주에 대하여 지리적 표시로 인정하고 보호를 지속하기로 합의하였다. 영국의 경우 스카치 위스키 (Scotch Whisky)와 아이리시 위스キー(Irish Whiskey / Irish Whisky)의 증류주 2개 품목을, 한국은 농산물 및 식품 63개 품목과 주류 1개 품목을 지리적 표시로 보호하기로 하였으며, 이러한 품목은 한-EU FTA에 등재된 품목과 동일하다.⁵⁾



5) 지리적 표시로 보호받는 한국의 농산물 및 식품에는 보성녹차, 순창전통고추장, 이천쌀, 고려홍삼, 고창복분자 등이 있으며, 주류로는 진도홍주가 포함된다.

3. 한국과 영국의 교역현황 및 유망품목

한국과 영국 간 교역규모는 각국의 전체 교역액에서 1% 안팎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00년대 중반 이후 한국의 대영국 교역 추이를 살펴보면 한-EU FTA 발효를 기점으로 그 양상에 다소 차이가 있다. 2011년 까지 한국은 영국에 대해 무역수지 흑자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한-EU FTA 발효 이듬해

부터 수입액이 크게 증가하며 무역수지도 적자로 전환되었다. 2015년 이후 흑자 수준을 회복하였지만 2018년 우리나라의 수출은 약 64억 달러, 수입은 68억 달러로 다시 4.5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였고 현재 영국은 우리나라의 17위 수출국이자 18위 수입국으로 자리하고 있다.

【그림 1. 한국의 대영국 교역 추이】



자료: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K-stat).

2018년 기준 한국의 대영국 주요 수출품목은 승용차 및 선박 관련 제품으로 전체 수출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으며, 한-EU FTA 발효 이후 승용차와 자동차부품의 수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선박의 경우 품목의

특성상 연도별로 수출규모의 변동성이 큰 편이다. 그 밖에 EU와의 FTA 이후 영국에 대한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 품목으로 축전지, 합성수지, 플라스틱제품, 화장품 등을 들 수 있다. 대영국 수입에서는 원유와 승용차가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는데, 특히 원유의 경우 한-EU FTA 직후 수입이 급증하였다. 이는 한-EU FTA 발효시점이 국제사회의 대이란 제재와 맞물리며 한국이 원유 수입선 다변화를 위해 동 FTA로 관세가 철폐(기준 3%)된 영국의 북해산 원유 수입을 시작했기 때문이다.⁶⁾ 원동기, 항공기부품, 농약 등도

한-EU FTA 체결 이후 수입이 증가한 품목으로 볼 수 있다. 주류 역시 한국의 주요 수입품목이나, 대영국 수입이 우리나라 전체 수입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위스키(HS 6단위 220830)의 경우 FTA 발효 이후 오히려 수입액이 감소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2018년 한국의 대영국 주요 수출입 품목】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수출품목			수입품목		
	품명	금액	비중	품명	금액	비중
1	승용차	1,470	23.1	원유	2,329	34.2
2	선박	1,072	16.9	승용차	1,073	15.8
3	해양구조물	524	8.2	의약품	326	4.8
4	항공기부품	380	6.0	원동기	181	2.7
5	자동차부품	261	4.1	주류	150	2.2
6	건설 중장비	191	3.0	항공기부품	115	1.7
7	축전지	149	2.3	계측기	113	1.7
8	합성수지	142	2.2	합성수지	102	1.5
9	제트유 및 등유	134	2.1	농약	99	1.5
10	타이어	130	2.0	펌프	79	1.2
	소계	4,453	70.0	소계	4,567	67.1
	전체	6,359	100	전체	6,809	100

주 : MTI 4단위 기준 / 자료 :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K-stat).

영국의 주요 수출상대국은 미국, 중국, 그리고 EU 및 EFTA(유럽자유무역연합)와 같이 인접한 국가들이며 한국은 15대 수출 상대국이다. 영국의 수입상대국도 수출국과 유사하나 다만 중국의 비중이 더 높아지고

한국은 FTA 체결국임에도 불구하고 23위에 그치고 있다. 주요 제조업 시장에서 우리나라와 경쟁관계인 일본에 대한 2018년 영국의 수입액은 한국보다 2.6배가량 컸다.

6) 산업통상자원부(2013), 「기업 부담완화를 위한 해외국가들의 원산지 사후검증 사례연구」, pp. 60~61 참고.

【표 3. 2018년 영국의 주요 교역 상대국】

(단위: 억 달러)

순위	수출상대국		순위	수입상대국	
	국가	금액		국가	금액
1	미국	652	1	독일	917
2	독일	470	2	중국	629
3	네덜란드	340	3	미국	627
4	프랑스	316	4	네덜란드	554
5	아일랜드	277	5	프랑스	374
6	중국	273	6	벨기에	343
7	스위스	252	7	이탈리아	263
8	벨기에	185	8	노르웨이	255
9	이탈리아	135	9	스페인	207
10	스페인	134	10	아일랜드	179
14	일본	80	13	일본	126
15	한국	75	23	한국	49

자료 : UN COMTRADE(검색일 : 2019.11.7).

한-영 FTA는 한-EU FTA의 관세철폐 일정과 동일하므로 현재 우리의 수출품목에 대한 영국의 관세율은 거의 없는 상황이다. 이에 2011년 이후 증가율이 높은 영국의 대세계 수입품목과 한국의 대영국 수출품목을 비교하여 두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품목을 선별해 보았다. <표 4>에 따르면 HS 코드 6단위 기준 자동차 및 관련 부품이 5개로 가장 많았고, 그 밖에 화장품, 플라스틱, 철강, 기계 품목이 포함되었다. 이러한 품목들은 최근 영국의 수입수요가 많은 동시에 우리나라가 경쟁력도 갖춘 것으로 판단되는바 우리 기업의 영국 시장진출 유망품목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영국은 2018년 7월 ‘Road to Zero’전략을 발표하였는데, 여기에는 친환경차 인프라 구축을 위한 투자 확대, 기존 도로 배기가스 배출량 감축, 무공해 차량 판매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영국 정부는 전기 차가 증가함에 따라 차세대 배터리 충전기술 개발을 장려하고 있다.⁷⁾ 이러한 영국의 움직임을 고려하여 우리 기업은 현재 자동차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친환경차 기술 개발과 미래차 관련 부품 수출에 좀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화장품은 한-EU FTA 발효 이후 영국에 대한 연평균 수출 증가율이 가장 큰 품목 중 하나이다. 최근 영국 내 K-beauty 제품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7) Kotra(2019), 「국별 진출전략: 영국」, p.30 참고.

있는 상황이므로 보다 적극적인 마케팅 전략으로 시장진출을 노려볼 수 있을 것이다. 영국은 세계 최대 규모의 단일 의료바이어인 국민건강서비스(NHS)를 통해 공공의료를 제공하고 있는데, NHS의 예산 적자가 이어지면서 의료제품 조달에서 가격 경쟁력이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비용 대비 효율이 높은 ICT를 활용한 제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의료용 기기에서 관련 분야의 기술 강점을 가진 우리 기업이 진출하기에 적합한 분야이다.⁸⁾



【표 4. 한국의 대영국 수출 유망품목】

(단위: 백만 달러, %)

HS 코드	품명	영국의 대세계 수입		한국의 대영국 수출	
		2011-18 평균 수입액	2011-18 연평균 증가율	2011-18 평균 수출액	2011-18 연평균 증가율
330499	화장품	1,429	3.2	7.9	49.7
392690	기타 플라스틱 제품	1,800	1.9	12.4	20.8
732690	기타 철강제의 제품	1,316	15.5	9.5	12.7
841191	터보제트 또는 터보프로펠러의 부분품	7,640	6.6	30.4	1.0
870321	실린더용량 1,000cc 이하의 승용자동차	2,256	30.8	140.3	32.7
870322	실린더용량 1,000cc 초과 1,500cc 이하의 승용자동차	7,853	6.9	323.5	25.5
870323	실린더용량 1,500cc 초과 3,000cc 이하의 승용자동차	6,533	2.9	131.7	1.8
870421	총중량 5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4,091	6.5	8.5	19.3
870830	제동장치와 그 부분품	1,307	0.4	40.1	10.4
901890	의료용 기기	1,858	1.7	8.0	9.6

자료 : UN COMTRADE(검색일 : 2019.11.7) 자료를 토대로 저자 작성.

8) Kotra(2019), 「국별 진출전략: 영국」, p.32 참고.

4. 시사점

한-영 FTA는 영국 시장진출 시 한-EU FTA를 통해 우리 기업이 누리던 기존의 혜택을 브렉시트 이후에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우리나라의 수출 품에 부과되는 영국의 관세율뿐만 아니라 원산지누적과 직접운송 규정에서도 유예 기간을 두어 기업 활동의 불확실성을 완화 시켰다. 이에 따라 영국이 EU를 탈퇴하고 독자적인 경제통상정책을 추진하게 되면 우리 기업에게는 오히려 영국 시장진출의 새로운 기회가 열릴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우리 기업들은 앞서 언급한 유망 품목을 중심으로 보다 적극적인 시장진출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다만 여기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영국 시장에 대한 철저한 사전 조사의 중요성이다. 영국은 브렉시트 이후 자국의 경쟁력을 유지·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준비하고 있는데⁹⁾ 이에 따라 수입시장의 환경 변화도 예상된다. 그러므로 기업들은 영국의 전반적인 정책 방향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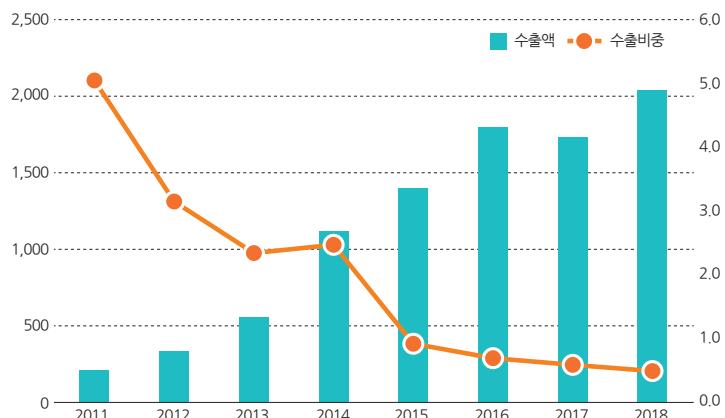
부터 산업의 특성, 소비자의 선호 등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바탕으로 시장진출 전략을 재수립해야 할 것이다.

또한 앞으로 우리 기업들은 전자상거래를 통해 영국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품목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영국은 미국, 독일, 중국과 함께 세계 4대 온라인 유통시장 국가로 평가되고 있으며, 전체 소매 중 온라인 판매 비중은 2007년 3.4%에서 2017년 16.3%까지 높아졌다.¹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림 2>와 같이 우리나라의 대영국 전자 상거래품목의 수출은 미미한 실정이다. 특히 2011년 이후 영국에 대한 수출규모는 대체로 증가하였으나 우리나라의 전체 전자상거래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 영국 온라인 시장의 잠재력과 오프라인 대비 진출의 용이성을 감안하여 우리 기업들은 전자상거래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면 좋을 것이다.

9) 2017년 11월 영국 정부가 발표한 산업 전략을 보면, ① 인공지능과 데이터 중심 경제, ② 청정 성장, ③ 미래형 이동수단, ④ 고령사회 분야를 미래산업을 선도하기 위한 도전과제로 설정하였다.

10) Kotra(2019), 「국별 진출전략: 영국」, p.7 참고.

【그림 2. 한국의 대영국 전자상거래품목 수출 현황】



주 : 1) 좌축은 수출액(천 달러), 우축은 수출비중(%)임.

2) 전자상거래품목은 소비재에 한정함.

자료 : 한국무역통계진흥원 전자상거래품목별 수출입 통계.

브렉시트라는 중대한 변수가 있긴 하나, 영국은 세계 5위의 경제대국이며 인공지능(AI), 핀테크(FinTech)와 같은 미래 고부가 가치 산업을 선도하는 매력적인 시장이다. 그러므로 우리 기업은 한-영 FTA를 효과적

으로 활용함으로서 영국과의 교역을 확대할 뿐만 아니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한 기술 및 제도를 업그레이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오성주

포스코경영연구원 수석연구원

한-중미 FTA 발효 의미와 한국 기업들의 진출 시사점

한국이 아시아 국가들 중에서 최초로 중미 5개국과 체결된 FTA를 통해
좋은 협력 기회를 확보한 만큼, 기존 물리적 거리의 한계를 극복하고,
상호보완적인 시장 구조를 잘 활용하여 서로 이해와 신뢰를 통해
시너지를 창출함으로써 한국과 중미 모두 지속 성장하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

韓-중미 FTA 발효 의미와 예상 기대 효과

한-중미 FTA는 우리 정부가 체결한 16번째 FTA 성과이며, 이로써 한국은 전세계 57개국과 FTA를 맺고 전세계의 77%에 해당되는 국가들과 경제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되었다. 한국 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 자료를 통해, 이번 한-중미 FTA 의의를 미·중 무역 갈등의 장기화로 한국의 교역 여건이 크게 악화되는 상황 속에서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이 중남미로 수출 시장을 다변화 시키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 또한, 미주 지역 수출에 있어서 북미(미국, 캐나다)와 남미(페루, 칠레, 콜롬비아) 루트에 이어 중미 국가들과 연결되는 또 하나의 루트를 개척함으로써 미주 대륙 전체를 하나의 큰 잠재적 통합 시장으로 연결함으로써 미래 성장의 모멘텀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중미 5개국이 아시아 국가들 중에서는 한국과 최초로 FTA를 추진하면서 우리 기업들이 중국이나 일본보다 먼저 중미 지역에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또한 이번 한-중미 FTA는 양허 대상 품목을 평균 95% 이상으로 하여 실질적인 교역의 자유화가 보장되었으며, 상품 외에도 원산지, 서비스, 투자, 지적재산권, 정부 조달 및 협력을 포함한 높은 수준의 포괄적인 협력이 가능토록 하여 향후 양 측이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발전하도록 그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또한 정부 구매(Government Procurement) 부문에서도 양 측이 동등한 수준으로 개방하기로 하여 한국의 건설, 엔지니어링 및 에너지 기업들이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신흥국 정부 조달 시장에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유리한 환경을 구축하였다.

[표 1] 중미 국가별 주요 지표

국가	국토면적 (전 k㎢)	인구 (백만 명)	GDP (실질*, \$10억)	1인당 GDP (명목, \$)	수출 (\$10억)	수입 (\$10억)	비고
엘살바도르	20.7	6.4	27.9	4,476	4.7	10.7	
온두라스	112.5	8.3	23.7	2,500	4.4	9.5	
니카라과	121.4	6.2	13.4	2,051	4.2	5.8	
코스타리카	51.1	5.0	60.6	11,977	11.5	15.9	
파나마	75.5	4.1	62.0	15,575	13.4	24.0	
콰테말라*	108.9	16.9	69.7	4,567	11.1	18.4	합계 제외
합계	381.2	30.0	187.6	-	38.2	65.9	

* 2018년 기준 실적(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추정치), 실질 GDP는 2015년 물가 기준
자료 : 포스코경영연구원 종합

중미 시장의 잠재력과 미래 자원의 가치

중미 국가들은 역사적으로 경제 성장에서 소외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리적으로도 발전하기 어려운 환경을 갖고 있다. 도시가 위치한 지역은 대부분 고산 지대여서 인프라 개발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열대 우림과 계곡 지형은 추가 비용을 들여 개발을 한다고 해도 풍토병, 모기 등 사람들이 살기에는 불편한 환경이었다. 또한 중미 국가들은 ‘불의 고리’라고 일컫는 환태평양 조산대에 위치하고 있어, 과거 지진으로 인해 수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던 아픈 경험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한편, 여름에는 허리케인과 같은 폭풍우의 위협에 시달려 농작물 피해도 만만치 않은 반면, 다른 중남미 국가들과 비교할 때, 천연 자원은 많지 않아 외국인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지 못하면서 자원 개발의 수혜나 글로벌 제조업들의 분업화 추세에도 공급 사슬(Supply Chain)에 포함되지 못하는 등 열악한 지리적 여건은 경제 발전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경제 개발을 더디게 했던 이러한 자연 환경은 덕분에 오늘날까지도 잘 보존되면서, 최근에는 인식의 변화와 함께 천혜의 관광 자원으로 거듭나고 있다. 유럽이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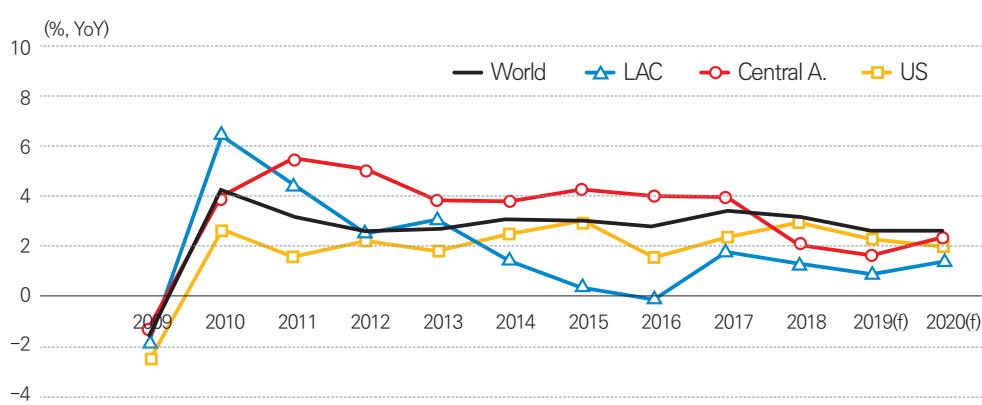
북미와 같은 선진국의 구매력 높은 관광객들이 자신들의 버켓 리스트에 ‘코스타리카 여행’ 등을 포함시켜 놓고, 활화산 관광, 온천 욕, 동굴 탐험이나 정글 체험 등을 하러 오기 시작하면서 최고의 관광 코스 중 하나로 여행객들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또한, 이 지역의 화산 활동으로 만들어진 기름진 토양과 적절한 강수량, 연중 일정한 기후 등은 중미 지역을 세계 최고의 커피 산지로 만들어 놓았다. 과거에는 현지 자본과 기술력 부족으로 대부분의 농장에서 커피콩을 재배 및 수확만 해서 수출하다 보니, 커피 생산으로 발생하는 부가가치의 많은 부분이 소비지인 선진국으로 돌아가는 안타까운 현실이었지만, 최근에는 현지 로스팅이나 포장 기술 등이 좋아지면서 유명 산지의 경우, 지역명을 브랜드화하여 직접 수출하는 경우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수출 지역 역시 아직은 미국이나 유럽이 크지만 일본에 이어 한국, 중국, 인도 등 아시아 소비량이 최근 크게 늘어나면서 향후 아시아 시장으로 본격적인 판매망을 구축할 경우, 중미의 커피 산업은 핵심 성장 동력으로서 각국의 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중미 5개국의 경제·산업 동향과 전망

중미 국가들의 경제 현황을 살펴보면,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과 같은 중남미 주요 국들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장기간 침체에 빠지면서 더딘 성장세를 만회하기 위한 해법 모색으로 고심 중인 반면, 중미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성장률을 유지하고 있다. 한 예로서 2010-2018년 기간 연평균 브라질의 경제 성장률은 1.4%, 아르헨티나는 1.8%로 부진했던 반면, 중미 5개국의 경우, 평균 3.9%대의 높은 성장률 기록하였다. 이는 남미 국가들이 만성적인 재정 적자나 외환

부족 등으로 인한 경제 위기에 시달렸던 반면, 대미 의존도가 높은 중미 국가들의 특성상, 미국의 경제 호황에 따른 내수 호조로 인해 대미 수출이 증가하고, 미국 이민자들의 해외 송금이 자국으로 유입되면서 수혜를 입었기 때문이다. 또한 미-중 갈등이 패권 경쟁 양상으로 확대되면서 전 세계 국가들의 아슬아슬한 줄타기 속에서도 중미 지역은 지정학적 요충지로서 양측 모두에게 수표장(Checkbook) 외교를 통한 혜택을 누려왔다.

[그림 1] 중미 경제성장을 추이 및 전망



자료: 포스코경영연구원 2019.10 종합

물론 최근 중미의 무서류(Undocumented) 이민자들의 미국 국경 진입 시도 증가로 미국-멕시코간 국경 통제 문제로 갈등을 겪으면서 미국의 대외 원조 축소 압박을 받고

있으며, 중남미 전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반정부 시위의 확산으로 인해 중미 지역의 경제 성장 전망도 하향 조정되었지만, 미국 소비 호조세 지속과 중국의 투자 증가세로

인해, 국내 정치 문제로 큰 소요사태를 겪는 니카라과를 제외하면 2020년에도 여전히 2% 중반대의 성장을 예상할 수 있다. 특히, 파나마의 경우, 글로벌 교역 축소에도 불구

하고, 대형 구리 광산(Cobre Panama)의 상업 생산 개시에 힘입어 4.1%대의 높은 성장이 예상된다.

[그림 2] 중미 시장의 산업적 특성



자료: 포스코경영연구원 종합

이번 FTA가 발효된 중미 국가들의 산업적 특징을 살펴보면, 크게 저임금을 기반으로 한 가공무역이 발달한 북부의 엘살바도르, 온두拉斯, 니카라과와 서비스, 물류 및 관광업이 발달한 남부의 코스타리카와 파나마로 구분할 수 있다. 과거에는 인프라나 치안 문제 등으로 인해 북부 클러스터에는 관심이 부족한 편이었지만, 최근 중남미 제조업 강국으로서 인근 멕시코의 자동차 산업이 고도화되면서 중미 국가들과의 분업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멕시코에서 AMLO 정부 출범 이후, 정책적으로 최저 임금이 계속 인상되면서 자동차 부품 산업에서 상대적으로 부가가치가 낮은

품목의 경우, 인접한 중미의 북부 권역 국가들로 생산 기지 이전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중미 지역의 외국인 직접투자(FDI)의 경우, 지난 2010-17년간 연평균 11.7%씩 성장해 왔는데, 이들 대부분이 코스타리카와 파나마(2017년 기준, 75.9% 비중)에 집중되면서 남부 권역은 이미 사업 환경이 잘 갖춰져 있어 점차 선진국型 산업으로 다양화되는 추세이다. 최근에는 기존 제조업이나 물류업 외에도 IT나 바이오 산업이 각광받고 있는 추세이다.

한국 기업들의 중미 시장 활용과 진출 전략 시사점

이번 한-중미 FTA 발효를 통해 정부의 보도 자료에서도 명확히 드러나듯이, 한국은 자동차, 철강 등과 같은 주력 수출 품목들 외에도 화장품, 의약품, 식음료 및 섬유 제품 등과 같은 중소 기업 품목들의 수출 증가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이번 FTA를 계기로 해서 중미의 정부 조달 시장 개방을 앞두고, 한국 정부는 에너지, 인프라 및 건설 분야에서 우리 기업들의 현지 진출을 돋기 위해 중미 경제통합은행(CABEI)에 4.5억 달러를 출자하여 대만에 이은 역외 최대 지분을 보유한 회원국(지분율 7.58%)으로서 참여하면서 중미 역내 경제 발전을 지원하고, 현지 발주하는 인프라 프로젝트에 한국 기업들이 참여할 경우, 자금 조달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향후 중미 지역을 중남미 건설 및 인프라 시장의 교두보로서 활용할 수 있게 하였다. 현재 북부 권역의 온두라스, 니카라과 등은 만성적인 전력난으로 발전 및 송·배전 인프라 개발이 필요한 상황이고, 엘살바도르의 경우, 해상 물류와 연계한 항만 개발 및 공항 등 교통 인프라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아울러, 중미 국가들이 자신들의 기대와 같이 현재보다 더 진전된 수준의 경제 통합을

이루어낼 경우, 향후 우리 기업들의 미주 생산 거점으로서의 활용 증가도 기대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과거 멕시코가 NAFTA 체결로 북미 시장에 편입되면서 멕시코와 중미간 분업은 크게 약화되었다. 특히, 중국이 미국 수출의 생산 기지 역할을 오랫동안 하면서 중미 국가들은 글로벌 공급사슬관리(Global Supply Chain Management)에서 분리되었다. 그러나 지난 20년간 중국의 장기 성장에 따른 인건비 증가와 미국 정부의 중국 견제로 최근 생산 기지를 제 3국으로 이전하는 추세여서 미국 수출의 지역 허브로서 중미 지역도 관심이 증가하였다. 특히, 멕시코 AMLO 정부가 중미 경제 재건을 지원함으로써 미-멕시코간 국경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어 미국-멕시코-중미로 이어지는 새로운 역내 가치 사슬(Regional Value Chain)이 만들어질 가능성도 있다.

한국이 아시아 국가들 중에서 최초로 중미 5개국과 이번 FTA를 통해 좋은 협력 기회를 확보한 만큼, 기존 물리적 거리의 한계를 극복하고, 상호보완적인 시장 구조를 잘 활용하여 서로 이해와 신뢰를 통해 시너지를 창출함으로써 한국과 중미 모두 지속 성장 하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

FTA TRADE REPORT



FTA ANALYSIS

인도네시아의 신규 통상통관환경 및 FTA 활용

안소영 | 국제원산지정보원 활용연구팀 부연구위원

황선영 | 국제원산지정보원 활용연구팀 전문연구원

이주연 | 국제원산지정보원 활용연구팀 전문연구원

우리나라 FTA 체결현황 및 용어정리

김수정 | 국제원산지정보원 연구기획실 선임연구원



안소영



황선영



이주연

국제원산지정보원
활용연구팀
부연구위원

국제원산지정보원
활용연구팀
전문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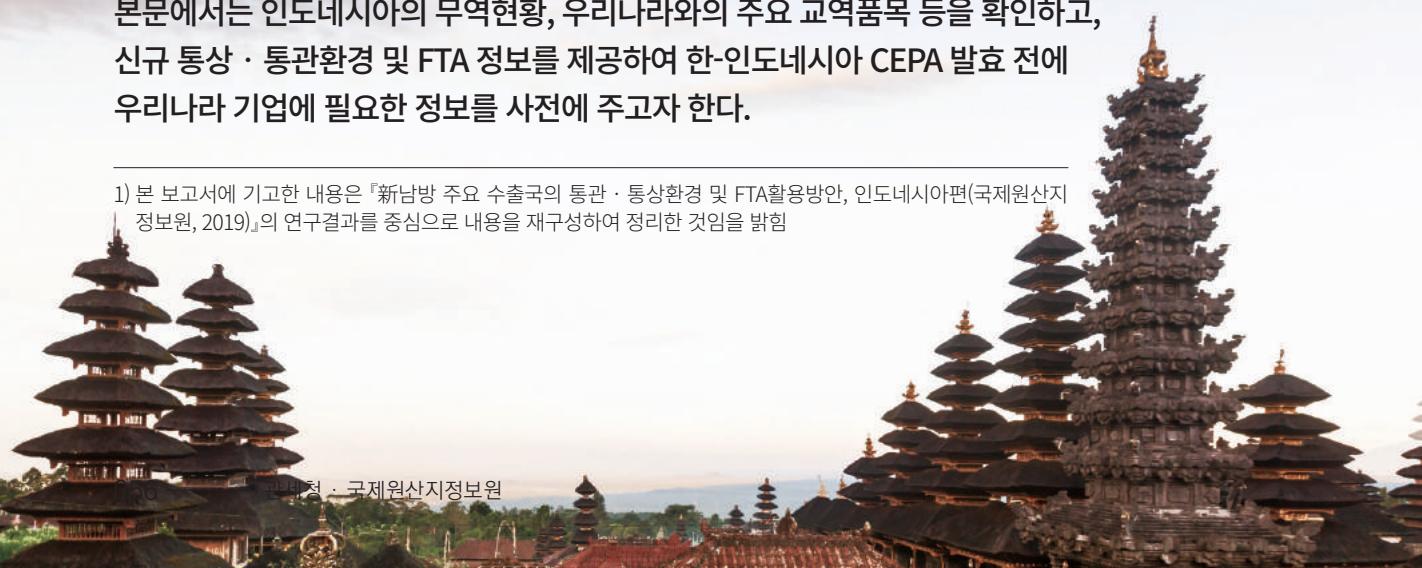
국제원산지정보원
활용연구팀
전문연구원

인도네시아의 신규 통상통관환경 및 FTA 활용¹⁾

인도네시아는 국토면적이 한반도의 약 9배에 달하며, 인구가 약 2억 6천만 이상으로 성장가능성이 매우 높은 국가이다. 현재 인도네시아는 우리나라와 제12위의 교역상대국이며 풍부한 천연자원과 젊은 노동력, 성장하는 중산층 시장 및 지리적 이점 등으로 인해 성장잠재력이 높은 아세안 최대시장으로 평가받고 있다. 동 국가는 최근 신남방국가의 하나로 언급되고 있으며, 한-인도네시아 CEPA 역시 최종 타결되었다.

본문에서는 인도네시아의 무역현황, 우리나라와의 주요 교역품목 등을 확인하고, 신규 통상 · 통관환경 및 FTA 정보를 제공하여 한-인도네시아 CEPA 발효 전에 우리나라 기업에 필요한 정보를 사전에 주고자 한다.

1) 본 보고서에 기고한 내용은 『新남방 주요 수출국의 통관 · 통상환경 및 FTA 활용방안, 인도네시아편(국제원산지정보원, 2019)』의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내용을 재구성하여 정리한 것임을 밝힘



1. 인도네시아 무역현황

1) 인도네시아의 국가별 수출입 동향

2017~2018년 인도네시아 총 수출액은 약 USD 3,490억불이며, 이 중 인도네시아의 주요 수출국은 중국(501억불), 일본(372억불), 미국(362억불), 인도(278억불), 싱가포르(257억불), 한국(177억불) 등으로 우리나라를 차지한다.

2017~2018년 인도네시아 총 수입액은 약 USD 3,455억불로 이 중 인도네시아의 주요 수입국은 중국(813억불), 싱가포르(383억불), 일본(332억불), 태국(202억불), 미국(183억불), 한국(172억불) 등으로 수입에서도 우리나라를 차지한다.

【인도네시아의 국가별 수출입 동향】

[단위: 백만불, %]

순위	국가	수출			비중	순위	국가	수입			비중
		2017년	2018년	합계				2017년	2018년	합계	
	전체	168,804	180,209	349,013	100%		전체	156,895	188,673	345,568	100%
1	중국	23,049	27,127	50,176	14%	1	중국	35,767	45,538	81,305	24%
2	일본	17,791	19,480	37,271	11%	2	싱가포르	16,888	21,439	38,327	11%
3	미국	17,810	18,471	36,281	10%	3	일본	15,241	17,976	33,217	10%
4	인도	14,083	13,726	27,809	8%	4	태국	9,279	10,952	20,231	6%
5	싱가포르	12,767	12,991	25,758	7%	5	미국	8,149	10,212	18,361	5%
6	한국	8,187	9,532	17,719	5%	6	한국	8,122	9,088	17,210	5%
7	말레이시아	8,467	9,436	17,903	5%	7	말레이시아	8,796	8,602	17,398	5%
8	필리핀	6,627	6,825	13,452	4%	8	호주	6,010	5,825	11,835	3%
9	태국	6,462	6,819	13,281	4%	9	인도	4,048	5,017	9,065	3%
10	대만	4,219	4,701	8,920	3%	10	사우디아라비아	3,167	4,911	8,078	2%

자료 : 한국무역협회

2) 인도네시아의 품목별 수출 동향

2018년 수출금액을 기준으로 세계적인 자원부국인 인도네시아는 석탄 · 천연가스 · 원유 등의 광물성 연료와 금속광물을 포함한 광산물 · 농림수산물과 같은 1차 산업 생산품을 주로 수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에서도 2018년 인도네시아의 주요 수출품목(HS 6단위 기준)은 석탄(HS 270119, 270112), 팜유와 그 분획물(HS 151190), 천연가스(HS 271111, 271121), 석유와 역청유(HS 270900) 등으로 확인되었다.

【인도네시아의 품목별 수출 동향】

[단위: 백만불, %]

순위	산업분류	HS코드	품명	수출		2017-2018 증감률
				2017년	2018년	
전체				168,804	180,209	6.8%
1	석탄	270119	그 밖의 석탄(무연탄, 유연탄 제외)	10,482	14,074	34.3%
2	식물성물질	151190	팜유와 그 분획물(조유 제외)	13,815	12,951	-6.3%
3	천연가스	271111	천연가스(액화)	6,185	6,959	12.5%
4	석탄	270112	유연탄	7,380	6,536	-11.4%
5	원유	270900	석유와 역청유(원유)	5,238	5,120	-2.2%
6	동광	260300	구리광과 그 정광(精礦)	3,440	4,187	21.7%
7	임산부산물	400122	공업 규격화된 천연고무(TSNR)	4,960	3,837	-22.6%
8	천연가스	271121	천연가스(가스 상태)	2,600	3,633	39.7%
9	식물성물질	151110	팜유와 그 분획물(조유)	4,698	3,577	-23.9%
10	석탄	270210	갈탄(등결상태 제외)	2,594	3,329	28.3%
11	제지원료	470329	활엽수 화학목재펄프	2,286	2,516	10.1%
12	금 · 은 및 백금	710812	가공하지 않은 금	1,839	2,032	10.5%
13	패션잡화	711319	귀금속(은 제외)으로 만든 신변장식용품과 그 부분품	2,556	1,929	-24.5%
14	기타정밀화학 제품	382319	기타 공업용 모노카르복시 지방산 · 유지를 정제할 때 생긴 애시드유	1,760	1,673	-4.9%
15	목재류	441231	열대산 목재의 합판(대나무 제외)	1,108	1,548	39.7%
16	자동차	870322	왕복 피스톤 내연기관의 차량 (실린더용량 1,000 초과 1,500 이하)	1,150	1,534	33.4%

17	주석제품	800110	합금하지 않은 주석	1,571	1,524	-3.0%
18	기타금속광물	711299	기타 금속형태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906	1,383	52.6%
19	식물성물질	151329	팜핵유나 바비수유와 이들의 분획물 (조유 제외)	1,832	1,369	-25.3%
20	합금철 선철 및 고철	720260	페로니켈(ferro-nickel)	1,332	1,361	2.2%

주 : 2018년 기준 인도네시아 수입금액 상위 20대 품목[산업분류 MTI 3단위, HS 코드 6단위]

자료 : 한국무역협회

3) 인도네시아의 품목별 수입 동향

인도네시아의 경우 자원은 풍부하지만 인프라 발달이 미비하고 더욱이 최근 인구 증가와 함께 연료 수요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주로 제품 형태의 광물성 연료와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기기, 완제품 등을 수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도 2018년

인도네시아의 주요 수입품목(HS 6단위 기준)은 원유를 제외한 경질유와 조제품(HS 271012), 석유와 역청유(HS 270900, 271019), 전화기 부분품(HS 851770), 밀과 메슬린(HS 100199), 가공하지 않은 금(HS 710812)으로 나타났다.

【인도네시아의 품목별 수입 동향】

[단위: 백만불, %]

순위	산업분류	HS코드	품명	수입		2017-2018 증감률
				2017년	2018년	
전체				156,895	188,673	20.3%
1	석유제품	271012	경질(輕質)석유와 조제품	9,265	11,071	19.5%
2	원유	270900	석유와 역청유(원유)	7,064	9,161	29.7%
3	석유제품	271019	경질유와 조제품을 제외한 기타 석유와 역청유 (원유 제외) 및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품	4,854	6,073	25.1%
4	유선통신기기	851770	전화기 부분품	3,512	4,169	18.7%
5	식물성물질	100199	밀과 메슬린(듀럼종 밀 제외)	2,637	2,571	-2.5%
6	금 · 은 및 백금	710812	가공하지 않은 금	1,026	2,126	107.2%

7	식물성물질	230400	대두 착유 후 남은 오일케이크 및 고체형태의 유박	1,642	2,045	24.6%
8	기호식품	170114	그 밖의 사탕수수당	2,018	1,755	-13.0%
9	LPG	271112	프로판	1,275	1,531	20.1%
10	LPG	271113	부탄	1,431	1,504	5.1%
11	기타농산물	520100	면[카드(card)나 코움(comb)하지 않은 것]	1,325	1,442	8.8%
12	영상기기	852990	기타 전기기기 부분품	980	1,236	26.1%
13	곡실류	120190	대두(종자 제외)	1,151	1,103	-4.1%
14	컴퓨터	847130	휴대용 자료처리기계	957	1,052	9.9%
15	건설광산기계	842952	360도 회전의 상부구조를 가진 채굴용 · 굴착용 · 다지기용 기계	674	986	46.4%
16	칼륨비료	310420	염화칼륨	794	974	22.6%
17	자동차부품	870840	차량용 기어박스와 그 부분품	725	957	32.1%
18	자동차부품	870899	기타 차량용 부분품	867	925	6.6%
19	사무기기	870410	덤프차(비고속도로용)	514	913	77.6%
20	합금철 선철 및 고철	720449	철의 기타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492	902	83.5%

자료 : 한국무역협회



2. 우리나라의 對인도네시아 수출입 현황

1) 우리나라의 對인도네시아 수출입 현황

우리나라는 2007년 아세안과 FTA를 체결한 이후 對인도네시아 교역이 대체로 증가하는 추세였으나, 2011년 최고 교역액(약 307억)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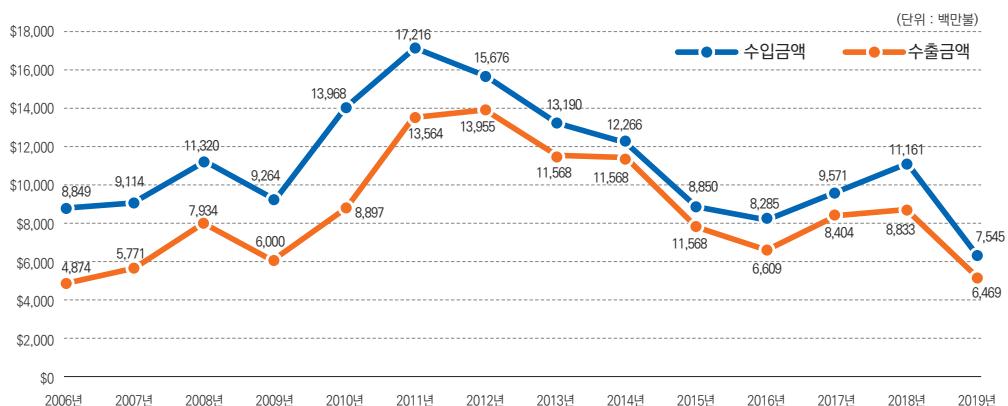
달성한 이후 계속 감소하다가, 최근 다시 증가세를 회복하였다.

【우리나라의 對인도네시아 수출입 현황】

[단위: 백만불, %]

구분	수출		수입		총교역액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2019년 10월	6,469	-	7,545	-	14,014	-
2018년	8,833	5.1%	11,161	16.6%	19,994	11%
2017년	8,404	27.2%	9,571	15.5%	17,975	21%
2016년	6,609	-16.1%	8,285	-6.4%	14,894	-11%
2015년	7,872	-30.7%	8,850	-27.8%	16,722	-29%
2014년	11,361	-1.8%	12,266	-7.0%	23,627	-5%
2013년	11,568	-17.1%	13,190	-15.9%	24,758	-16%
2012년	13,955	2.9%	15,676	-8.9%	29,631	-4%
2011년	13,564	52.5%	17,216	23.1%	30,780	35%
2010년	8,897	48.3%	13,986	51.0%	22,883	50%
2009년	6,000	-24.4%	9,264	-18.2%	15,264	-21%
2008년	7,934	37.5%	11,320	24.2%	19,254	29%
2007년	5,771	18.4%	9,114	3.0%	14,885	8%
2006년	4,874	-3.4%	8,849	8.1%	13,723	4%

자료 : 한국무역협회



2) 우리나라의 對인도네시아 품목별 수출 동향

2018년 기준 우리나라의 對인도네시아 수출 상위 품목은 석유 및 석유화학제품과 같은 화학공업제품과 기계 및 전자전기제품 등으로 확인되었다. 이 중, 특히 반도체용 전자부품인 메모리와 프로세서와 컨트롤러의 경우에는

전년대비 수출 증감률이 각각 97%, 131%로 모두 큰 폭으로 증가한 바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對인도네시아 수출 1위 품목인 경질(輕質)석유와 조제품의 경우에도 수출 증감률이 155%로 전년대비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우리나라의 對인도네시아 품목별 수출 현황】

[단위: 백만불, %]

순위	산업분류	HS코드	품명	수출		2017-2018 증감률
				2017년	2018년	
전체				8,404	8,833	5%
1	석유제품	271012	경질(輕質)석유와 조제품	304	776	155%
2	석유제품	271019	기타 석유와 역청유 및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품(원유 제외)	638	529	-17%
3	선박해양 구조물 및 부품	890610	군함	727	342	-53%
4	반도체	854232	메모리	115	227	97%
5	건설광산기계	842952	360도 회전의 상부구조를 가진 채굴용 · 굴착용 · 다지기용 기계	89	143	61%

6	편직물	600410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	144	131	-9%
7	합성고무	400219	기타 스티렌-부타디엔 고무(SBR) · 카르복시화한 스티렌-부타디엔 고무(XSBR)	152	117	-23%
8	무선통신기기	852990	기타 전기기기 부분품	118	117	-1%
9	합성수지	390230	프로필렌 공중합체	89	110	24%
10	합성고무	400220	부타디엔 고무(BR)	135	106	-21%
11	반도체	854231	프로세서와 컨트롤러	45	104	131%
12	기타석유화학제품	292910	이소시아네이트	96	103	7%
13	아연제품	790111	합금하지 않은 아연(아연 99.99%이상)	95	92	-3%
14	철강판	720839	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 60cm 이상, 코일모양, 열간압연, 두께 3mm 미만)	168	91	-46%
15	편직물	600622	면으로 만든 기타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염색한 것)	100	87	-13%
16	합성수지	390330	아크릴로니트릴-부타디엔-스티렌 공중합체(ABS)	67	85	27%
17	정밀화학원료	280300	탄소(카본블랙 및 탄소 물품 포함)	57	77	35%
18	편직물	600632	합성섬유로 만든 기타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염색한 것)	89	73	-18%
19	합성수지	390769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54	66	22%
20	철강판	720917	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 60cm 이상, 코일모양, 냉간압연, 두께 0.5~1mm)	101	66	-35%

주 : 2018년 기준 한국의 對인도네시아 수입금액 상위 20대 품목[산업분류 MTI 3단위, HS 코드 6단위]

자료 : 한국무역협회

3) 우리나라의 對인도네시아 품목별 수입 동향

2018년 기준 우리나라의 對인도네시아 수입 상위 품목은 유연탄 · 구리광 · 원유 등을 포함한 광산물과 농림수산물, 철강금속제품 등으로 나타났다. 이 중, 특히 기타 금속

광물과 합금철 · 선철 등 철강금속 반제품의 수입이 모두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한 바 있다.

【우리나라의 對인도네시아 품목별 수입 현황】

[단위: 백만불, %]

순위	산업분류	HS코드	품명	수입		2017-2018 증감률
				2017년	2018년	
			전체	9,571	11,161	17%
1	석탄	270112	유연탄	2,116	2,254	7%
2	천연가스	271111	천연가스(액화)	1,253	1,498	20%
3	동광	260300	구리광과 그 정광(精礦)	356	699	96%
4	원유	270900	석유와 역청유(원유)	448	563	26%
5	석탄	270119	그 밖의 석탄(무연탄, 유연탄 제외)	444	332	-25%
6	임산부산물	400122	공업 규격화된 천연고무(TSNR)	344	285	-17%
7	강반제품 및 기타철강제품	720712	철이나 비합금강의 반제품(탄소 0.25/100 미만, 횡단면 직사각형인 것)	145	262	81%
8	주석제품	800110	합금하지 않은 주석	210	241	15%
9	목재류	441231	열대산 목재의 합판(대나무 제외)	175	241	38%
10	제지원료	470329	활엽수 화학목재펄프	204	228	12%
11	식물성물질	151190	팜유와 그 분획물(조유 제외)	163	222	36%
12	석유제품	271019	경질유와 조제품을 제외한 기타 석유와 역청유(원유 제외) 및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품	144	177	23%
13	합금철 선철 및 고철	720260	페로니켈(ferro-nickel)	65	174	168%
14	기타금속광물	711299	금 · 백금을 제외한 귀금속이나 귀금속 화합물을 포함한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3	150	4,900%
15	신변잡화	640399	기타 신발류	105	127	21%
16	철강판	721913	스테인리스강의 평판압연제품 (폭 60cm 이상, 두께 3~4.75mm)	0	115	-
17	기타정밀 화학제품	382319	기타 공업용 모노카르복시 지방산 · 유지를 정제할 때 생긴 애시드유	76	83	9%
18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901380	그 밖의 액정 디바이스 및 광학기기	49	78	59%
19	식물성물질	151319	야자(코프라)유와 그 분획물(조유 제외)	81	73	-10%
20	의류	620193	인조섬유제의 남성용 또는 소년용 방한용 외투	50	73	46%

자료 : 한국무역협회

3. 한-아세안(인도네시아) FTA 활용 산업별 수출현황

1) 2018년 우리나라의 한-아세안(인도네시아) FTA 활용률

[단위 : 백만불, %]

수출	특혜적용금액	특혜대상금액	FTA 활용률 ¹⁾	전체미화금액
한-아세안 FTA ²⁾	6,795	13,036	52.1%	38,345
- 말레이시아	1,022	1,769	57.8%	8,989
- 태국	2,124	4,008	53.0%	8,503
- 인도네시아	2,431	4,739	51.3%	8,834
- 필리핀	1,218	2,520	48.3%	12,019

1) FTA 활용률=특혜적용금액/특혜대상금액

2) 한-아세안 FTA는 베트남 제외한 수치이며, 표기되지 않은 개별국가는 2018년 수출실적 없음

2018년 수출금액 기준 우리나라의 對인도네시아 FTA 수출활용률은 약 51.3%로 한-아세안 전체 FTA 활용률(52.1%)을 다소 밑돌며 2018년 우리나라 수출실적이 있는 아세안 개별국가 4개국 가운데 3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최근(2019.10.16) 실질 타결된 한-인니 CEPA는 양국 모두 한-아세안 FTA보다 높은 수준의 시장개방에 합의함으로써, 한-인니 CEPA가 공식 발효될 경우 對인도네시아 FTA 대상품목이 확대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인도네시아 FTA 수출활용률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인니 CEPA 자유화수준】

자유화수준				
국가명	기준	한-아세안 FTA	추가개방	한-인도네시아 CEPA
한국	수입액	93.6%	3.7%	97.3%
	품목수	90.2%	5.3%	95.5%
인도네시아	수입액	88.5%	8.5%	97.0%
	품목수	80.1%	12.9%	93.0%

2) 2018년 우리나라의 한-아세안(인도네시아) FTA 활용 산업별 수출 현황

한-아세안 FTA 활용 수출 對인도네시아	산업분류 ¹⁾	특혜적용금액	특혜대상금액	FTA활용률 ²⁾	전체미화금액
	광산물	34	37	91.9%	1,361
	화학공업제품	839	1,237	67.8%	1,853
	철강금속제품	581	881	65.9%	1,275
	생활용품	62	106	58.5%	173
	전자전기제품	159	316	50.3%	1,086
	플라스틱고무 및 가죽제품	51	120	42.5%	202
	농림수산물	40	95	42.1%	184
	기계류	409	1,097	37.3%	1,612
	석유류	255	848	30.1%	1,066
	잡제품	0.4	2	20.0%	20
총합계		2,431	4,739	51.3%	8,834

1) 산업분류 MTI 1단위 기준

2) FTA 수출활용률=특혜적용금액/특혜대상금액

2018년 우리나라의 인도네시아 수출에서 한-아세안 FTA를 가장 많이 활용한 산업은

광산물, 화학공업제품, 철강금속제품, 생활용품, 전자전기제품(MTI 1단위 기준)이다.

우리나라의 对인도네시아 한-아세안 FTA 활용 주력 수출 산업	
광산물	석유제품, 금은 및 백금, 기타 비금속광물 등
화학공업제품	합성고무, 합성수지, 농약 및 의약품, 기타 석유화학제품 등
철강금속제품	철강판, 아연제품, 주단조품 등
생활용품	신변잡화, 패션잡화, 문구 및 완구, 악기, 가구, 주방용품 등
전자전기제품	건전지 및 축전지, 전력용기기, 전기부품, 무선통신기기 등

이 중 FTA 특혜대상금액이 가장 높은 산업은 화학공업제품(약 12억불)으로 동 제품은 특혜대상금액뿐만 아니라 특혜적용 금액도 함께 높아 对인도네시아 산업별 FTA 활용률에서 2위를 차지(67.8%)하고 있다.

한편, 기계류의 경우 특혜대상금액이 약 10억불로 화학공업제품 다음으로 높은데 비해 특혜적용금액(약 4억불)은 이의 절반에도 못 미쳐 상당히 낮은 FTA 수출활용률(37.3%)을 보이고 있다.

FTA 특혜대상금액이 높은 산업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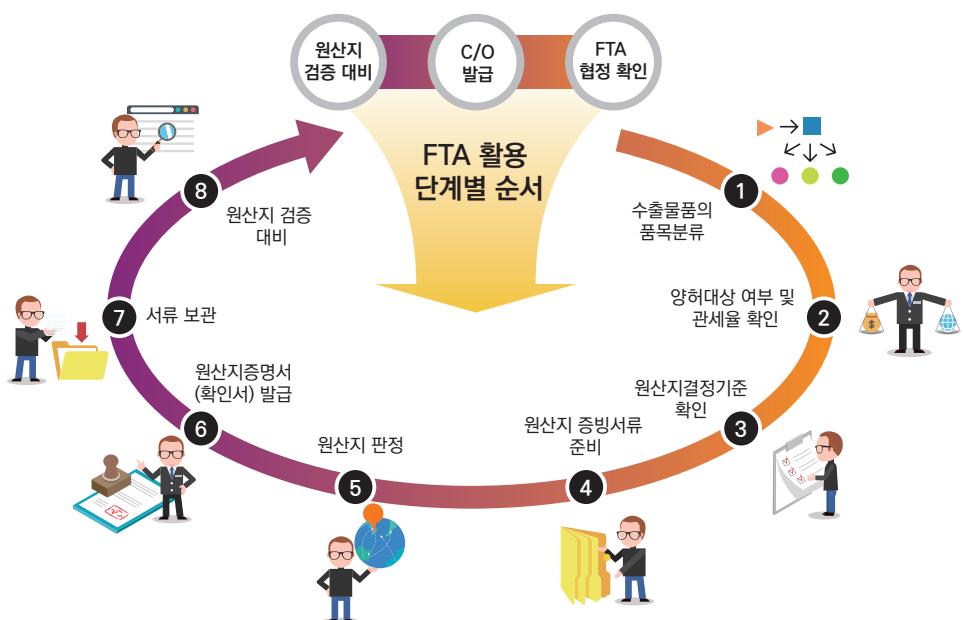
- 화학공업제품 (약 12억불)
- 기계류 (약 10억불)
- 철강금속제품 (약 8.8억불)
- 섬유류 (약 8.4억불)
- 전자전기제품 (약 3억불)

FTA 활용률이 인도네시아 평균(51.3%) 이하인 산업은?

- 전자전기제품 (50.3%)
- 플라스틱고무 및 가죽제품 (42.5%)
- 농림수산물 (42.1%)
- 기계류 (37.3%)
- 섬유류 (30.1%)
- 잡제품 (20.0%)

4. 한-아세안(인도네시아) FTA활용 및 유의사항

1) 한-아세안(인도네시아) FTA활용 단계별 순서



① 수출물품의 품목분류

품목분류는 물품에 HS코드를 부여하는 것으로 제품의 HS코드에 따라 양허 관세율 및 원산지결정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 FTA 활용의 첫 단계로서 이를 잘못 수행하면 이후 원산지 판단 및 FTA 업무에 중대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특히 수입국(인도네시아) 기준의 HS코드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세번변경기준이 적용되는 물품은 투입 원재료의 HS코드도 정확히 확인하여야 한다.

② 물품의 양허대상 여부 및 관세율 확인

발효된 협정상 해당 물품이 양허대상인지 또는 어느 정도 관세가 경감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일부품목은 양허대상에서 제외시키거나 관세 인하율이 미미한 경우도 있다. 그리고 양허되는 품목이라 하더라도 점진적으로 관세율이 양허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해당 연도에 적용될 세율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③ 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 확인

FTA는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되기 위한 원산지 규정을 두고 있다. 원산지 규정은 크게 여러 품목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일반기준’과 특정품목에 대하여 적용되는 ‘품목별 기준’으로 나눕니다. 품목별 기준은 협정별 또는 물품별(HS코드 6단위 기준)로 상이하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활용하고자 하는 협정과 물품별로 정확하게 확인하여야 한다.

④ 원산지 증빙서류의 준비

원산지 증빙서류란 ‘원산지상품’으로 판정받기 위한 근거서류이며, 일반적으로 원산지소명서, 제조공정도, 자자명세서, 원산지(포괄)확인서, 국내제조(포괄)확인서, 제조원가계산서 등의 증빙서류가 요구된다.

⑤ 물품의 원산지 판정

원산지 판정은 대상물품의 생산과 관련된 정보(투입원재료 내역, 원재료의 HS코드, 원재료 및 상품의 가격, 원재료의 원산지 지위, 제조공정 등)를 바탕으로 해당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말한다.

⑥ 원산지증명서(확인서) 발급

원산지 판단 결과 원산지결정기준이 충족된 물품은 각 협정에서 정한 방식에 따른 ‘원산지증명서(C/O, Certificate of Origin)’가 발급되어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또한 국내에서 거래되는 원산지 물품은 원산지증명서가 아닌 원산지(포괄)확인서를 발급한다.

⑦ 관련 서류보관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완료되면 원산지 판정 자료 및 증명서 발급관련 자료를 증명일 또는 작성일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원산지 검증에 대비하여야 한다.

⑧ 원산지 검증 대응

원산지 검증이란 협정 또는 국내법에서 정한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될 수 있는 요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거나 위반자에 대해 제재조치를 취하는 일련의 행정절차를 의미한다. 따라서 피검증자는 원산지를 입증하기 위해 협정 및 국내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보관하였던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C/O) 작성 시 유의사항

한-아세안 FTA 이행위원회에서 2019년 9월 1일부터 HS 2017 기준 품목별 원산지결정 기준(PSR)을 적용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과도기간²⁾ 중 한-아세안 FTA 당사국별 HS

2017 기준 품목별 원산지기준 운영여부가 상이하기 때문에, 한-아세안 FTA 수출당사국에 따라 원산지증명서의 HS 품목번호 기재방법이 변경됨에 유의하여야 한다.

- 2019. 9월 기준, (국내절차 완료 국가) 한국, 필리핀, 라오스, 싱가포르, 태국(국내절차 미완료 국가)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미얀마, 베트남
- (수입국이 필리핀, 라오스, 싱가포르, 태국인 경우) 수출 물품의 HS 2017 품목번호를 원산지증명서에 기재*
* 단, FTA 특례법 시행규칙 별표4 한-아세안 FTA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표에서 HS 2017의 원산지기준 충족 여부 확인 필요
- (수입국이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미얀마, 베트남인 경우) 현행과 같이 수출물품의 HS 2017 품목번호에 해당하는 HS 2012 품목번호를 확인하여 원산지증명서에 기재

3) 인도네시아의 특혜 원산지 제도

인도네시아로 수입되는 물품이 특혜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인도네시아가 체결한 각 협정의 원산지결정기준, 직접운송요건, 원산지증명서 발급기준을 모두 충족해야만 한다.

- (원산지결정기준) 인도네시아가 체결한 아세안 상품무역협정, 아세안-중국, 아세안-

한국, 아세안-인도, 아세안-호주-뉴질랜드, 인도네시아-파키스탄, 아세안-일본 협정에서는 모든 물품에 대하여 개별기준인 PSR(품목별기준, Product Specific Rules)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별도의 PSR이 규정되지 않은 물품은 일반기준*이 적용된다.

* 완전생산물품이 아닌 물품 중 개별 품목별 기준이 규정되지 않은 물품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준

2) HS 2017 기준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에 대한 국내절차를 마무리하지 못한 국가에 대해서는 과도기간을 허용하나, 2020년 1월 1일부터는 완전이행

2019. 11월 기준

구분	일반기준
아세안 상품무역협정(ATIGA)	RC(BD/BU) 40% or CTH
아세안-중국 자유무역협정(ACFTA)	RC(BU) 40% or MC 60%
아세안-한국 자유무역협정(AKFTA)	RC(BD/BU) 40% or CTH
인도네시아-일본 경제동반자협정(IJEPNA)	-
아세안-인도 자유무역협정(AIFTA)	RC(BU) 35% + CTH or MC 65% + CTSN
아세안-호주-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AANZFTA)	RC(BD/BU) 40% or CTH
인도네시아-파키스탄 자유무역협정(IPPTA)	MC 60%
아세안-일본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AJCEP)	RC(BD) 40% or CTH

주) RC : 역내부가가치비율(Regional Contents), BD: 간접법(Build-Down), BU: 직접법(Build-Up), MC: 비원산지재료비율(iMproted Contents), CTH: 4단위 세번변경기준(Change of Tariff Heading), CTSN: 6단위 세번변경기준(Change of Tariff Subheading)

자료 : 주요 교역국의 통관제도-인도네시아편(한국조세재정연구원); Regulation of Minister of Finance 부속서 1을 바탕으로 저자 추가 작성

- (직접운송요건) 각 협정에서 규정한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한 물품이 특혜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직접운송요건 또한 충족 해야하는데, 이는 특혜관세 대상이 되는 물품이 수출국을 출발하여 비당사국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수입당사국으로 운송되거나, 또는 비당사국을 거쳐 운송되더라도 비당사국 경유 · 환적요건*이 충족한 경우를 말한다.

* 지리 · 운송상 정당한 경우에 한함(경유국 거래 및 소비는 불인정)

직접운송과 관련하여 인도네시아에서는 2018년 도부터 환적화물에 대해 FTA적용 관련 새로운 규정을 적용중이다. 즉, 환적

시 환적국가의 세관에서 비가공증명서 (Certificate of Non-Manipulation)를 발급받아야 협정 적용이 가능하다.



【홍콩 비가공증명서 샘플】

登記號碼: Certificate No.:	 香港海關 Hong Kong Customs and Excise Department																																																																																															
中轉確認書 Certificate of Non-manipulation																																																																																																
<small>茲申請者：</small> <small>為符合內地與不同國家及地區所簽訂的自由貿易協定下的「直接運輸」之要求，下列貨物在香港停留期間曾接受香港海關之監督。詳情如下：</small> <small>To Applicant:</small> <small>To fulfill the requirement of 'Direct Consignment' under the Free Trade Agreement (FTA) signed by the Mainland with other countries and regions, the following consignment has been under the control of the Hong Kong Customs in Hong Kong. Details are as follows:</small>																																																																																																
第一部分 貨物詳情 Part I Consignment Particulars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15%;">Place of Origin: 目的地:</td> <td colspan="4"></td> </tr> <tr> <td>Place of Final Destination: 香港運送方式: Mode of movement in HK:</td> <td style="width: 30%;">從 空運/陸運/海運* From Air/Land/Sea*</td> <td style="width: 10%;">至 空運/陸運/海運* To Air/Land/Sea*</td> <td style="width: 30%;">實際抵港 ATA:</td> </tr> <tr> <td>香港船隻/車輛/ 航班編號: Incoming Vessel/Vehicle/ Flight no.:</td> <td>提單 / 交通運單 (首程運輸工具) 號碼: Bill of Lading/Airway Bill (1st conveyance)*</td> <td>日期時間: ETA:</td> <td></td> </tr> <tr> <td>香港船隻/車輛/ 航班編號: Outgoing Vessel/Vehicle/ Flight no.:</td> <td>提單 / 交通運單 (尾程運輸工具) 號碼: Bill of Lading/Airway Bill (2nd conveyance)*</td> <td>預計離港 ETD:</td> <td></td> </tr> <tr> <td>貨物名稱: 件數/重量: Pieces/Weight:</td> <td colspan="4"></td> </tr> <tr> <td>附加海關封條詳情 Details of affixing Customs seal:</td> <td style="width: 25%; text-align: center;">貨櫃號碼/車具號碼/ 運載單號碼 Container no./ULD no./ (ULD vehicle no.)</td> <td style="width: 15%;">封號碼: Seal no.:</td> <td style="width: 20%;">施加封條地點: Place of affixing seal:</td> <td style="width: 20%;">施加封條日期/時間: Date/Time of affixing seal:</td> </tr> <tr>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香港 Incoming</td> <td></td> <td></td> <td></td> </tr> <tr>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香港 Outgoing</td> <td></td> <td></td> <td></td> </tr> <tr> <td>貨物有否在香港被處理: Consignment further handled in Hong Kong?</td> <td colspan="4"> <input type="checkbox"/> 有 <input type="checkbox"/> 裝卸/卸貨 <input type="checkbox"/> 重新包裝 <input type="checkbox"/> 保存 <input type="checkbox"/> 其他 <input type="checkbox"/> 保持貨物原本狀態 <input type="checkbox"/> 否 <small>Yes <input type="checkbox"/> Unloading/Devaising <input type="checkbox"/> Repacking <input type="checkbox"/> Storage <input type="checkbox"/> Others <input type="checkbox"/> Original status of consignment maintained <input type="checkbox"/> No</small> </td> </tr> <tr> <td>文件查閱: Document check:</td> <td colspan="4"> <input type="checkbox"/> 提單 <input type="checkbox"/> 檢單 <input type="checkbox"/> 原產地證明書 (號碼: Bill of Lading <input type="checkbox"/> Manifest <input type="checkbox"/> Country of Origin No.:) <input type="checkbox"/> 其他 (_____) <small>Others (_____)</small> </td> </tr> <tr> <td colspan="5" style="padding-top: 10px;"> 第二部分 貨主資料 Part II Particulars of Cargo Owner </td> </tr> <tr> <td>公司名稱: Company Name:</td> <td colspan="4"></td> </tr> <tr> <td>公司地址: Address:</td> <td colspan="4"></td> </tr> <tr> <td>電話號碼: Telephone no.:</td> <td style="width: 25%;">傳真號碼: Fax no.:</td> <td style="width: 20%;">電郵地址: E-mail address:</td> <td colspan="2" style="width: 35%;">日期: Date:</td> </tr> <tr> <td>負責人姓名: Name:</td> <td colspan="4"></td> </tr> <tr> <td colspan="5"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top: 10px;">  </td> </tr> <tr> <td colspan="5"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top: 10px;"> <small>海關印記 Hong Kong Customs Enquiry tel. no.: (852) 1152 0233 *請將不適用者刪去 Delete as appropriate</small> </td> </tr> <tr> <td colspan="5" style="text-align: right; padding-top: 10px;"> <small>署發日期: Date of issue: _____</small> </td> </tr> <tr> <td colspan="5"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top: 10px;"> <small>海關經理 Commissioner of Customs and Excise (_____) for Commissioners of Customs and Excise</small> </td> </tr> </table>					Place of Origin: 目的地:					Place of Final Destination: 香港運送方式: Mode of movement in HK:	從 空運/陸運/海運* From Air/Land/Sea*	至 空運/陸運/海運* To Air/Land/Sea*	實際抵港 ATA:	香港船隻/車輛/ 航班編號: Incoming Vessel/Vehicle/ Flight no.:	提單 / 交通運單 (首程運輸工具) 號碼: Bill of Lading/Airway Bill (1 st conveyance)*	日期時間: ETA:		香港船隻/車輛/ 航班編號: Outgoing Vessel/Vehicle/ Flight no.:	提單 / 交通運單 (尾程運輸工具) 號碼: Bill of Lading/Airway Bill (2 nd conveyance)*	預計離港 ETD:		貨物名稱: 件數/重量: Pieces/Weight:					附加海關封條詳情 Details of affixing Customs seal:	貨櫃號碼/車具號碼/ 運載單號碼 Container no./ULD no./ (ULD vehicle no.)	封號碼: Seal no.:	施加封條地點: Place of affixing seal:	施加封條日期/時間: Date/Time of affixing seal:		香港 Incoming					香港 Outgoing				貨物有否在香港被處理: Consignment further handled in Hong Kong?	<input type="checkbox"/> 有 <input type="checkbox"/> 裝卸/卸貨 <input type="checkbox"/> 重新包裝 <input type="checkbox"/> 保存 <input type="checkbox"/> 其他 <input type="checkbox"/> 保持貨物原本狀態 <input type="checkbox"/> 否 <small>Yes <input type="checkbox"/> Unloading/Devaising <input type="checkbox"/> Repacking <input type="checkbox"/> Storage <input type="checkbox"/> Others <input type="checkbox"/> Original status of consignment maintained <input type="checkbox"/> No</small>				文件查閱: Document check:	<input type="checkbox"/> 提單 <input type="checkbox"/> 檢單 <input type="checkbox"/> 原產地證明書 (號碼: Bill of Lading <input type="checkbox"/> Manifest <input type="checkbox"/> Country of Origin No.:) <input type="checkbox"/> 其他 (_____) <small>Others (_____)</small>				第二部分 貨主資料 Part II Particulars of Cargo Owner					公司名稱: Company Name:					公司地址: Address:					電話號碼: Telephone no.:	傳真號碼: Fax no.:	電郵地址: E-mail address:	日期: Date:		負責人姓名: Name:										<small>海關印記 Hong Kong Customs Enquiry tel. no.: (852) 1152 0233 *請將不適用者刪去 Delete as appropriate</small>					<small>署發日期: Date of issue: _____</small>					<small>海關經理 Commissioner of Customs and Excise (_____) for Commissioners of Customs and Excise</small>				
Place of Origin: 目的地:																																																																																																
Place of Final Destination: 香港運送方式: Mode of movement in HK:	從 空運/陸運/海運* From Air/Land/Sea*	至 空運/陸運/海運* To Air/Land/Sea*	實際抵港 ATA:																																																																																													
香港船隻/車輛/ 航班編號: Incoming Vessel/Vehicle/ Flight no.:	提單 / 交通運單 (首程運輸工具) 號碼: Bill of Lading/Airway Bill (1 st conveyance)*	日期時間: ETA:																																																																																														
香港船隻/車輛/ 航班編號: Outgoing Vessel/Vehicle/ Flight no.:	提單 / 交通運單 (尾程運輸工具) 號碼: Bill of Lading/Airway Bill (2 nd conveyance)*	預計離港 ETD:																																																																																														
貨物名稱: 件數/重量: Pieces/Weight:																																																																																																
附加海關封條詳情 Details of affixing Customs seal:	貨櫃號碼/車具號碼/ 運載單號碼 Container no./ULD no./ (ULD vehicle no.)	封號碼: Seal no.:	施加封條地點: Place of affixing seal:	施加封條日期/時間: Date/Time of affixing seal:																																																																																												
	香港 Incoming																																																																																															
	香港 Outgoing																																																																																															
貨物有否在香港被處理: Consignment further handled in Hong Kong?	<input type="checkbox"/> 有 <input type="checkbox"/> 裝卸/卸貨 <input type="checkbox"/> 重新包裝 <input type="checkbox"/> 保存 <input type="checkbox"/> 其他 <input type="checkbox"/> 保持貨物原本狀態 <input type="checkbox"/> 否 <small>Yes <input type="checkbox"/> Unloading/Devaising <input type="checkbox"/> Repacking <input type="checkbox"/> Storage <input type="checkbox"/> Others <input type="checkbox"/> Original status of consignment maintained <input type="checkbox"/> No</small>																																																																																															
文件查閱: Document check:	<input type="checkbox"/> 提單 <input type="checkbox"/> 檢單 <input type="checkbox"/> 原產地證明書 (號碼: Bill of Lading <input type="checkbox"/> Manifest <input type="checkbox"/> Country of Origin No.:) <input type="checkbox"/> 其他 (_____) <small>Others (_____)</small>																																																																																															
第二部分 貨主資料 Part II Particulars of Cargo Owner																																																																																																
公司名稱: Company Name:																																																																																																
公司地址: Address:																																																																																																
電話號碼: Telephone no.:	傳真號碼: Fax no.:	電郵地址: E-mail address:	日期: Date:																																																																																													
負責人姓名: Name:																																																																																																
																																																																																																
<small>海關印記 Hong Kong Customs Enquiry tel. no.: (852) 1152 0233 *請將不適用者刪去 Delete as appropriate</small>																																																																																																
<small>署發日期: Date of issue: _____</small>																																																																																																
<small>海關經理 Commissioner of Customs and Excise (_____) for Commissioners of Customs and Excise</small>																																																																																																

자료 : PENASCOP LOGISTIK

- (원산지증명서 작성 · 발급) 원산지결정 기준 및 직접운송요건을 충족한 물품은 각 협정별 규정된 원산지증명서(C/O) 발급

기준에 따라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되어야 한다.

* 한-아세안(인도네시아) FTA 협정문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는 AK 서식으로 작성됨

2019. 11월 기준

구분	양식
아세안 상품무역협정(ATIGA)	Form D
아세안-중국 자유무역협정(ACFTA)	Form E
아세안-한국 자유무역협정(AKFTA)	Form AK
인도네시아-일본 경제동반자협정(IJEPNA)	Form IJEPNA/JIEPA
아세안-인도 자유무역협정(AIFTA)	Form AI
아세안-호주-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AANZFTA)	Form AANZ
인도네시아-파키스탄 자유무역협정(IPPTA)	Form IP
아세안-일본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AJCEP)	Form AJ

자료 : 주요 교역국의 통관제도-인도네시아편(한국조세재정연구원); Regulation of Minister of Finance 부속서 1을 바탕으로 저자 추가 작성

- 한-아세안(인도네시아) FTA 원산지증명서(C/O) 발급 시 유의사항

- FORM AK C/O가 출항일 이후 3일이 지나서 발급될 경우, 소급적용이 이루어지며 원산지증명서상 소급

적용 문구인 ISSUED RETROACTIVELY가 명기되어야 효력이 있음

- 출력 시 원본(ORIGINAL)의 경우에는 반드시 칼라 출력이 되어야 하며 OVERLEAF 뒷면 출력 시 위아래 확인이 필요(옆으로 넘겼을 경우 바로 나오도록)



【한-아세안 원산지증명서 샘플_FORM AK(앞면)】

자료 : PENASCOP LOGISTIK

【한-아세안 원산지증명서 샘플_FORM AK(뒷면)】

OVERLEAF NOTES

1. Parties which accept this form for the purpose of preferential tariff under the KOREA-ASEAN Free Trade Agreement (KAFTA):

BRUNEI DARUSSALAM	CAMBODIA	INDONESIA
REPUBLIC OF KOREA	LAOS	MALAYSIA
MYANMAR	PHILIPPINES	SINGAPORE
THAILAND	Vietnam	
2. CONDITIONS: To enjoy preferential tariff under the KAFTA, goods sent to any Parties listed above:
 - (i) must fall within a description of goods eligible for concessions in the country of destination;
 - (ii) must comply with the consignment conditions in accordance with Rule 9 of Annex 3 (Rules of Origin) of the KAFTA; and
 - (iii) must comply with the origin criteria in Annex 3 (Rules of Origin) of the KAFTA.
3. ORIGIN CRITERIA: For goods that meet the origin criteria, the exporter and/or producer must indicate in box 8 of this Form, the origin criteria met, in the manner shown in the following ta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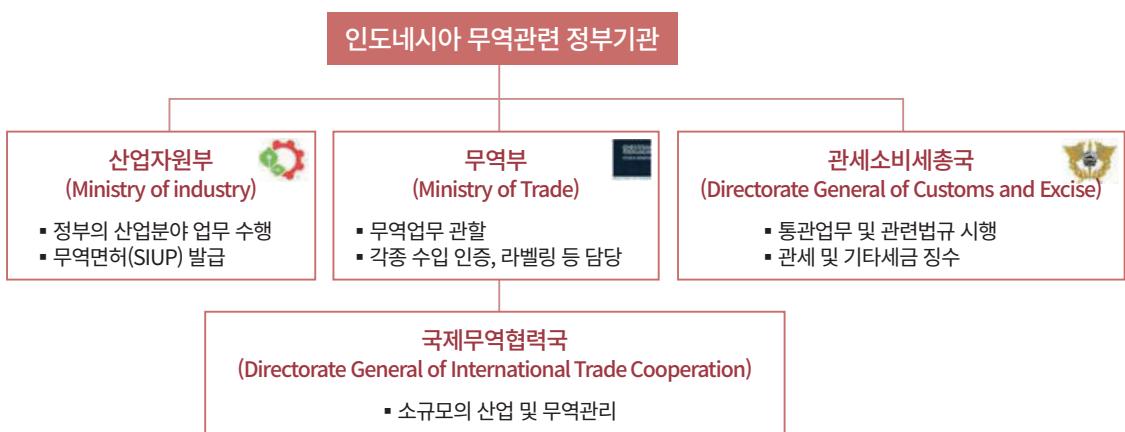
Circumstances of production or manufacture in the first country named in box 11 of this form	Insert in box 8
(a) Goods wholly obtained or produced in the territory of the exporting Party	"WO"
(b) Goods satisfying Rule 4.1 of Annex 3 (Rules of Origin) of the KAFTA	"CTH" or "RVC 40%"
(c) Goods satisfying the Product Specific Rul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hange in Tariff Classification - Wholly Obtained or Produced in the territory of any Party - Regional Value Content - Regional Value Content + Change in Tariff Classification - Specific Processes 	"CTC" "WO-AK" "RVC" that needs to be met for the good to qualify as originating, e.g. "RVC 45%" The combination rule that needs to be met for good to qualify as originating, e.g. "CTH + RVC 40%" "Specific Processes"
(d) Goods satisfying Rule 6	"Rule 6"

4. EACH ARTICLE MUST QUALIFY: It should be noted that all the goods in a consignment must qualify separately in their own right. This is of particular relevance when similar articles of different sizes or spare parts are sent.
5. DESCRIPTION OF GOODS: The description of goods must be sufficiently detailed to enable the goods to be identified by the Customs Officers examining them. Any trade mark shall also be specified.
6. FREE-ON-BOARD (FOB) VALUE: The FOB value in Box 9 shall be reflected only when the Regional Value Content criterion is applied in determining the origin of goods. The CO (Form AK) issued to and from Cambodia and Myanmar shall reflect the FOB value, regardless of the origin criteria used, for the next two (2) years upon the implementation of this new arrangement.
7. HARMONIZED SYSTEM NUMBER: The Harmonized System number shall be that of the importing Party.
8. EXPORTER: The term "Exporter" in box 11 may include the manufacturer or the producer.
9. FOR OFFICIAL USE: The Customs Authority of the importing Party must indicate (✓) in the relevant boxes in column 4 whether or not preferential tariff is accorded.
10. THIRD COUNTRY INVOICING: In cases where invoices are issued by a third country, "the Third Country Invoicing" box should be ticked (✓) and such information as name and country of the company issuing the invoice shall be indicated in box 9.
11. EXHIBITIONS: In cases where goods are sent from the territory of the exporting Party for exhibition in another country and sold during or after the exhibition for importation into the territory of a Party, in accordance with Rule 20 of the Operational Certification Procedures, the "Exhibitions" box should be ticked (✓) and the name and address of the exhibition indicated in box 9.
12. BACK-TO-BACK CERTIFICATE OF ORIGIN: In cases of Back-to-Back CO, in accordance with Rule 7 (2) of the Operational Certification Procedures, the "Back-to-Back CO" box should be ticked (✓).

자료 : PENASCOP LOGISTIK

5. 인도네시아 통상 · 통관 환경

1) 인도네시아 무역관련 정부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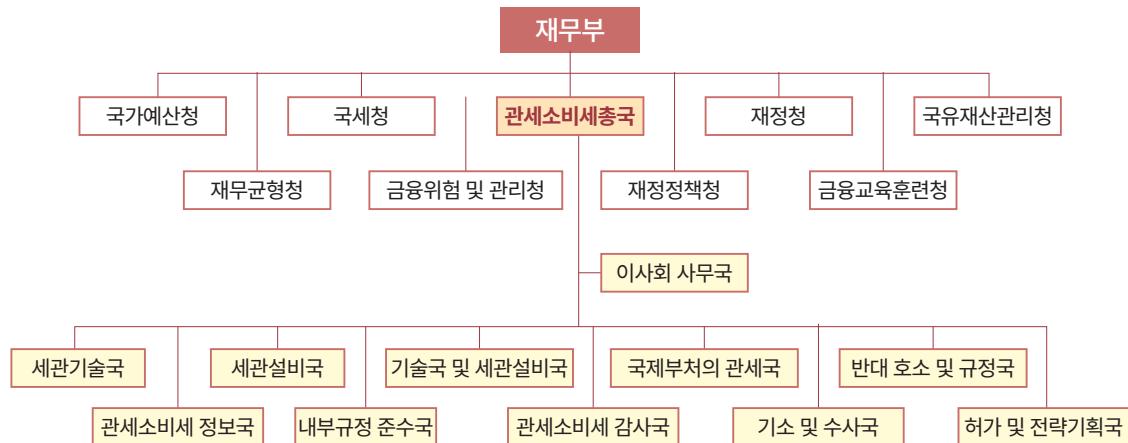


인도네시아의 무역관련 정부기관은 크게 산업자원부, 무역부(국제무역협력국), 재무부(관세소비세총국)로 나뉘어져 있다.

산업자원부는 주로 정부의 산업분야 관련 업무를 수행하며 무역면허(SIUP) 발급을 담당하며, 무역부는 인도네시아 무역 관련 업무를 관할하는 기관으로 각종 수입 인증 및 라벨링과 원산지 관련 규정 등의 발표를 담당한다.

국제무역협력국은 무역부 산하 기관으로 소규모 산업과 무역을 관리하며, 관세소비세총국은 전반적인 통관 업무를 수행하며 이와 관련된 법규의 시행 및 관세 등 수입물품에 대한 기타 세금을 징수한다.





자료 : 인도네시아 재무부 홈페이지 및 관세소비세총국 홈페이지

인도네시아 통관 및 관세행정과 관련한 대부분의 업무는 관세소비세총국에서 담당하며, 인도네시아 관세소비총국은 재무부 산하의 직속기관으로 16개의 본부세관을 비롯하여 총 140여개의 세관을 두고 있다. 주요 기능으로는 통관업무 및 관련 법규의 시행,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및 기타 세금의

징수, 관세청 등록번호를 발급한다. 특히, 인도네시아 내에서 교역활동을 수행하고자 하는 모든 수출입업체는 무역면허 (SIUP), 관세청 등록 번호 (NIK), 수입자 등록 번호 (API), 사업자고유번호 (NIB) 등을 반드시 갖추고 있어야 한다.

(1) 무역면허(SIUP: Surat Iain Usaha Perdagangan)

인도네시아 무역부(Ministry of Trade)에서 발급하는 면허로 회사의 활동범위, 대표자 등이 기재되며, 신청서류로는 기업 Articles

of Association(정관) 사본, 기업 주소 및 위치 확인서, 기업 대표 또는 이사의 신분증 사본, 공증 문서 등이 필요하다.

(2) 관세청등록번호(NIK: Nomor Induk Kepabeanan)

관세청의 정보기술 및 입력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한 개인등록번호로 인도네시아의 모든 수출입업자 및 관세청이용자는 '관세청 등록관련' 규정에 따라 NIK를 필수적으로

취득해야 하며 이는 인도네시아 관세소비세총국(DGCE)에서 발급한다. 신청서류로는 발급 신청서, 서비스 이용자 신분증, 금융 자료 등이 필요하다.

(3) 수입자등록번호(API: Importer Identification Number)

인도네시아 무역부 규정에서 API를 소지한 수입업자만이 수입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인도네시아에서 수입을 하고자 하는 업체는 반드시 API를 취득해야 하며 이는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청(BKPM) 산하 통합서비스국(PTSP)에서 발급한다. 단, 일시적으로 판촉이나 연구개발, 자가이용 등의 목적으로 빈도가 적은 특정제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API 취득 필수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서류는 공증된 기업 Memorandum of Association(설립취지서) 사본, 기업본사

소재지증명서, 투자등록서, 투자 Approval in Principle(기본승인서), BKPM 발급 사업면허, 납세자번호(NPWP)3), 사업자 등록증(TDP), 외국인취업허가증(IMTA), 이사회 전원의 사진(붉은색 배경, 3×4 사이즈) 등이 필요하다.

수입자 등록번호의 유형은 API는 API-U와 API-P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며, 동일한 업체는 두 가지 유형의 API를 중복하여 소지할 수 없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구 분		요 건
API (수입자 등록 번호)	API-U (무역/유통업체용 수입허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무역 또는 제3자에게 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는 수입업자에게 발급되는 수입허가서▪ 주로 무역·유통·건설 업종에 발급▪ 생산설비를 보유하지 않고 있어야 함
	API-P (제조업체용 수입허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재료·부재료 또는 가공공정을 위한 목적으로 원부자재를 수입하는 수입업자에게 발급되는 수입허가서▪ 생산설비를 반드시 보유하고 있어야 함

(4) 사업자고유번호(NIB : Nomor Induk Berusaha)

인도네시아 온라인 통합 인허가(OSS: Online Single Submission) 시스템의 시작(2018. 7. 9) 및 노동부 장관 규정의 발효(2018. 7. 11)에

따라 법인 인허가 및 외국인 근로자에 관한 허가제도가 일부 변경되었다.⁴⁾ 사업자고유번호는 기존사업자등록증(TDP), 수입자등록

3) NPWP(Nomor Pokok Wajib Pajak)는 납세자번호 또는 세무등록번호로 법인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할 수 있음

4) <https://oram.co.id/>

번호(API), 관세청등록번호(NIK) 등 각 부처와 기관에서 발급받던 인허가들을 OSS(온라인 통합 인허가) 시스템으로 통합·

간소화한 인허가 제도이다. 신규 및 기존 법인은 모두 사업자고유번호(NIB)를 보유하여야 한다.

【사업자고유번호(NIB) 취득 절차】



자료 : 오롬컨설팅(<https://orom.co.id/>)

OSS 시행에 따른 인허가 취득절차 개정 전·후를 비교하자면, 업종에 따른 필수 인허가 종류와 절차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외자법인(PMA) 무역업을 기준으로 인허가 취득절차의 개정 전후를 다음과 같이 비교하여 살펴볼 수 있다.

【OSS 시행에 따른 인허가 취득절차 개정 전·후를 비교】

개정 전		개정 후		
1	정관(Akte pendirian)	OSS시스템을 통한 인허가 제도 일부 통합	1	정관(Akte pendirian)
2	사업장소재지 허가서(Domisili)		2	사업장소재지 허가서(Domisili)
3	법무성 등기(SK Pengesahan)		3	법무성 등기(SK Pengesahan)
4	법인납세자등록증(NPWP)		4	법인납세자등록증(NPWP)
5	무역면허(SIUP)		5	사업자고유번호(NIB)
6	사업자등록증(TDP)		6	부과세신고번호(PKP)
7	부과세신고번호(PKP)		7	사업허가서(Izin Usaha)
8	수입자등록번호(APIU)		8	사업운영허가서(Iain Komersial/ Operation)
9	관세청등록번호(NIK)			

자료 : 오롬컨설팅(<https://orom.co.id/>)

2) 신규 통관제도 개정사항 1 : HS코드 개정(10자리 → 8자리)

기존 인도네시아는 아세안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아세안 공용 8자리 품목분류체계인 AHTN(ASEAN Harmonized Tariff Nomenclature) 코드가 아닌, 별도의 인도네시아 10자리 HS코드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최근 인도네시아 정부는 아세안 통합 표준에 맞추기 위해 세법분류체계를 변경하고 2017년 3월 1일부로 HS코드 8자리 기준으로 품목을 분류하고 있으며, 이로 현재(2019년

기준) 인도네시아 관세율표상 HS코드(8단위)로 조회되는 품목 수는 총 10,826개(2단위 98개, 4단위 1,222개)에 달한다.

<참고사항>

- 인도네시아 HS 분류기준은 인도네시아 국가 싱글 윈도우(INSW, Indonesia National Single Window) 사이트나 우리나라 관세청 관세법령정보포털의 세계 HS에서 확인 가능함
 - INSW 사이트 주소 : <http://eservice.insw.go.id/>
 - 관세법령정보포털 사이트 주소 : <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

3) 신규 통관제도 개정사항 2 : 관세 미납에 따른 벌금 규정 개정

최근 인도네시아의 통관관련 개정사항을 살펴보면, 인도네시아 수출입 관세 부족액에 따른 벌금 규정이 2019년 5월 변경되었다.⁵⁾

인도네시아에서는 수출입 통관이 완료된 이후 통관이 완료된 신고서는 지역세관에서 본부세관으로 이관되어 신고가격 및 품목 분류 적정여부에 대한 검토절차가 이루어 진다. 여기서 수입관세나 수출관세 부족 등

오류가 발견될 경우 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부족한 세액에 따라 수입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추징이 이루어질 수 있다. 다만, 추징 과정에 있어 규정이 불분명하고 수출입 업자에게 손해가 크다는 불만이 많아 미납 비율의 산출 방법과 미납률에 따른 벌금액의 계산 방법을 보다 효율적으로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다.

5) 통관 분야의 벌금 적용에 관한 법령 '2008년 28호'→개정령 '2019년 39호'(2019. 5. 15 공포, 2019. 7. 15 시행)이 시행

GR-28 (개정 전)		GR-39 (개정 후)	
미납률	벌금	미납률	벌금
25% 이하	100%	50% 이하	100%
> 25% ~ 50%	200%		
> 50% ~ 75%	400%	> 50% ~ 100%	125%
> 75% ~ 100%	700%		
> 100%	1,000%	> 100% ~ 150%	150%
		> 150% ~ 200%	175%
		> 200% ~ 250%	200%
		> 250% ~ 300%	225%
		> 300% ~ 350%	250%
		> 350% ~ 400%	300%
		> 400% ~ 450%	600%
		> 450% ~ 500%	1,000%

주: 만약 관세율이 0%인 경우에는 신고건당 5백만 루피아의 벌금이 부과

- (개정전) 지불 관세액의 부족 비율에 따라 100~1,000%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
- (개정후) 산출 기준이 되는 미납율을 가산된 벌금을 포함 하는 것으로 변경

4) 수입 금지 및 제한 품목(LARTAS)

인도네시아는 국내기업과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특정 화물에 대한 수출입을 금지 및 제한하고 있으며, 이러한 인도네시아의 수출입 금지 · 제한 규정을 LARTAS(Larangan dan Pembatasan) 규정이라 한다. 수입 금지 및 제한물품은 식품의약품감독청 (BPOM), 보건부, 상업부 등 해당정부기관으로부터 특별허가를 받아야 수입이 가능한 경우도 있다.

2019년 현재 LARTAS에 규정되어 있는 수출입 관련 금지 또는 제한 품목은 총 5,229개 품목이며, 이와 관련한 자세한 리스트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사이트를 참고하면 된다.

- 인도네시아 무역관련 규정 및 LARTAS(수출입 금지 및 규제) 규정 관련 정보>
- 인도네시아 무역관련 국가 싱글윈도우 : <http://eservice.insw.go.id>

특히, 다음과 같은 수입화물의 경우에는 특별허가가 필요하다.

담당정부기관	수입화물의 종류	필요서류				
국가식품의약품감독청 (BPO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약품 및 원재료 ▫ 식품 및 보조식품 ▫ 화장품 및 원재료 ▫ 전통의약품 및 원재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증명서 ▫ 비식품의약품증명서 				
보건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기기 ▫ 마약 ▫ 항정신성물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기기의 등록수 ▫ 검사관의 보고서 ▫ 마약수입승인증서 ▫ 항정신성물질수입인증서 ▫ 의약기구 및 가정용건강용품의 등록수 				
상업부	구분	SNI	LS	IP	IT	SPI
	타이어	O				
	철강			O	O	
	강판 및 합금 롤	O				
	식품 및 음료제품		O			
	직물 및 직물제품		O	O	O	O
	의류		O			
	전자기기	O				

<용어 설명>

SNI : 인도네시아 국가 표준인증

LS : 조사보고서로서 산업과 무역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화물을 비롯한 수입화물의 통관 보완 서류임.
조사보고는 화물을 하역하는 국가에서 수행할 필요가 있음

IP : 제조수입업자를 지칭하는 것으로 제조수입신청은 상업부에 신청(제조수입업자는 LARTAS 품목 수입허가권을 가짐)

IT : 등록수입업자를 지칭하는 것으로 무역부문에 종사하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등록수입업자 신청은 상업부에 함(등록 수입업자는 LARTAS 품목 수입허가권을 가짐)

SPI : 수입승인서

5) 내수산업 보호를 위한 수입 규제 정책 심화

조코위 정부는 2018년 루피아 가치 하락과 무역수지 및 경상수지 적자 등 지속적인 내수 경제의 불안정세가 이어지자 내수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수입 규제 정책을 심화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사례가 있다.⁶⁾

- 수입산 품목에 대한 선납법인세(PPh 22) 상향 조정 발표(2018. 9. 6)

- 자국산 콘텐츠 비중(TKDN) 적용 강화 규정 발표(2018. 7. 13)
- 전자상거래 제품의 소량수입액(De minimus) 기준 하향 조정(2018. 9. 10)
- 수입대체재로서의 바이오디젤(B20) 사용 독려(2018. 9. 1)
- 철강 및 타이어 관련 법률 개정(2019. 1. 20 / 2019. 2. 1)

6) 비관세장벽 1 : 한국과 관련된 수입규제 현황

【인도네시아의 對한국 수입규제 현황】

규제국	HS	품명	규제 내용	조사개시일
인도네시아	8415.90	증발기	세이프가드(조사중)	2019-06-12
	7607.11 / 7607.19	알류미늄 호일	세이프가드(조사중)	2018-10-09
	6907.21 / 6907.22 / 6907.23	도자제의 판석과 포장용 · 노용 · 벽용 타일	세이프가드(규제중)	2018-03-29
	3907.60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반덤핑(규제중)	2016-08-22
	3102.30	질산암모늄	반덤핑(규제중)	2015-06-01
	7228.70	IH형 합금강	세이프가드(규제중)	2014-02-12
	7210.61	비합금 평판 강판	세이프가드(규제중)	2012-12-19
	7210.12	석도강판	반덤핑(규제중)	2012-06-25
	7209.16 / 7209.17 / 7209.18 / 7209.19 / 7209.26 / 7209.27 / 7209.28 / 7209.90 / 7211.23 / 7211.29	냉연코일	반덤핑(규제중)	2011-06-24

자료 : 무역협회, 수입규제통합지원센터

6)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7) 비관세장벽 2 : 수입허가 및 인증 (SNI, BPOM, 할랄인증)

인도네시아 국가표준	식약청 인증(BPOM)	할랄(HALAL)인증
<p>SNI</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도네시아 국가규격으로, 제품 규격뿐 아니라 서비스와 시스템 · 기술 · 디자인 그리고 시험 방법 등의 표준화 등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표준임 ▪ 기술위원회인 BSN(Badan Standardisasi Nacional)에 의해 발행 ▪ 인도네시아 국가표준은 원칙상으로는 임의 규정이지만 국민의 안전성과 위생, 그리고 환경보호 등을 이유로 일부 품목에 대하여 강제인증을 적용하고 있음 (확대경향) ▪ 취득에 약 6개월 소요(2년 주기 갱신) ▪ <강제인증 품목 검색 사이트> http://pustan.kemenperin.go.id/List_SNI_Wajib<SNI 정보 확인 사이트> http://sisni.bsn.go.id/ 	<p>BADAN POM Badan Pengawas Obat dan Makanan</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도네시아로 수입되는 식품, 화장품, 의약품에 대하여 적용되는 인도네시아의 특수한 인증에 해당함 ▪ 인니 식약청 담당 ▪ 가공식품에 대한 인증으로, 수입자는 BPOM에 등록하고자 하는 가공식품을 등록하여 BPOM 장관의 「가공식품유통허가증」을 취득할 필요가 있음 신청이 받아 들여지면 가공식품 유통허가증과 함께 유통번호가 주어지는데, 이를 가공식품유통허가번호(ML번호)라고 함. 이는 상품라벨에 반드시 기재되어야 함 ▪ 화장품에 대한 인증으로, 인도네시아는 ASEAN 화장품 지침서 (ASEAN Cosmetic Directive: ACD)를 국내법화하여 시행하고 있음 ▪ 취득에 약 4개월 소요(3년 주기 갱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 화장품, 의약품(원료) 및 해당 제품의 제조설비에 적용 ▪ 종교부 산하 인니 할랄청(BPJPH) 담당 ▪ 할랄인증에서 요구되는 주요한 요건은 제품의 원료 및 제조 과정에서 할랄 방식으로 처리하지 않은 것이 훈입되지 않았다는 증명임 ▪ 2019년 10월 17일부터 신할랄 인증제도가 의무화 되었지만 세부 시행 내용은 부재한 상태로 인니 정부는 제품별로 계도기간을 설정함 ▪ 취득에 약 6개월 소요(2년 주기 갱신)





김수정

국제원산지정보원 연구기획실 선임연구원

우리나라 FTA 체결현황 및 용어정리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FTA 체결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고
현재는 16개국 과의 FTA가 발효된 상태이다.

FTA를 통한 혜택은 무엇보다도 관세절감에 주요한 요인이 있다.
관세가 낮아져서 타국과 거래하던 상대국이 FTA를 체결한 국가로
수입거래선이 바뀔 수 있는 것이다.

그동안 미·중 무역분쟁과 자유무역협정 체결이 부진하여 무역이 침체되었으나
우리나라는 앞으로 체결되는 FTA를 통해 새로운 시장을 선점하고
대·중소기업에 새로운 기회를 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1. 들어가며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신남방국가와의 FTA 체결 등 연일 FTA 체결이라는 내용이 뉴스에서 심상치 않게 보도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FTA 체결은 언제부터 시작되어 지속된 것일까? 본고에서는 우리나라가 최초로 맺은 FTA부터 현재까지 FTA에 대한 시초부터 지금까지의 현황과 FTA 체결과정 및 빈번하게 나오는 용어들을 정리하고자 한다.

2. FTA의 체결과정 정리

FTA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진행된다. 첫단계인 준비 및 여건조성→협상개시 선언→협상 진행→협상 타결 및 가서명→협상 정식서명→협상 국회 비준→협상 정식 발효를 통해 협상이 시작되어 마무리되는 과정을 거친다.

FTA의 시작부터 발효까지 기간은 협정마다 각기 다르게 진행된다. 예를 들어, 한-중 FTA의 경우는 2014년 11월 베이징에서 FTA 협상이 타결된 이후 2015년 12월 FTA가 공식 발효되었다. 이에 반해 얼마전 FTA 재개정이 발생한 한-미 FTA의 경우 2007년 4월 공식 협상 발효 후 2012년 3월 FTA가 시행되었다. 한편, 한-콜롬비아 FTA는 2009년 한-콜롬비아 FTA 민간공동 연구가 개시되어 2014년 우리나라와 콜롬비아측 국회 비준이 승인되고, 2016년 7월 발효되었다.

참고로 FTA와 관련된 뉴스나 기사에서 등장하는 용어는 체결, 타결, 비준, 발효인데 체결이란 자유무역협정을 서로 맺자고 서명한 것이며, 타결이란 협정에 대한 내용을 전부 인정하여 시행을 준비하자는 것이다.

국회 비준이란 조약의 내용에 합의했음을 증명하기 위해 서명한 조약을 국회원수나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행위이며, 발효란 조약이 본격 시행하는 일자, 즉, 시작하는 날을 말한다.

[표 1] FTA 체결과정 정리

구분	내용
준비 및 여건 조성	외교통상부 내 자유무역협정추진위원회 설치
협상개시 선언	통상장관회담이나 정상회담을 계기로 하여 FTA 협상개시 정식선언
협상 진행	협상은 국가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체적으로 1~2년 내외
협상 타결 및 가서명	협정문을 만들고 나면 양측 수석대표(보통 국장급)이 협정문 최종문 하단 왼쪽과 오른쪽에 가서명, 실질적인 협상 타결
협상 정식서명	협상 타결 후 내부보고절차를 진행하여 대통령 재가 후 정식서명
협상 국회 비준	국회 비준 요청 후, 국회 동의 얻으면 국내 절차 완료, 상대국 통보
협상 정식 발효	협정에서 정한 기간(통상 1~2개월)이 지나면 정식 발효

자료 : FTA 포털



3. FTA의 체결 의의 및 현황

우리나라의 FTA 체결역사를 거슬러 보면 2004년 한-칠레 FTA부터 시작되어 최근 발효된 한-중미 FTA까지 FTA에 관한 협상과 체결은 지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최초의 FTA 중남미 시장 교두보로 여겨진 한-칠레 FTA발효 후 우리나라의 동시다발적

FTA 체결 전략으로 인해 2006년에는 싱가포르와 EFTA가 이후 2007년에는 거대 경제권과 협정을 맺은 최초의 FTA인 아세안과도 협정이 발효되었다. 이후 거대경제권인 EU와 연이어 뉴스에 보도되었던 미국과의 FTA역시 2012년 시작되었다.

[표 2] 우리나라 FTA 체결 현황 및 의의

2019년 11월 기준

구분	상대국	추진현황			의의
		개시	서명	발효	
발효 (16건)	칠레	1999.12	2003.02	2004.04	최초의 FTA, 중남미 시장 교두보
	싱가포르	2004.01	2005.08	2006.03	ASEAN 시장 교두보
	EFTA ¹⁾	2005.01	2005.12	2006.09	유럽시장 교두보
	ASEAN ²⁾	2005.02	2006.08 (상품무역협정)	2007.06 (상품무역협정)	거대경제권과 체결한 최초의 FTA
			2007.11 (서비스협정)	2009.05 (서비스협정)	
			2009.06 (투자협정)	2009.09 (투자협정)	
	인도	2006.03	2009.08	2010.01	BRICs 국가, 거대시장
	EU ³⁾	2007.05	2010.10.06	2011.07.01. (잠정) 2015.12.13. (전체)	거대 선진경제권
	페루	2009.03	2011.03.21	2011.08.01	자원부국 중남미 진출 교두보
	미국	2006.06	2007.06	2012.03.15	세계 최대경제권 (GDP 기준)
		2018.01 (개정협상)	2018.09.24. (개정협상)	2019.01.01. (개정의정서)	

구분	상대국	추진현황			의의
		개시	서명	발효	
	터키	2010.04	2012.08.01. *기본협정 및 상품무역협정	2013.05.01	유럽·중앙아시아 진출 교두보
	호주	2009.05	2014.04.08	2014.12.12	자원부국, 오세아니아 주요시장
	캐나다	2005.07	2014.9.23	2015.1.1	북미 선진시장
	중국	2012.5	2015.06.01	2015.12.20	우리나라 제1위 교역대상국(2019년 기준)
	뉴질랜드	2009.06	2015.03.23	2015.12.20	오세아니아 주요시장
	베트남	2012.08	2015.05.05	2015.12.20	우리나라 제5위 투자대상국
	콜롬비아	2009.12	2013.02.21	2016.07.15	자원부국, 중남미 신흥시장
	중미 5개국 ⁴⁾	2015.06	2018.02.21	2019.10.01. 부분발효 *(10.1) 니카라과, 온두拉斯 (11.1) 코스타리카 발효	중미 신시장 창출

1) EFTA(유럽자유무역연합)(4개국) :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2) ASEAN(10개국) :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베트남, 태국

3) EU(28개국) : 오스트리아, 벨기에, 영국, 체코, 키프로스,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불가리아, 루마니아, 크로아티아

4) 중미(5개국) : 파나마, 코스타리카, 온두拉斯,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자료 : FTA korea

특히, 한-미 FTA는 개정되어 2019년 1월 개정의정서가 공포 되었다. 개정협상의 주요 내용은 투자자국가 분쟁해결, 무역구제, 섬유, 화물자동차, 자동차 등 부분에서 변경사항이 있었다.

발효된 16개 협정외에 우리나라는 한-영 FTA, 한-이스라엘 FTA, 한-인도네시아 CEPA 역시 타결된 상태이다.

4. 마치며

FTA를 통한 혜택은 무엇보다도 관세절감에 주요한 요인이 있다. 예를 들어 FTA를 통해 관세가 이전에 10%이었던 제품이 0%로 낮아지면 무역거래가 활발해지며, 동일한 이유로 관세가 낮아져서 타국가와 거래하던 국가가 FTA를 체결한 국가로 수입거래선이 바뀔 수 있는 것이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FTA 체결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고 현재는 16개국과의 FTA가 발효된 상태이다. 최근 세계최대

메가 FTA인 RCEP 협정문이 타결된 상태이고 전세계 인구의 절반, 세계 총생산 GDP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RCEP 타결로 안정적인 교역 및 수출시장 다변화를 통한 새로운 시장이 열릴 예정이다. 그동안 미·중 무역 갈등 및 자유무역이 한동안 침체되었던 시기에 이러한 기회를 잘 살려 우리나라를 앞으로 체결되는 FTA를 통해 새로운 시장을 선점하고 대·중소 기업에 새로운 기회를 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FTA TRADE REPORT



FTA 품목분류

FTA 시대의 유탄(流彈) –
부분품 품목분류와 갑을(甲乙)의 문제

김성채 | 기획재정부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 사무관



김성채

기획재정부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 사무관

FTA 시대의 유탄(流彈) - 부분품 품목분류와 갑을(甲乙)의 문제

FTA 환경이 우리 수출기업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그러나 그런 기회의 그늘이 영세업체에만 드리워진다면 정책결정자는

그러한 문제점을 해결 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FTA 환경에서 무역동향 변화가 국내 영세 업체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추가적인 업무부담이 발생하지는 않는지 분석과 연구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러한 연구결과를 관련 제도의 정비에 활용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행정서비스의 제공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1. 무엇에 쓰는 물건인고?

아래 그림들은 최근 몇 년 사이에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관세법 제86조에 의한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이 된 물품들이다. 이들 물품에

대하여 관세평가분류원은 모두 공식적으로 유권해석(회신)을 제공하였다.



위 사진만으로 이들 물품이 어떤 물품인지, 그리고 HS 품목분류표상 어느 호에 분류되는 물품인지 알 수 있을까? 당연한 말이지만 품목분류를 20년 이상 한 사람에게도 그건 불가능하다. 이러한 물품들(한두 가지 재료로 만들어진 간단한 형상의 부품)에 대한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은 2016년을 기점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별다른 사전 정보가 없이 이들 물품에 대하여 알 수 있는

유일한 사실은 이들은 독립적으로 사용되는 완성품은 아니고 어느 기계 또는 기기의 어느 특정한 부분에 조립되어 정해진 역할을 수행하는 물품일 거라는 점이다. 그 역할은 해당 기계가 수행하는 기능의 일부일 수도 있고, 해당 기계 내에서 부품과 부품을 체결하거나 고정하는 것일 수도 있다. 그리고 매우 드물게는 기능과 관계없는 단순 부착물일 수도 있다.

2. HS 제84류, 제85류, 제87류, 제90류의 공통점은?

아래 표는 HS 2단위 류(Chapter) 기준으로 작년도 우리나라 수출입 상위 10개 그룹이다.

HS 2단위	수출액	HS 2단위	수입액
제85류	184,588	제27류	146,954
제84류	77,651	제85류	84,776
제87류	61,171	제84류	60,192
제27류	47,989	제90류	22,421
제39류	34,915	제87류	16,829
제90류	27,846	제72류	16,455
제29류	25,339	제26류	14,955
제72류	24,746	제29류	14,214
제89류	20,334	제39류	11,813
제73류	10,448	제28류	9,259

제26류의 물품(광, 슬래그, 회(灰))을 제외하면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목과 수입품목은 대체로 유사하다. 원유의 수입 비중으로 인하여 제27류의 수입액이 가장 높지만 원유를 가공하여 생산한 제27류의 석유제품 수출의 비중 또한 작지 않다.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품목인 제84류(기계류), 제85류

(전기기기류), 제87류(자동차), 제90류(정밀기기)의 물품들은 모두 수입에서도 10위권 이내에 포함되는 물품들이다.

HS 품목분류표에서 앞서 언급한 제84류, 제85류, 제87류, 제90류의 공통점은 이들 류에는 가공단계가 높은 복잡한 설비나 장치 등이 포함되면서 동시에 이들 물품에 전용되는 부분품도 함께 분류된다는 점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이들 류의 수출과 수입이 모두 높다는 것은 대부분의 기기들이 최종 완성단계에서만 거래되는 것이 아니라 기초 재료, 중간 가공품, 핵심 부분품, 완성품 등 다양한 단계에서 수출입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뜻한다.

그리고 그런 거래 및 제조공정에서 가장 낮은 단계의 공정과 관계되는 물품들이 이 글 첫머리에 예시한 그림들이다. 결국 우리나라 품목분류 행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부분품의 품목분류 문제라는 의미이다.

3. 부분품 품목분류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부분품의 품목분류에 대한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본 지면에서 이미 한 번 소개된 바 있으므로(2016년 3월호, 「부분품 품목분류 어떻게 하는가?」, 오수교) 그 내용을 다시 언급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다만 이 글에서는 부분품의 개념과 기본적인 분류원칙만을 간단하게 짚어보고자 한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듯이 HS 품목분류 표에서 부분품의 품목분류는 매우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제이고 중요한 주제이나 HS의 Legal Text 수준에서 부분품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지는 않다. 그로 인하여 우리나라를 포함한 몇몇 HS 회원국들은 부분품 분류를 위한 국내 규정을 마련하여 부분품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기도 하다.

HS 품목분류표에서 부분품 정의에 관하여 명확하게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HS 제8479호 해설서에서 그 단서를 찾을 수 있다.

관세율표 제8479호 해설서

이 호의 기계류는 해당 기계류가 고유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의하여 **부분품에 관한 일반적 규정에 따라 분류되는 기계 등의 부분품과는 구별** 된다.

(중략)

(B) 다른 기계 혹은 기기에 부착하거나 또는 복합 기계 중에 결합된 경우에 한하여 그 기능이 수행 될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의 기능을 갖은 기계

- (i) 그것이 부착될 기계 또는 기기나, 그것이 결합될 복합기계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기능과는 **별개의 기능**이고
- (ii) 이와 같은 기능은 이러한 기계 · 기기 또는 복합 기계의 조작상 **필수불가결의 부분으로 작용하지 아니하는 것**

HS 제8479호에는 기타 고유한 기능을 가진 기계류가 분류되며, 제8479호의 해설서는 고유한 기능을 가진 기계류가 다음의 사실에 의하여 부분품과 구별된다고 해설하면서, (i) 그것이 부착될 기계 또는 기기나, 그것이 결합될 복합기계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기능과는 별개의 기능이고, (ii) 이와 같은 기능은 이러한 기계 · 기기 또는 복합기계의 조작상 필수불가결의 부분으로 작용하지 아니하는 것을 고유한 기능의 요건으로 해설하고 있다.

바꿔 말하면 고유한 기능과 반대되는 요건을 가진 것이 부분품으로 인정된다는 의미이다. 즉, 다른 기계 혹은 기기에 부착하거나 또는 복합기계 중에 결합된 경우에 한하여 그 기능이 수행될 수 있는 것으로서 (i) 그것이 부착될 기계 또는 기기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기능과 연관된 기능 혹은 그 기능의 일부를 수행하며, (ii) 이와 같은 기능은 이러한

기계 또는 기기의 조작상 필수불가결의 부분으로 작용하는 것을 부분품의 요건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뜻이다.

부분품에 대해서는 명확한 정의나 해설이 없는 반면, HS 해설서에서 부속품에 대하여는 비교적 구체적인 설명을 제공하고 있다.

제8448호 해설서

(III) (중략) 일반적으로 “부속품”이라 함은 장치를 형성하는 물품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나 기계의 필수 불가결한 부분을 구성하지 않고 호환성이 있으며 때로는 대체성을 갖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뜻한다(예를 들면, 급속히 소모되어 버리거나 혹은 상이한 작업을 위하여 상이한 종류의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제8466호 해설서

(A) 제8456호부터 제8465호까지의 기계의 부분품
(B) 이들 기계의 부속품. 즉, 기계와 관련하여 사용 되는

보조장치(예 : 보다 광범위한 작업을 수행 할 수 있도록 기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호환성의 장치, 정밀도를 높이는 장치**, 기계의 주된 기능에 관련하여 **특수한 작용을 행하는 장치**)

제8473호 해설서

이 호에 포함되는 부속품은 기계를 특정의 조작에 적합시키기 위하여, 기계의 주된 기능에 관련되는 특정의 작업을 수행시키기 위하여 또는 기계의 작동범위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설계된 **호환성의 부분 또는 장치**이다.

이러한 설명에 따르면 부분품과 부속품 모두 통상적으로 단독으로 사용하기는 어렵고 다른 기계 또는 기기에 부착되거나 결합되어 사용되는 장치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부분품은 그러한 기기의 기능의 일부를 수행하거나 그러한 기기의 조작과 기능 수행상 필수 불가결한 구성요소를 말하는 반면 부속품은 필수불가결한 구성요소로 볼 수는 없지만 갖추어졌을 경우 그러한 기기의 기능과 작동

범위를 확장시켜 주는 호환성의 구성부분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렇다면 부분품의 품목분류는 어떤 기준으로 이뤄지는가? HS 품목분류표에서 부분품의 분류에 대한 규정을 언급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지만 제16부와 제90류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이 부분품 분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제16부 주 제2호	제90류 주 제2호
<p>2. 기계의 부분품은 다음의 원칙에 따라 분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그 자체로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해당 호에 분류 나. 그 외에 특정한 기계에 전용되는 부분품은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 다. 나머지는 부분품 잔여 호에 분류 	<p>2. 기기의 부분품과 부속품은 다음의 원칙에 따라 분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그 자체로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과 부속품은 해당 호에 분류 나. 그 외에 특정한 기기에 전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 기기가 속하는 호에 분류 다. 나머지는 부분품 및 부속품 잔여 호에 분류

그 밖에도 제15부나 제17부 등에서 부분품의 분류에 대한 주 규정을 두고 있지만 해당

주에서 언급한 특수한 일부 사항을 제외하고는 위의 원칙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4. 부분품 품목분류의 어려움

부분품의 품목분류기준이나 그 절차는 크게 복잡할 것이 없다. 먼저 당해 물품이 어떤 기계 또는 기기의 부분품이나 부속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한 후, 해당한다면 위의 기준 또는 제17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분류하면 된다. 부분품으로도 부속품으로도 볼 수 없다면 그 자체로 HS 품목분류표에서 특정 호의 물품을 구성하지 않는 한 재질에 따라 분류된다. 이글의 첫머리에 예시한 물품의 경우 HS의 어느 특정 호에 분류될만한 완성품으로서의 형상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부분품으로 인정될 수 없다면 대체로 재질에 따라 분류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제시된 물품이 어떤 기계 또는 기기의 부분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일단 그 기계나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물품이고 그 기계나 기기의 조작상 필요한 물품이라면 아무리 단순한 형태의 물품이라도 부분품으로 분류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판단해야 한다. 또한 필수불가결한 부분품이 아니라 하더라도 최소한 그 기계 또는 기기의 작동 범위를 확대하거나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는 정도의 구성요소라면 부속품으로 볼 수 있다. 부속품의 경우 어떤 경우(예를 들면,

제90류의 모든 기기의 부속품)에는 해당 기기와 함께 분류할 수 있지만 다른 경우(예를 들어 제16부 대부분 기계의 부속품)에는 그 기계와 함께 사용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라 하더라도 재질에 따라 분류하여야 한다.

원리는 간단해 보이지만 여기에는 매우 중요한 전제가 따른다. 제시된 물품이 정확하게 어떤 기기나 기계에 결합되는지, 구체적으로는 그 기계의 어느 부위에 결합돼서 어떠한 기능을 수행하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품목분류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여러 가지 기계요소의 결합체로서 의도된 기계적 원리에 의하여 작동하는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는 구성요소라면 부분품이나 부속품으로 보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매우 사소하고 간단해 보이는 구성요소라 해도 의외로 그러한 구성요소가 결여됐을 때 해당 기기의 조작에 치명적인 영향을 준다면 이러한 물품은 그 크기나 비중에 관계없이 기기 조작상 필수불가결한 구성요소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제시된 구성요소가 작고 단순한 형태라 해도 그 기능수행이나 조작에 필수적인 경우는 의외로 많다.

부분품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또 다른 문제는 완성된 기계의 기능과는 크게 관계가 없고 또한 반드시 필요한 구성요소가 아니라고도 볼 수 있는 경우(예를 들면, 기기의

하우징, 케이스 등)에도 HS 품목분류표나 해설서에서 부분품으로 폭넓게 인정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5. FTA 시대의 유탄 - HS 코드에 대한 하청업체의 과도한 부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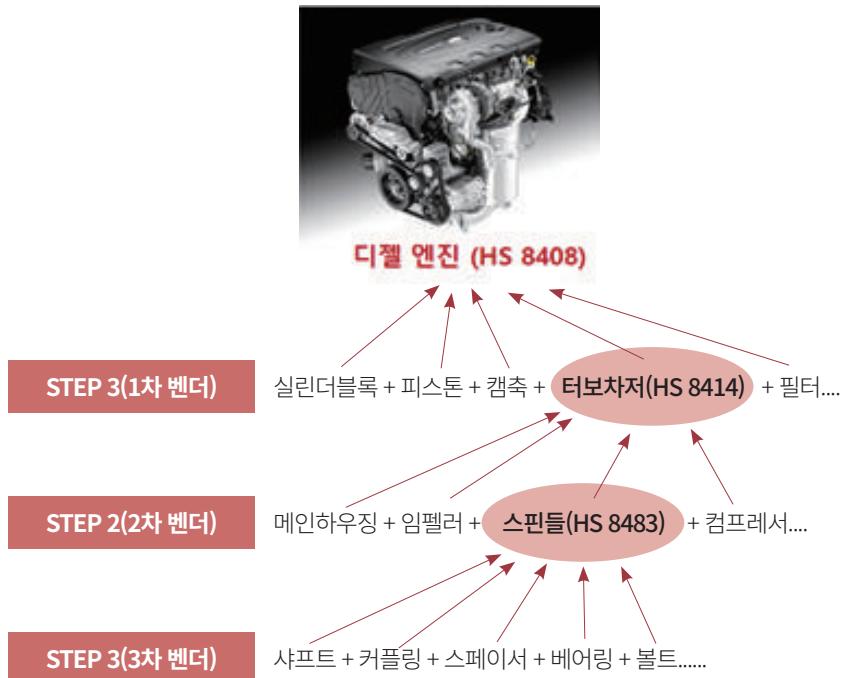
앞서 소개한 사진들은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품목분류사전심사 신청이 있었던 물품들이고 이 사례들의 대부분은 소위 하청업체라 불리는 업체들로부터 신청된 것들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전심사 신청 건수는 2016년을 전후하여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이는 한-중 FTA의 발효에 따른 사전심사 수요 증가가 가장 큰 원인이다. 수출업체들이 당해 업체에서 제조한 제품(완성품)이 FTA에 의한 역내산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자신들에게 부분품을 납품하는 하청업체들에게 원산지(포괄) 확인서 등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수요가 발생한 것이다.

우리나라 제조업의 특성상 최종 완제품이 생산되기까지 기초 단계부터 최종 완성 단계까지 여러 형태의 중간단계 부품 거래가 이루어지고 그러한 거래가 발생할 때마다

원청업체는 하청업체에게 FTA 원산지 판정에 필요한 정보(원산지 확인서나 거래 물품의 HS 코드)를 요구하게 되며 그러한 요구의 증가는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의 증가로 이어지게 된다. 거듭 말하지만 이러한 미세 구성요소에 대한 품목분류의 요체는 그러한 구성요소가 정확하게 어떤 기계의 어느 부문에 결합되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사전심사 신청을 하는 업체(신청인)들이 자신들이 생산한 물품이 정확하게 어떤 기계의 어떤 모델의 어느 부위에 결합되어 어떤 기능을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앞서 말한 것처럼 수출제품이 최종 완성되기까지 여러 단계의 중간 부품 거래가 이루어지게 되고 전체 공정에서 낮은 단계에 있는 하청업체일수록 완제품에 대한 정보와 멀어지게 되기 때문이다.

【디젤엔진의 단계별 부분품 예시】



일례로 자동차용 디젤엔진의 경우를 살펴보자. 피스톤식 디젤엔진은 HS 8408호에 분류되는데, 엔진 제조업체는 하청업체(1차 벤더)들로부터 실린더 블록, 피스톤, 캠축, 필터, 터보차저 등의 부분품을 납품받아 엔진을 생산한다고 가정해 보자. 이 최종 부분품 중 하나인 터보차저(HS 8414호)는 임펠러, 스피드, 컴프레서 등으로 불리는 중단단계의 부품들로 이루어지고 1차 벤더 중 터보차저를 생산하는 업체는 역시 그 하청업체(2차 벤더)들로부터 이들 중간 부분품을 공급받아 터보차저를 생산하게 된다. 스피드의 경우 동력 전달축으로서 HS

제8483호에 분류된다. 2차 벤더 중 스피드를 생산하는 업체 또한 그 하청업체(3차 벤더)들로부터 샤프트, 커플링, 스페이서, 베어링, 볼트 등 기초 부품을 공급받아 자신들이 납품할 제품을 생산할 것이다.

이 거래단계에서 샤프트나 스페이서를 제조하는 하청업체(3차 벤더)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제조하는 기초 부품이 어느 위치에 장착되어 어떤 기능을 하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청업체에서 원산지(포괄)확인서를 요청하거나 해당 제품의 HS 코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사전심사 신청 등의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수밖에 없다.

이는 품목분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의 입장에서나 요청하는 업체의 입장에서나 모두 어려움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제시되는 정보가 정확하지 않은 경우 잘못된 품목분류 결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지나치게 상세하거나 정확한 정보가 필요 없는 경우에조차 그러한 정보가 요구되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한-미 FTA에 의한 디젤엔진의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이 CTH (HS 4단위 변경기준) 또는 RVC 35%라고 할 때, 최종 제조사에서 CTH 기준을 적용하여 원산지를 판정하는 경우 중간단계의 터보차저가 역외산이라 하더라도 최종 제품인 엔진이 역내산으로 인정받는 데는 문제가 없다. 이론적으로는 터보차저에 특입되는 부품의 품목분류나 역내산 여부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다.

【무엇에 쓰는지 모를 때도 있지만 그건 생산자의 잘못은 아니다】



여기서 정부당국이 고민해야 할 지점은 FTA 무역거래에서 하청업체들에게 지나치게 무거운 정보제공 의무가 주어지지는 않는가 하는 문제일 것이다. 수출기업의 입장에서 수출 제품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FTA 특혜 관세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추고자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위험관리를 위하여 관련 정보와 증빙자료를 최대한 확보해야 하는 것도 당연하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중간 제품의 원산지 입증책임이 하청업체들에게

전가되어 상대적으로 품목분류나 수출입 통관 지식이 부족한 영세업자들이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들이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FTA 환경에서 관련 업무부담이 영세업자들에게 전가된다는 실증적 분석이나 연구사례는 없다. 그러나 다음의 사례를 본다면 영세업자들에게 과도한 정보제공 부담의 문제가 분명히 존재함을 짐작할 수 있다.

【자동차 프로펠러 샤프트 내부에 삽입되는 판지의 사례】



2017년, 국내의 한 하청업체에서 판지(paperboard)를 국내조달하여 자동차용 샤프트 제조업체에 납품하면서 원청업체의 요구에 따라 판지의 HS 코드번호를 확인하기 위하여 품목분류사전심사를 신청한 사례가 있다. 이 판지는 별다른 추가가공 없이 둘둘 말아서 자동차의 프로펠러 샤프트의 내부에 소음과 진동감소를 위하여 삽입되는 물품이다. 샤프트 제조업체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제조하는 샤프트의 원산지 판정을 위하여 그 재료로 투입되는 판지의 HS 코드정보를 하청업체에 요청한 것이다.

수출자 입장에서는 위험요소를 줄이려는 의도일 수는 있겠으나 세변변경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라면 판지의 품목번호나

원산지는 사실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 프로펠러 샤프트는 제8708호에 분류되며, 제8708호 물품의 품목별 원산지 기준은 CTSH(HS 6단위 변경기준)이기 때문이다. 최종 제품인 프로펠러 샤프트와 투입되는 재료인 판지가 동일한 6단위 HS 코드에 포함되지 않는 한, 판지의 HS 코드는 프로펠러 샤프트의 원산지 판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리고 판지와 프로펠러 샤프트에 각각 적용되는 HS 6단위 코드가 서로 다르다는 것은 품목분류에 별다른 조예가 없더라도 쉽게 알 수 있는 일이다. 즉, 원청업체는 원산지 판정과는 관계없는 불필요한 정보를 하청업체에게 요구한 것이다.

하청업체의 어려움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어서 판지의 정확한 HS 품목분류를 위해서 하청업체는 몇 가지 추가정보를 확인하여 제공해야 했다. 판지가 HS 제48류에 포함되는 것은 명확하지만 제48류의 물품의 경우 4단위, 6단위 코드를 확정하기 위하여는

제조공정이나 표면의 피복 도포여부, 침투나 보강여부 등의 제조자만이 알 수 있는 추가 정보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신청업체나 정부기관 모두 원산지 판정과는 무관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하여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들이는 셈이다.

6. 제언

FTA 환경이 우리 수출기업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그러나 그런 기회의 그늘이 영세업체에만 드리워 진다면 정책결정자는 그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최근에 개정된 관세법 시행령을 보면 이 글에서 언급한 문제점과 어느 정도 맥락이 닿아있음을 알 수 있다.

관세법시행령 제106조 제6항

- ⑥ 관세청장은 법 제86조제2항에 따라 품목 분류를 심사할 때 신청인이 법 별표 관세율 표에 따른 호 및 소호까지의 품목분류에 대한 심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번호까지의 품목분류에 대해서만 심사하여 통지할 수 있다. <신설 2019. 9. 24.>

위 개정안의 핵심은 FTA에 의한 원산지 판정의 목적으로 사전심사가 신청되는 경우 필요한 수준의 정보만 요구하고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개정안으로 정부기관(관세청)의 업무부담을 다소 줄일 수 있을지 몰라도 이 글에서 언급한 영세업체의 과도한 정보제공 부담까지는 해결할 수 없다.

FTA 환경에서 무역동향 변화가 국내 영세업체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원산지 확인과 관련한 추가적인 업무부담이 발생하지는 않는지에 대한 실제적인 분석과 연구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러한 연구결과를 관련 제도의 정비에 활용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행정서비스의 제공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FTA TRADE REPORT



해외통관애로

베트남 통관환경 및 최근 베트남 진출기업 애로 사항

양승혁 | 베트남 관세관



양승혁
베트남 관세관

베트남 통관환경 및 최근 베트남 진출기업 애로 사항

1. 베트남 통관환경

(1) 수출입 금지 및 사전 수출입 허가 등

베트남은 2018년 1월 1일부로 시행된 대외 무역법(05/2017/QH14), 2018년 5월 15일부로 시행된 동법 시행령(Dcree 69/2018/ND-CP)에 따라 수입 금지 대상 품목 및 사전 수입허가 필요 품목을 규정하고 있다.

수출입 업체로 등록된 업체는 수출입 금지 품목(시행령 부록1), 수출입업자가 지정된 품목(시행령 부록2), 수출입 라이센스가 필요한 품목(시행령 부록3), 또는 특정품목 (시행령

부록4)을 제외한 일반품목을 수출입 할 수 있다. 수출입 금지품목으로는 무기, 탄약, 폭죽, 중고 가전 및 소비재, 국내 보급 및 배포가 금지된 각종 출판물, 중고 운송 수단 및 부품, 차대번호 수정 또는 디자인이 변형된 각종 차량 및 우측핸들 차량 등 운송수단, 화학물질, 각설크에 속하는 석면 함유 자재 · 제품, CITES*에 따른 동식물 등이다.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 교역에 관한 국제협약



(2) 관세율

관세율은 일반관세율, 우대관세율, 특혜관세율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일반관세율은 (Normal tariffs) 베트남과 정상무역관계(NTR)를 맺고 있지 않은 국가, 예컨대 WTO 회원국이 아닌 나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적용하는 관세율을 의미하며, 우대관세율의 150%를 부과한다.

우대관세율(Preferential tariffs)은 베트남이 정상무역관계(NTR)를 맺고 있는 국가에 적용되는 관세율로서 WTO 회원국으로부터의 수입에 대하여 부과하는 관세율이다.

특혜관세율(Special preferential tariffs)은 베트남과 FTA 등 특혜관세협정을 맺은 국가들 또는 베트남 상품에 특혜관세율 혜택을 부여하는 국가에 적용되는 관세율이다. 특히, 한국은 한·ASEAN FTA와 한·베트남 FTA 특혜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수출입자가 유리한 FTA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민감품목 및 초민감 품목, 상호대응세율 적용대상 품목은 특혜제공이 제한되거나 거부될 수 있다.(한·ASEAN FTA에 한함)

(3) 수출용 원자재 등의 수입세(관세, 수입부가세) 면제

수출용 원자재 등의 수입세 면제와 관련된 법령으로는 베트남 「수출입세법」 제16조, 시행령(Decree No. 134/2016/ND-CP) 제12조를 참고할 수 있다.

동 법령은 수출물품 생산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원자재 등은 관세가 면제되며, 그 대상은 원부자재, 소모품, 부분품, 중간재 등이다. 이 때 제조시설이 반드시 있어야 하며, 일부 공정을 외주가공 맡긴 경우에는 직접 수출했다 하더라도 면세가 아니라는 유권해석으로 인해 현재 다툼이 있다(다만, 해외 임가공 계약에 따른 수출품 제조 업체는 시행령 제10조 임가공 면세 규정에 따라 수입세가 면제됨). 관세면제를 받은 기업은 추후 세관에 연1회 정기적으로 정산보고(Liquidation)를 해야 한다.

수출물품 생산용 원자재 등을 수입신고하는 경우, 수출 이행기한 제한은 없으나, 수입세를 납부한 원자재 등은 수출 후 수출신고필증 및 소요량 증명서를 첨부하여 세관에 수출 사실을 증명하고, 환급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과오로 과다 납부한 세액의 환급 허용 기간은 10년이다. 한편, 수입자가 직접 수출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환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해야 한다.

수입된 내수물품 생산용 원부자재를 수출용 원부자재로 용도 변경하는 경우 용도 변경 시점에 세관에 사전신고(반대의 경우도 동일)를 해야 하며, 최초 수입신고필증이 발급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수출을 완료해야 한다.

(4) 수출세

베트남은 국내 원료수급의 원활화, 광물 및 원자재의 무분별한 채취 및 대외유출 방지를 목적으로 원목, 모래, 귀석, 모든 광산물(석재 포함), 석탄, 금속(비철 금속 포함) 및 금속 Scrap 등 품목에 대하여 0~40% 수준의 수출관세를 부과하며, 수출 관세의 산출은 FOB/DAF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 수출세 부과 여부는 재무부 시행령인 「Decree No. 125/2017/ND-CP (122/2016/ND-CP 보충 시행령)」에서 HS CODE를 기준으로 확인할 수 있음.

수출관세는 211개의 상품그룹(HS CODE 4단위 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천연자원, 광물 등의 비중이 제품가치의 51% 이상 차지하는 경우 5~20%에 상당하는



수출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는 가공 수준이 낮은 천연자원, 광물 등에 대한 수출세율은 높게 책정하여 해당 자원의 유출을 막고, 가공 수준이 높은 천연자원 등에 대한 수출 세율은 낮춤으로써 베트남 내 부가가치 창출(국내생산 원자재 확보를 위한 수출 제한) 및 가공기법 개발을 위한 투자를 유도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원산지가 베트남산이 아닌 금속바(황동)를 수입하여 가공후 남은 잔재물

(스크랩)을 한국으로 보내 금속바 형태로 재수입하는 형태의 일시수출 건에서 수출세를 추징한 사례가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베트남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도록 규정개정을 요구중이다.

※ 베트남 수출세 개황(2019년 12월 현재)

- 석탄, 광물(석재 포함), 원목, 금속(비철금속 포함) 등에 수출세 부과
- 211개 품목(HS code 4자리 기준), 541개 세부품목(HS code 8자리 기준)
- 주요 세율 : 철광 · 구리광(40%), 각종 원목 및 제재목(25%), 금속 스크랩류(15~22%), 석탄(10%)

(5) 수입물품 검사

베트남에는 5개 중앙 직할시 및 58개 성 등 63개 광역지방행정기관이 있으며, 이 가운데 35개 시 · 성에 세관국이 설치되어 있고, 세관국 산하에는 총 160여 개의 세관지국이

있다. 베트남 관세청은 “관세총국”이라고 하며, 지방의 세관국은 각 시 · 성 인민위원회 소속으로 지방 공무원 신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관세총국의 업무지휘를 받는다.

모든 수출입화물은 수출자/수입자/신고대행자가 신고한 통관신고서와 첨부 서류 등의 일치 여부 확인 및 실물검사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성실화물(Green Channel), 우범

화물(Yellow Channel), 위험화물(Red Channel) 등 3종류로 구분되어 관리되고 있다.

【베트남 세관 수입물품검사 종류】

Channel 분류	필요 심사 절차
Green Channel	세관 서류심사 및 물품검사 면제(전산신고만으로 신고수리 가능)
Yellow Channel	E-Yellow Channel e-document 세관 제출
	Paper-Yellow Channel 종이서류 세관 제출
Red Channel	종이서류 제출 및 물품 검사

※ 육류 · 수산물 · 곡류 · 두류 · 동식물 수입시에는 주무관청의 사전 허가와 검역을 거친 후 세관 신고시 수입허가서와 검역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함.

(6) 주요 통관애로

① 복잡한 통관절차와 모호한 규정

베트남에서 발생하는 주요 통관애로사항은 복잡한 통관절차와 모호한 규정이다.

세관절차에 관한 시행령(08/2015/NĐ-CP, 59/2018/NĐ-CP), 시행 규칙(38/2015/ TT-BTC, 39/2018/TT-BTC) 규정에 따른 통관과정에서 규정에 대한 해석과 처리에 일관성이 부족하여 세관과 담당자에 따라 다른 집행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고, 그에 따른 불필요한 서류 제출 요청 등에 대응해야 하므로 통관이 지연되고 있다.

다양한 부서 및 정부기관과 관련된 갖가지 승인서류로 인해 통관이 더욱 복잡하고 많은 단계를 요하며, 각 국가기관 간 협력 시스템이 원활하지 못해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고의적인 통관 지연 역시 발생하고 있는데, 베트남에서 생산되지 않는 시설재 및 원부자재 수입시 지역세관의 통관지연 발생도 일어나고 있다. 예컨대 베트남 내 검사기관에서 객관적으로 작성한 품목분석보고서를 첨부하여 수입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타 검사 기관의 추가 검사를 강요하는 경우가 있다.



증명서 유효기간인 1년 범위 내의 수입품은 변경된 HS code에 따른 수정 원산지 증명서를 한국 수출자로부터 받아 제출하면 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수입신고시 원산지증명서를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제출 의사표시를 반드시 해야 하며,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는 30일, 한-베 FTA 원산지증명서는 1년내에 제출해야 한다.

③ 품목분류 오류에 따른 추징

② FTA 원산지증명서 부인

FTA 원산지증명서 부인도 발생하는데, 수입자가 C/O 원본이 아닌 사본을 제출하거나 수입신고시 원산지증명서 사후제출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등 수입자 귀책사유로 부인된 사례도 있으나, 베트남 세관담당자가 다양한 FTA 협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원산지증명서를 거부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사후심사 또는 세관조사 과정에서 HS code 오류가 발견될 경우 그동안 받았던 특혜관세 혜택까지 추징대상이 되므로 유의해야 하며, 이 경우 한-베 FTA 및 한-아세안 FTA 원산지

품목분류 오류에 따른 추징에 대한 것도 수출시 주의해야하는 부분인데 이견이 없는 품목의 경우 수출국의 HS code를 수입 신고시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통상적이나 관세평가 및 Hs code에 대한 판단은 수입국 세관의 견해가 가장 중요하므로 특히 반복적으로 수입할 계획이 있거나, 최초 신고 물품의 경우에는 품목분류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관련 근거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베트남 관세총국에 신청하는 HS code 사전 확정 신청제도를 활용하여 위험 관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관련 정보는 주호치민 총영사관 홈페이지(정보마당 법령 정보 페이지)에 기재된 내용을 참조할 수 있다.

2. 최근 베트남 진출기업 애로 사항

(1) 베트남 원산지증명서상 Hs code 오류(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수출시)

베트남 발급기관(베트남 산업무역부)은 베트남 수출신고서가 수정되지 않는 이상 수정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으며, 베트남 세관은 해당 물품이 이미 수출된 경우 수출신고서 정정을 허용하지 않는다.

한국 원산지증명서 발행기관(세관 또는 상공회의소)이 협약 상대국이 주장하는 HS

code의 FTA 원산지 기준을 검토하여 해당 기준을 충족할 경우 변경된 Hs code가 기재된 수정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베트남 관세총국의 Hs code 사전심사 결과통지서 또는 세관 수입신고필증 등을 제출하여 증빙)하는 것과 다름에 유의해야 한다.(한국에서 베트남으로 수출시)

(2) 수출용 원재료 등 면세범위 축소 경향

베트남은 수출 장려 및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일반 수출용 원재료 및 해외업체와 임가공 계약을 체결한 기업의 수입물품에 대한 수입세(관세 및 부가세) 면세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과거에는 수출용 원재료를 투입하여 275일 전에 물품을 수출하면 면세를 확정하는 구조였으나 베트남 정부는 「수출입세법」시행령(134/2016/ND-CP, 2016.9.1. 발효)을 개정하여 수출용 원재료 등에 대한 275일 관세유예 제도를 폐지하였다.

베트남 재무부(관세총국)은 관세유예 제도를 폐지하면서 수출용 원재료 등에 대한 면세 요건 기준을 마련하였으나, 최근 세수확대를 위해 면세범위를 축소하는 보수적인 유권 해석을 발표하여 문제가 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수출품 제조시 일부공정이라도 외주를 줄 경우 직접수출 하더라도 면세가 아니라는 유권해석과 사전 계약에 따라 수출용 원재료 등 수입자가 수출품을 제조하고 베트남 국내 타법인에 내국수출을

하여 해당 법인이 최종가공을 마치고 수출하는 간접수출의 경우에는 면세가 아니라는 것이었다. 과세당국의 추정이 현실화 될 경우 확인된 것만 수백억 대에 달하는 세금 부과로 이어질 상황이었다.

이에 한국 관세청 등의 끈질긴 설득으로 베트남 당국은 내국수출을 통한 간접수출의 경우 수출용 원재료 등은 면세가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철회(2019.6.25.) 하였으나, 외주가공을 거친 수출품에 대한 수출용 원재료 등 면세부인 유권해석은 현재 여전히 유지하고 있어 다툼이 있으며 한국 관세청은 우리기업들의 애로해소를 위한 노력을 지속중이다.

이에 따라, 수출용 원재료 등을 수입하는 베트남 진출 한국기업들은 가능한 한 향후 축소가 예상되는 베트남의 일반 면세제도 보다는 FTA 특혜 원산지증명서를 활용하여 관세를 절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중고 설비 및 기계 통관 요건

일반적으로 베트남에서는 중고설비 수입이 제한되나, 제조가공 등 생산활동에 공여되는 HS 84,85류에 해당하는 중고 생산(기술)라인 및 설비, 기계류에 대해 조건부 수입을 허용하고 있다. 최근 중고기계 등 수입과 관련하여 총리 결정문이 개정(18/2019/QD-TTg, 2019.6.15.시행)되었다.

생산라인이 아닌 일반 기계류(부분품 포함)는 제조연한이 10년 이내여야 하나, 특정분야(목재, 제지, 펄프 등)에 대해서는 15년이내 또는 20년이내여도 가능한 경우가 있다. 생산라인을 구성하는 설비류라 하더라도 생산효율성 기준(최초 설계 대비 85% 이상 성능을 보유), 에너지 원료 소모율 기준(최소 설계 대비 15%를 초과할 수 없음), 기술이전

관련 법령에 따른 제한(또는 금지)에 해당하지 않을 것, OECD 회원국 중 최소 3개국 이상 현재 사용하고 있는 기술일 것 등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 특히 수출국에서 생산라인 설비 검사 인증서(유효기간 18개월)를 발급받을 경우에는 설비가 가동중일 때 검사가 진행돼야 함.

최근 중국으로부터 베트남으로 생산시설을 이전한 업체들이 통관 애로사항을 많이 겪고 있는데, 이는 한국의 중고설비는 한국공인 검사원(KAIRI) 검사 인증서를 발급받아 수입이 가능하다. 중국 중고설비를 반입하는 경우에는 베트남에서 검사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며, 중고가 아님에도 중고가 의심된다며 통관을 지연시키고 Under-table Money를 요구하는 사례도 보고된 바 있다.

(4) 한-아세안 FTA 누적조항 적용

한-아세안 FTA 협정은 부속서3 원산지규정 제7조에서 원산지 누적조항을 두고 있다. 즉, 일방 당사국 영역의 원산지 상품이 특혜관세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최종재의 재료로 다른 당사국의 영역에서 사용된 경우, 그 최종재의 작업 또는 가공이 발생한 그 다른 당사국 영역의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된다.

아세안 국가들은 상호 교역시 일반적으로 ATIGA(아세안 국가간 상품교역 협정)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므로 한국산 원재료로 베트남에서 가공하여 태국 등 타 아세안 국가로 수출하는 경우 위 누적조항에도

불구하고 특혜관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베트남 산업무역부로부터 한-아세안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 받으면 누적조항 혜택을 누릴 수 있음에도, 담당자에 따라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최근 한-아세안 특별정상회담(2019.11월 부산) 개최 계기에 열린 아세안 사무국장과의 기업간담회에서 베트남 한인상공인협회(코참)는 한-아세안 FTA 누적조항이 자동적으로 효력이 발생할 수 있도록 ATIGA* 협정에 상호 교차 누적조항 신설을 건의한 바 있다.

* 아세안 국가간 자유무역협정

3. 세관 민원 해소방안

(1) 꼼꼼한 사전 확인

베트남은 FDI 유치를 위해 각종 면세혜택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으나,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최초의 약속과 다르거나 부처간 엇박자가 발생하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면세제도를 활용하면서도 사전에 챙겨야 할 각종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 추징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으므로 불필요한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항상 수입전 또는 투자 전 미리미리 해당 절차를 꼼꼼히 살펴보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저렴한 수수료를 제시하거나 세관원과의 관계를 과시하는 업체보다는 검증된 물류업체를 이용하고 주베트남 대사관(하노이), 관세관이 상주하고 있는 주호치민총영사관, 한인 상공인연합(코참), 코트라(하노이, 다낭, 호치민), 무역협회(호치민), 대한상공회의소(하노이) 등을 통해 즉시 유용한 정보나 조언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세관 세무조사 사전 대응

세관의 통관후 세무조사는 10영업일(1회 연장 가능) 동안 실시하며, 특별 세무조사 대상인 경우에는 30영업일(1회 연장 가능) 동안 실시한다. 필요시 조사연기 신청도 가능하며 연기신청에 대한 답변시한이 5영업일이므로 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평소 성실한 재고관리는 물론 현품과 회계장부간 불일치 원인 등을 반드시 파악하고 있어야 하며, 최종 협상시에는 본세는 물론

가산세와 지연이자까지 포함하여 감안해야 한다. 세액에 영향을 미치는 신고오류 수정 기간은 60일(60일 이후라도 자진 신고를 하면 10%의 행정벌금만 부과하나, 세관이 지적할 경우에는 20%)이며, 수출입 신고 취소는 실제 수출입이 발생하지 못한 경우 등 아주 제한적으로 운용된다.

기간이 도과한 후에는 본세의 20%에 해당하는 벌금(가산세)과 1일 0.03%(2016.7월

이전 해당분은 0.05%)의 지연이자가 있다. 또한 고의로 허위신고를 할 경우(탈세 또는 조세사기) 탈루세액에 더해 100~300%의 벌금이 부과되며, 과거 10년치까지 추징이

가능하다. 베트남에서 부과되는 행정벌금에는 하한선과 상한선이 있기 때문에 하한선을 부과하고 추가 현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다.

(3) 세관 세무조사 사후 대처

우리기업들은 베트남 직원들에게 각종 관리업무를 맡기고 한국인 관리자는 영업이나 마케팅, 품질관리 등에 전념하는 경우가 많다. 베트남은 공무원의 권한이 막강하고 만성적인 세수부족을 겪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협박과 위협 등 다양한 수단을 사용하며, 베트남 직원들은 이에 매우 취약하다.

따라서 세관조사시 베트남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회사를 위해 대응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관리자가 반드시 평소 점검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 일반적이진 않지만, 평소 통관업무를 전담했던 직원이 세관원에게 먼저 위반사항을 알려준 것으로 밝혀진 경우도 있다.

조사관이 작성한 세무조사 의사록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고 객관적인 자문 등을 받아보는 것이 필요하며, 납득이 되지 않는 한 어떤 서류도 쉽게 서명해서는 안 된다.

세무조사 결정자는 세무조사 종결일로부터 15일 기한 내에 세무조사 의사록(세무조사 보고서)에 서명하여 신고인에게 송부해야 한다.

세무조사 결론에 대해 권한 있는 기관의 전문분야에 관한 의견이 필요한 경우, 세무조사 의사록 서명 기한은 권한 있는 기관의 의견이 있는 날로부터 계산되며, 권한 있는 전문기관은 세관의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기한 내에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따라서 의사록 검토는 상황에 따라 최대 30영업일까지 가능(독촉전화가 매우 빈번)하므로 그 사이에 심도 깊게 대응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세무당국의 세무조사 의사록(세무조사 보고서) 통보 및 피조사자의 의사록 서명(의사록 수령후 5영업일 이내 서명)이 이루어지면 정식으로 결정 통지서(과세 통지서)가 발행되며, 10영업일 이내 통지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실무상 피조사자가 30영업일까지도 의사록에 서명하지 않을 경우 결정 통지서가 즉시 발행된다.

납부기한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강제 집행 가능기간이 개시되면, 세관에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기관 보증 및 미납 세금·벌금에 대한 국고 납부 서약서를 갖추어야 하며, 미납 세액기준에 따라 3개월(5억동 ~ 10억동), 6개월(10억동 ~ 20억동), 12개월(20억동 이상) 기간 동안 월

균등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시행규칙 제39/ 2018/TT-BTC 제1조 67항 참조)

불복(세관국, 관세총국, 재무부 등 상급 기관의 순서로 이루어지며, 1차 이의제기가 거부될 경우에는 2차 민원제기 가능하며 행정소송도 병행 가능)은 결정 통지서 수령 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하고, 그 후에는 행정소송만 제기할 수 있으며 1년 내에 제기 해야만 하므로 처음부터 회계법인 또는 법무 법인의 조력을 받는 것을 추천한다.



FTA TRADE REPORT



FTA 100% 활용하기

한국-이스라엘 FTA와 기술 무역

최태훈 | 한-이스라엘 산업연구개발재단 사무총장



최태훈

한-이스라엘 산업연구개발재단 사무총장

한국-이스라엘 FTA와 기술 무역

1. 한국-이스라엘 FTA 현황

2019년 8월 21일, 드디어, 한국과 이스라엘의 FTA 협상 종료가 선언되었다. 양국간의 길었던 세부사항 협상이 드디어 합의에 도달하는 순간이었다.

한국과 이스라엘의 교역 규모는 2015년부터 꾸준히 증가하여 2018년 27억 달러를 돌파하였다. 그러나, 2018년 한국의 전체 통상 무역 규모는 1.1조 달러를 넘어, 이스라엘과의 교역은 약 0.23%로서 전체국가 중 45위에 해당하며, 약 890만의 이스라엘 인구를 고려

【한-이스라엘 FTA 협상 종료 선언, 2019년 8월 21일】



했을 때, 한국의 입장에서 교역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국가는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對 이스라엘 연도별 교역 현황】

(단위: 백만불)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5
상품수출	1,818	1,532	1,464	1,225	1,180	1,275	1,268	1,448	591
상품수입	683	861	856	960	870	865	1,167	1,271	396
총교역량	2,501	2,393	2,320	2,185	2,050	2,140	2,435	2,719	987
무역수지	1,135	671	608	265	310	410	101	177	195

출처 : 무역협회

한국의 對 이스라엘 수출 품목으로서는 자동차가 약 7.3억 달러로 전체의 50.1%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이스라엘의 자동차 시장에서 한국의 현대차와 기아차가 각각 14.4%와 13.3%의 비중으로 1,2위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의 對 이스라엘 수입 품목으로는 반도체 제조용 장비, 전자응용 기기, 계측제어분석기 등 장비류가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對 이스라엘 수출입 상위 10대 품목】

(단위: 백만불, %, MTI 3단위 기준)

순위	수 출			수 입		
	품목명	금액	비중	품목명	금액	비중
1	자동차	726	50.1%	반도체제조용장비	323	25.4%
2	합성수지	104	7.1%	전자응용기기	165	13.0%
3	영상기기	68	4.7%	계측제어분석기	104	8.2%
4	자동차부품	35	2.4%	무선통신기기	77	6.1%
5	건설광산기계	31	2.2%	반도체	66	5.2%
6	원동기및펌프	27	1.9%	항공기및부품	63	5.0%
7	기타석유화학제품	27	1.9%	동제품	60	4.7%
8	반도체	26	1.9%	공구	27	2.1%
9	무선통신기기	22	1.5%	비누치약및화장품	27	2.1%
10	플라스틱제품	21	1.4%	알루미늄	26	2.0%
	10대품목 합	1,087	75%	10대품목 합	938	73.8%
	전체	1,448		전체	1,271	

【글로벌 자동차 제조사별 이스라엘의 자동차 판매량 순위】

제조사	2018년		2017년	
	판매량(대)	비중	판매량(대)	비중
현대	38,423	14.4%	36,781	13.1%
기아	35,524	13.3%	35,663	12.7%
토요타	27,192	10.2%	31,103	11.0%
스코다	19,928	7.4%	21,742	7.7%
닛산	15,626	5.8%	14,342	5.1%

출처 : Israel Motor Vehicles Importers Association (IMVI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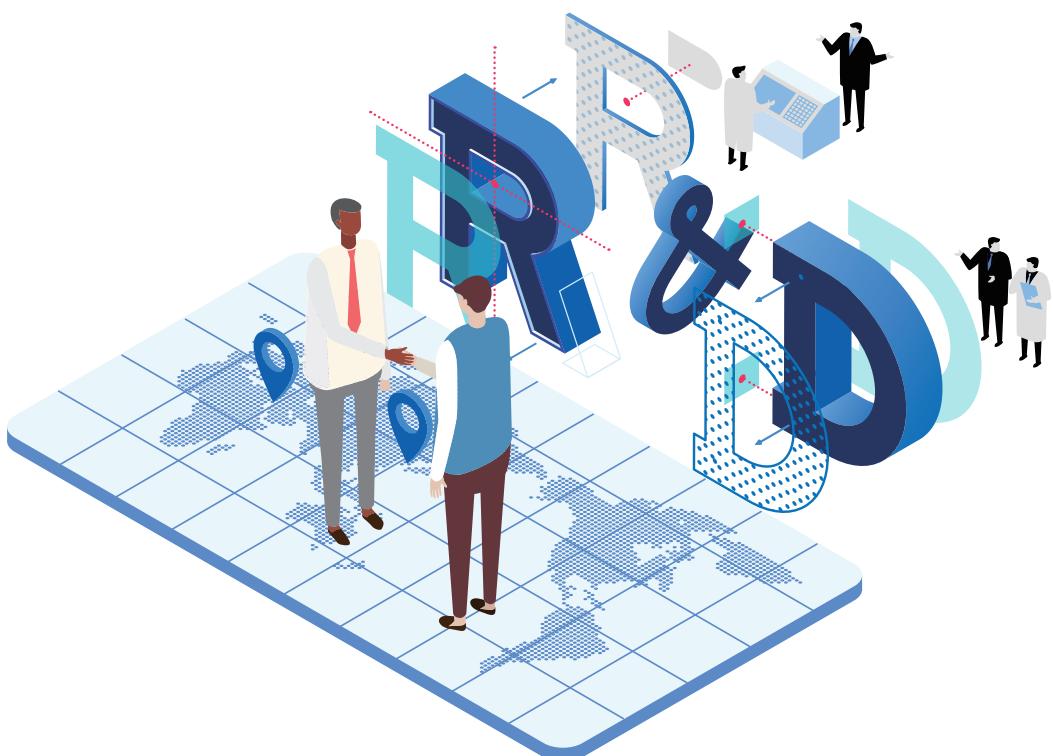
이스라엘과의 FTA를 통하여, 한국의 대이스라엘 수출액 중 자동차(관세율 7%), 자동차부품(6~12%), 섬유(6%), 화장품(12%) 등의 주력 수출품목을 포함한 약 97.4%에

해당하는 품목의 관세가 ‘즉시 철폐’될 예정이므로, 관련 부분의 국내 기업의 수출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스라엘로부터의 수입 비중 25.4%로 1위

품목인 반도체 제조용 장비의 관세는 3년 이내 철폐되며, 2위 품목인 전자응용기기도 3년 이내 철폐될 예정이므로, 국내 주력 산업의 부품·장비 분야에서 특정국가들에 대한 수입의존도 편향성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한국과 이스라엘의 FTA 협상종료 선언식의 부대행사로서, 와이즈만 연구소의 기술지주회사인 예다와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공동기술협력 MOU 체결 서명식이 있었던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스라엘과의 FTA에서 양국의 주요관심사는, 양국간

통상교역의 증대 뿐만 아니라 양국간 기술협력, 기술이전, 혁신기술에 관한 상호 투자 촉진도 포함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양국은 투자와 서비스 분야에 있어서, 네가티브 자유화 방식을 도입해 세계무역 기구(WTO) 서비스협정(GATS) 이상 수준의 개방을 상호 약속했으며, 한·이스라엘 투자 보장협정(BIT)을 대체하는 투자 보호제도를 설치할 예정이다. 따라서, 양국의 FTA는 상호 투자의 확대와 함께, 양국 기업간 기술 및 비즈니스 협력을 고양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 양국의 외국인 직접투자 및 해외투자 현황

한국과 이스라엘의 외국인 직접투자 현황을 보면, 양국 모두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스라엘이 한국보다 많은 금액의 투자를 유치하고 있다.

【한국과 이스라엘의 외국인 직접투자】

(단위: 백만달러)

국가	2016년	2017년	2018년
한국	7,415	12,699	14,479
이스라엘	11,988	18,169	20,7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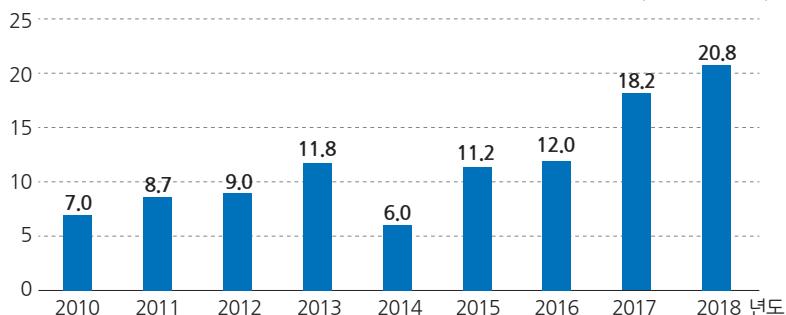
출처 : 국가통계포털, www.kosis.kr

특히, 한국과 이스라엘의 GDP는 각각 17,208억 달러, 3,697억 달러이므로, GDP 대비 외국인 직접투자액을 비교해 보면, 2018년에 한국은 0.84%, 이스라엘은 5.62%로 이스라엘이 압도적으로 높다. 이스라엘의 외국인 직접투자는 2010년부터 2018년까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18년 외국인 직접투자액 중 이스라엘 스타트업에 투자된 비중은 25%를 상회한다.

2013년부터 2018년까지의 이스라엘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는 약 35억 달러에서 약 75억 달러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중 외국인 투자액은 약 24억 달러에서 약 54억 달러로 전체 투자의 70%를 상회하고 있다. 즉, 이스라엘의 외국인 직접투자액 중 상당부분이 이스라엘의 스타트업에 투자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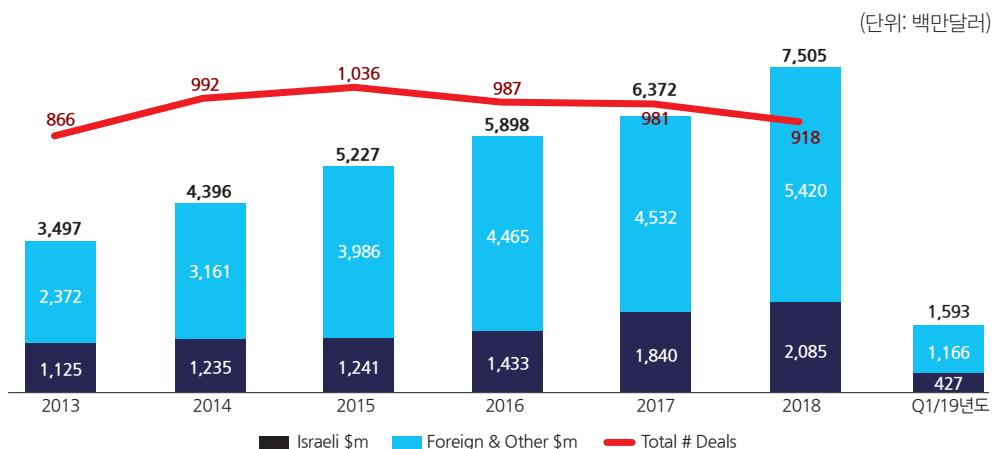
【이스라엘의 외국인 직접투자 추이】

(단위: 십억달러)



출처 : 국가통계포털, CITI은행 이스라엘지사

【2013~2018 이스라엘의 스타트업 투자추이】



출처 : IVC Research Center

또한, 양국의 해외투자 추이를 보면, 한국은 2017년 약 510억 달러로 상승한 후 2018년에 다시 389억 달러로 조정기미를 보이고

있으며, 이스라엘은 2018년 약 61억 달러로 점진적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과 이스라엘의 해외투자】

(단위: 백만달러)

국가	2016년	2017년	2018년
한국	30,508	51,044	38,917
이스라엘	14,579	6,153	6,117

출처 : 국가통계포털, www.kosis.kr

2010년부터 2018년 말 누계기준으로 양국의 상호 투자를 보면, 한국의 對이스라엘 투자는

약 5천 7백만불이며, 이스라엘의 對한국 투자는 약 1억 4천6백달러이다.

【연도별 양국 간 직접투자 규모】

(단위: 신고금액 기준, 백만불)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누계
한국 → 이스라엘	0.2	0.0	0.0	2.0	13.5	6.9	2.8	0.9	1.2	57.2
이스라엘 → 한국	0.1	1.9	28.3	14.0	1.1	0.6	6.5	45.7	9.6	146

출처 : 한국수출입은행, 산업통상자원부

3. 양국의 기술 무역 현황

한국과 이스라엘은 GDP 대비 R&D 투자 비중에서 세계 1,2위를 다툴 정도로, 기술 개발에 대한 국가적 비중이 높다. 기술수출 금액(2015년 기준)으로 볼 때, 인구 천만 명 이하의 국가 중 아일랜드(2위), 스위스(7위)와

함께 이스라엘은 세계 11위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은 기술무역규모는 세계 11위, 기술수출 금액으로는 세계 13위(이상 2015년 기준)를 차지하고 있다.

【2015년 기술무역 세계 순위】

(기술수출액 순)

순위	국명	기술수출 (백만달러)	기술도입 (백만달러)	기술무역규모 (백만달러)	기술무역수지 (백만달러)	수지비	인구수 (백만명)
1	미국	130,834	88,891	219,725	41,943	1.47	329.1
2	아일랜드	73,337	98,091	171,428	-24,754	0.75	4.9
3	독일	71,836	53,734	125,571	18,102	1.34	83.5
11	이스라엘	15,372	3,512	18,884	11,859	4.38	51.7
13	한국	10,408	16,409	26,817	-6,001	0.63	8.5

기술무역액 출처 : 2017년도 기술무역통계 보고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구수 출처 : OECD stats, 2015년 기준

나스닥에 상장한 이스라엘 혁신기업은 2019년 5월 기준 98개로(출처: IVC Research Center) 이스라엘의 활발한 기술수출을 대변해 주고 있다. 이스라엘은 8,300개의 혁신 스타트업이 활동중이며, 이들 중 Mobileye는

153억 달러에 Intel로 인수(2017년)되었으며, 2019년에 Mellanox는 69억 달러에 Nvidia로 인수되었다. 이스라엘 스타트업 투자회수의 90%이상은 M&A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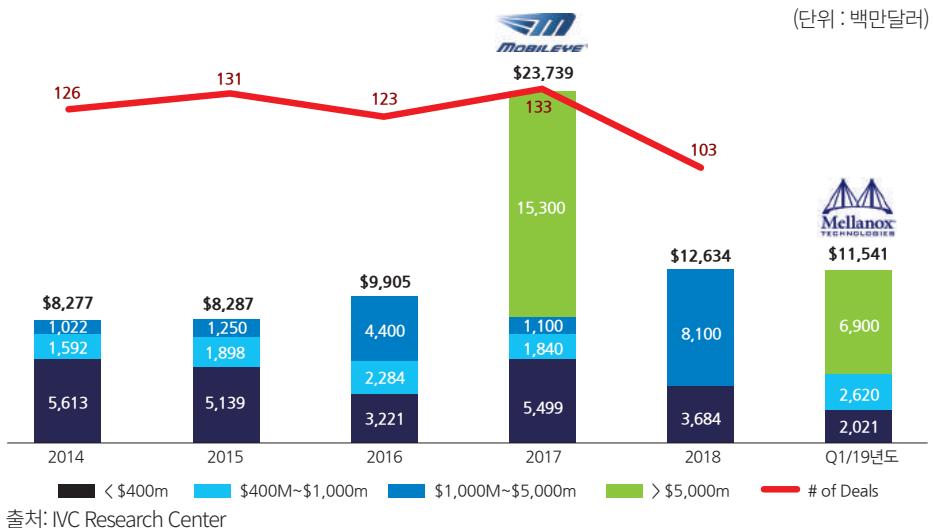
【나스닥에 상장된 이스라엘 혁신기업의 시가총액】

(단위: 백만달러)

기업	Check Point	Amdocs	Mellanox	Nice	Wix.com	Novocure	Verint	Cyberark
시가총액 (십억달러)	18.1	7.7	6.9	6.84	5.31	4.64	3.31	3.17

출처 : IVC Research Center

【2014~2018 이스라엘의 Exit】



이와 같은 성공사례를 통해, 이스라엘 혁신 스타트업이 세계적으로 주목받으면서 투자가 집중되고 있다. 2018년 이스라엘은 1인당 투자금액이 809 달러로, 미국의 302 달러 보다 2.6배 이상이다(출처: IVC Research Center). 또한, Apple, Google, 삼성 등 351개의 다국적 기업이 이스라엘에 R&D 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들의 주요기능은 이스라엘 혁신 스타트업의 초기 발굴, 공동 기술 개발, 초기 투자 및 M&A 등이다. 혁신 기술, 우수 인력, 적시 투자, 다국적 기업 연계 등이 이스라엘 창업 생태계의 완성도를 높이고 있는 것이다.

2017년 한국의 주요 기술무역 대상국가를 보면 미국(96억 달러), 중국(29억 달러),

베트남(25억 달러) 순이다(출처: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아직 한국의 對이스라엘 기술 무역 및 기술투자는 매우 적지만, 최근 국내 대기업 및 중견기업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에 대한 투자가 서서히 확대되고 있다. 삼성과 LG는 이미 이스라엘에 연구소를 운영중이며, 2018년 현대자동차가 크래들을 설치하고, 인공지능 분야의 Alegro, AI, 에너지 분야의 H2 Pro, 무인기 분야의 Percepto 등 이스라엘 스타트업에 투자하였다. 또한, 중견기업인 성우하이텍도 Adasky에 2,000만 달러를 투자하고 자율차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

전세계의 다국적 기업과 투자자들이 이스라엘에 주목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FTA를 발판으로 보다 많은 對이스라엘 기술투자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對이스라엘 기술 투자는 투자를 통한 수익을 기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 우수 기업들이 세계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필수적인 4차산업 기술을

접목할 기반이 될 수 있다. 양국간 기술 투자 및 기업간 교류가 활발해지면, 이스라엘의 유대인 네트워크를 활용한 국내의 외국인 직접투자 증대도 기대해 볼 만하다.

4. 기술무역은 기술협력으로부터

한국기업들에게 해외 기술투자 및 기술 도입은 아직도 매우 모험적인 일이다. 특히나, 이스라엘은 절대적 우방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지정학적인 면, 물리적인 거리, 문화적 이질성, 시장 규모 협소 등의 이유로, 아직 한국기업인들이 즐겨 방문하는 국가가 아니다. 양국 기업간 교류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술 투자나 기술 도입은 시기 상조일 수 있다. 따라서, 상호간 신뢰와 기술적인 이해를 높이기 위해, 기술 무역 이전에 기술협력을 수행하는 것이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법 중의 하나라고 생각된다. 더구나, 양국은 기업간 공동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2001년 한국이스라엘 산업연구개발 재단(이하 한이재단)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한이재단의 주요 역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양국 공동기술개발 과제의 평가·선정 및 지원, 둘째, 한국·이스라엘 기업간 매치메이킹,

셋째, 양국 산업기술협력 활성화를 위한 시찰단 운영이나 컨퍼런스 등 각종 행사 개최이다. 한국과 이스라엘 양국 정부는 매년 같은 규모의 기금을 조성하여 양국 공동 R&D 사업을 지원해 왔으며, 국가별 연간 기금 규모는 2001년 100만 달러에서 2005년 150만 달러로, 2013년 200만 달러로 확대되어 왔다. 특히, 이번 FTA를 통해 각국의 연간 기금 규모는 400만 달러로 증액될 예정이다.



한이재단은 양국이 매년 출자하는 기금을 활용하여, 한국이스라엘 공동기술개발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과제 규모 및 기간에 따라서 타당성 과제, 소형 과제, 대형

과제로 분류된다. 과제당 최대 지원한도는 총 프로젝트 비용의 50%로서, 대형과제의 경우 과제당 1백만 달러까지 지원된다.

【한국-이스라엘 국제 공동기술개발 사업 유형】

	타당성평가 과제	소형 과제	대형 과제
총개발비용	US \$60,000	US \$400,000	한도없음
지원한도 (양국지원금액 합계)	US \$30,000	US \$200,000	최대US \$1,000,000
지원기간	3개월 이내	1년 이내	3년 이내
승인주체	사무총장	사무총장	이사회
과제성격	기술적합성, 상품화 가능성 등 조사/기획	사업화가 가능한 단기연구개발	사업화가 가능한 장기연구개발

2001년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한이재단에 신청된 총 과제수는 299 개이며, 이 중 174 개가 선정되어 지원되었다. 종료된 총 75 개의 공동기술개발과제 중에서 38개의 기업이 약 3,650만 달러의 매출을 달성하였다.

특히, 지원된 과제 중 한국카본과 IAI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고정익 수직이착륙 무인기의 체공시간을 약 2배 증대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추진체계를 성공적으로 개발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공동출자하여 2018년 8월, 합작회사인 KAT를 설립, 운영중이다. 양국 기업간 기술협력이 기술투자와 전략적 파트너 관계로 발전한 우수사례이다.

최근, 기술도입이 1 증가할 때, 기업의 부가 가치는 0.18 증가한다는 분석이 보고되었다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술은 기업의 성장을 위한 과정이지만, 그 중요성은 더욱 높아지는 추세이다. 이번 한국 이스라엘간 FTA를 통하여, 양국이 상호 투자에 관한 제도를 보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스라엘과의 기술협력, 기술이전, 기술투자, 합작회사 설립 등의 기술무역이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 한다. 그것이 4차산업 시대의 국내 기업들에게 또 하나의 성장동력이 될 것이다.

한-인도네시아 CEPA의 타결 의의



2018년 9월, 방한한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정상 간 CEPA 협상 재개를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금년 2월에는 양국 통상장관들이 협상 재개를 공식 선언하였습니다.



2019.11.25 부산에서 개최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통해 한국-인도네시아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한-인도네시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이 최종 타결되었음을 공식 선언하였습니다.

2019 ASEAN-Republic of KOREA
Commemorative Summit

Nov. 25, 2019 Busan, South Korea



인니는 세계인구 4위(2.7억명)

평균연령 29세의 젊은 인구구조

최근 연 5% 이상의 경제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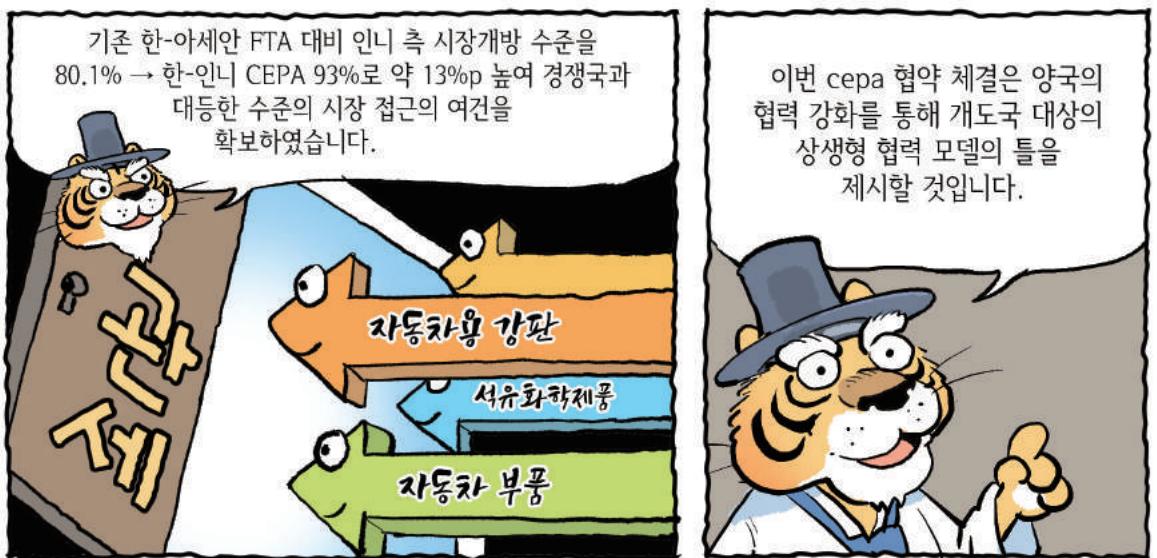
인니는 아세안 국가 중에 교역 2위, 성장잠재력 높은 아세안 최대 시장으로 높은 수준의 시장 개방을 통해 교역을 다변화하고 우리기업의 수출여건을 개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30년 세계경제규모 4위 전망



기존 한-아세안 FTA 대비 인니 측 시장개방 수준을
80.1% → 한-인니 CEPA 93%로 약 13%p 높여 경쟁국과
대등한 수준의 시장 접근의 여건을
확보하였습니다.

이번 cepa 협약 체결은 양국의
협력 강화를 통해 개도국 대상의
상생형 협력 모델의 틀을
제시할 것입니다.



인니에 투자하는 한국 기업 입장에서는 인허가 등 정책적 협조, 협력업체 발굴,
현지 인력 확보 등의 분야에서 인니 입장에서는 한국 기업이 보유한
글로벌 공급망 참여, 기술교류, 인력양성 등의 분야에서 상호 원-원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FTA TRADE REPORT



FTA 지도

한눈에 보는 2019년 9월 기준 FTA 활용 현황

- 주요 품목의 MTI 6단위 기준 FTA 수출입 비중 -
(기간 : 2019년 1월~9월)

MTI 3단위 기준 수출적용실적 10대품목¹⁾

자동차

수출 29.4%

자동차부품

수출 9.8%

합성수지

수출 7.2%

석유제품

수출 6.1%

철강판

수출 4.4%

건전지 및 축전지

수출 3.6%

플라스틱 제품

수출 2.8%

고무제품

수출 2.7%

기계요소

수출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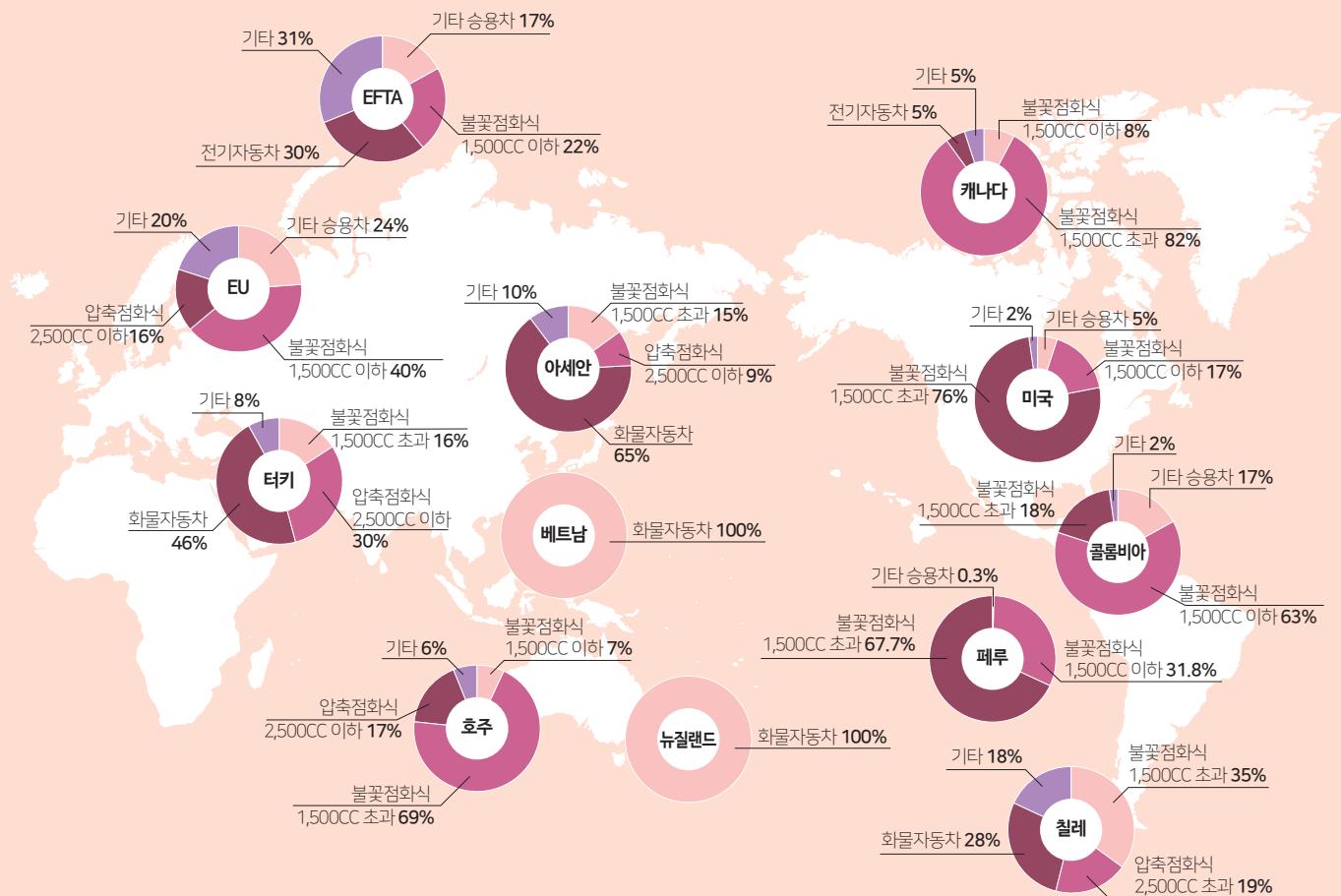
원동기 및 펌프

수출 1.5%

1) FTA 지도의 품목은 MTI 3단위 상위 10대품목을 선정한 후 해당품목에서 MTI 6단위 상위 품목을 협정별로 추출하였음.(수출)

자동차

수출



■ 특혜적용실적 상위품목(MTI 6단위)

[단위 : %]

순위	품명	비중
1	불꽃점화식 1,500CC 초과	53.2
2	불꽃점화식 1,500CC 이하	22.0
3	기타승용차	1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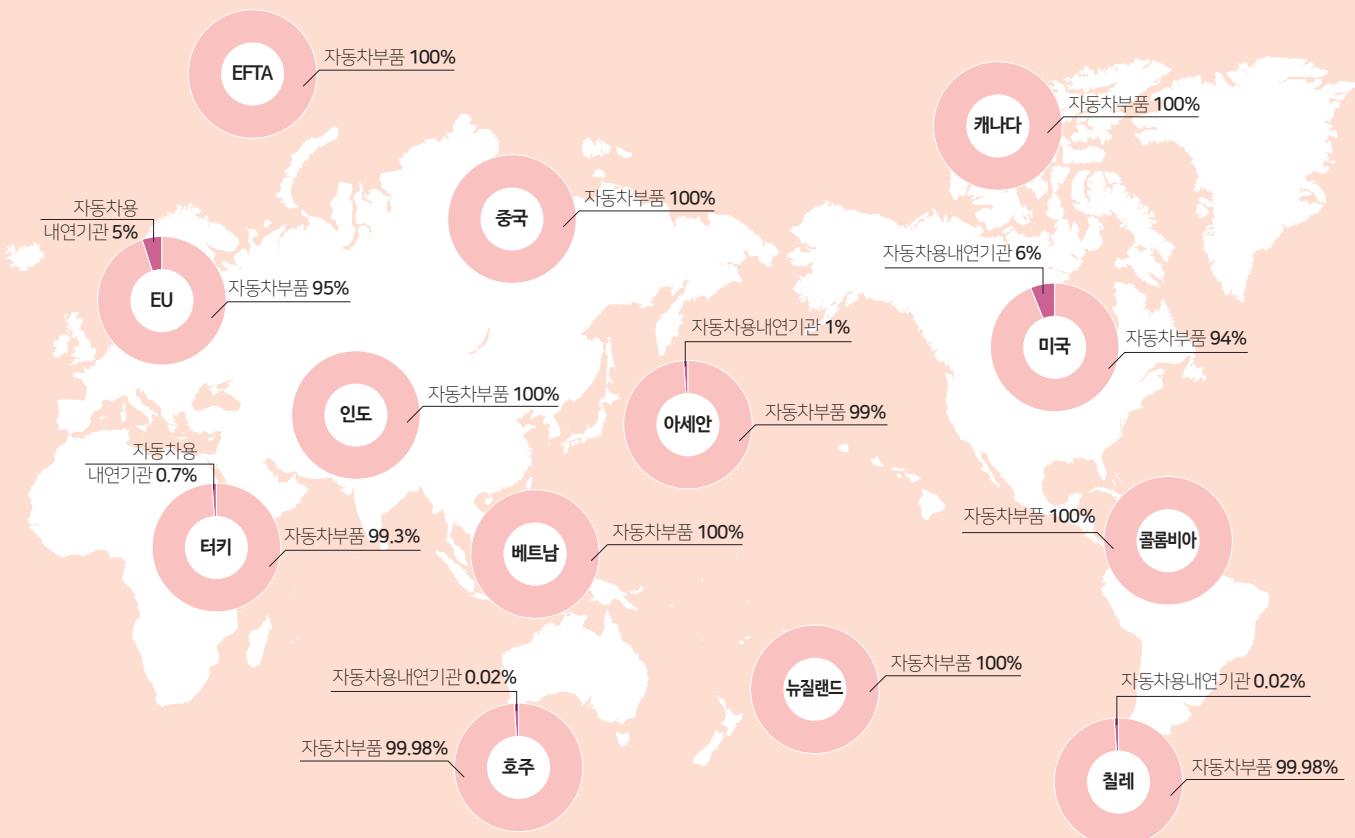
순위	품명	비중
4	압축점화식 2,500CC 이하	6.3
5	전기자동차	5.9
6	화물자동차	2.5

* 불꽃점화식 : 가솔린, LPG 차량

** 압축점화식 : 디젤 차량

자동차부품

수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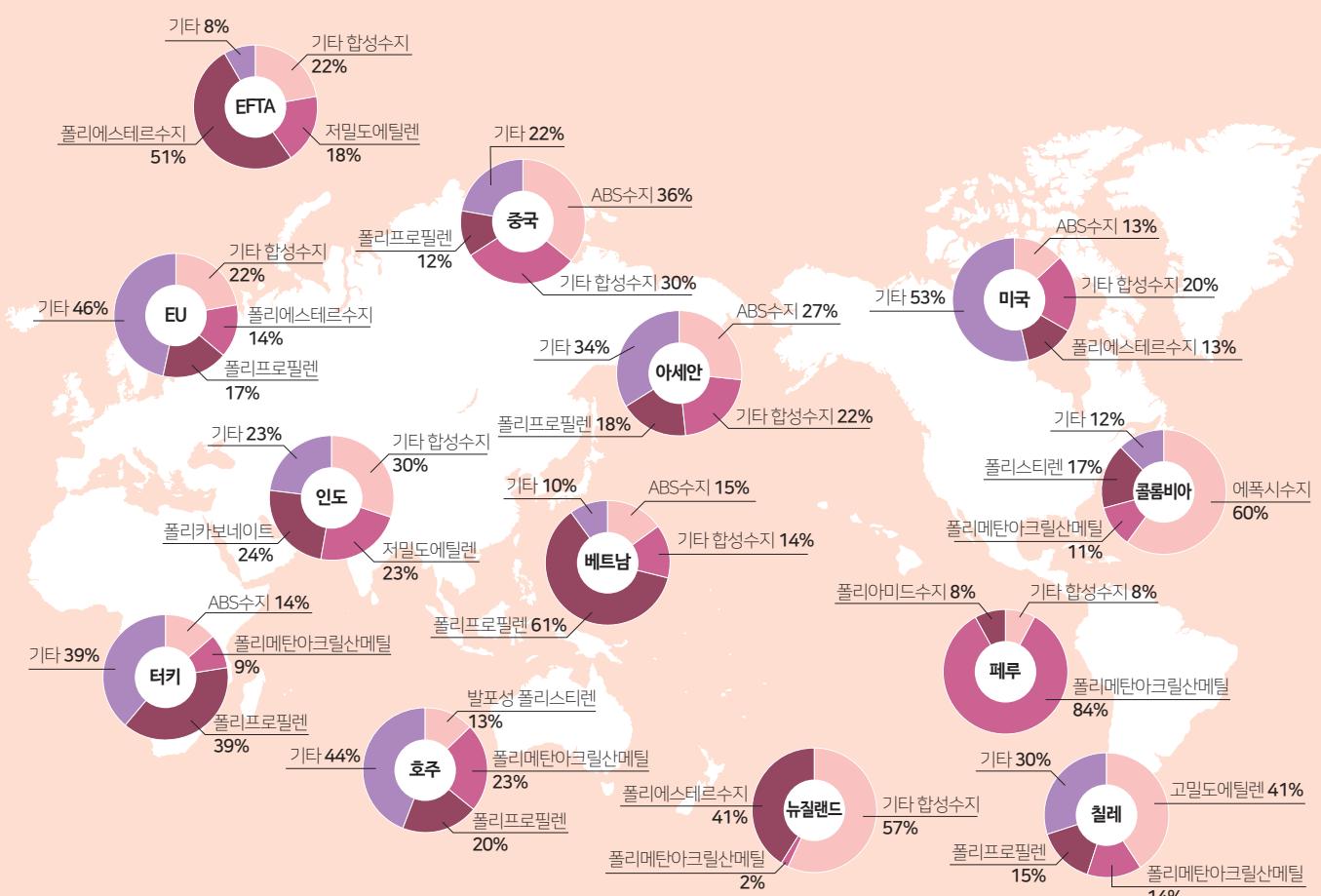
■ 특혜적용실적 상위품목(MTI 6단위)

[단위 : %]

순위	품명	비중
1	자동차부품	95.5
2	자동차용 내연기관	4.5

합성수지

수출



■ 특혜적용실적 상위품목(MTI 6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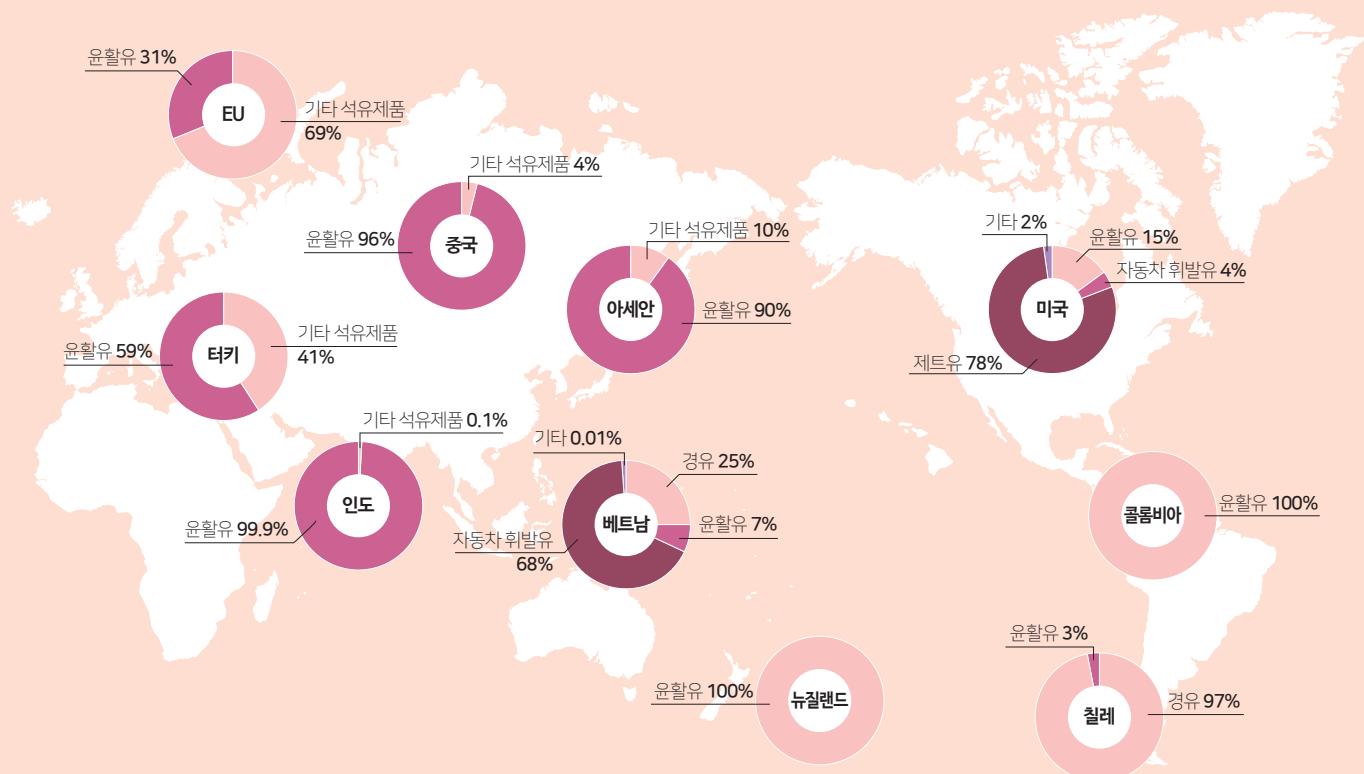
[단위 : %]

순위	품명	비중
1	기타합성수지	21
2	폴리프로필렌	20
3	ABS수지	18
4	폴리에스테르수지	11
5	폴리메탄아크릴산메틸	6
6	에폭시수지	5
7	저밀도에틸렌	4
8	폴리카보네이트	4

순위	품명	비중
9	폴리스티렌	3
10	고밀도에틸렌	3
11	아세탈수지	2
12	폴리아미드수지	1
13	발포성 폴리스티렌	1
14	염화비닐수지	1
15	실리콘수지	1

석유제품

수출



■ 특혜적용실적 상위품목(MTI 6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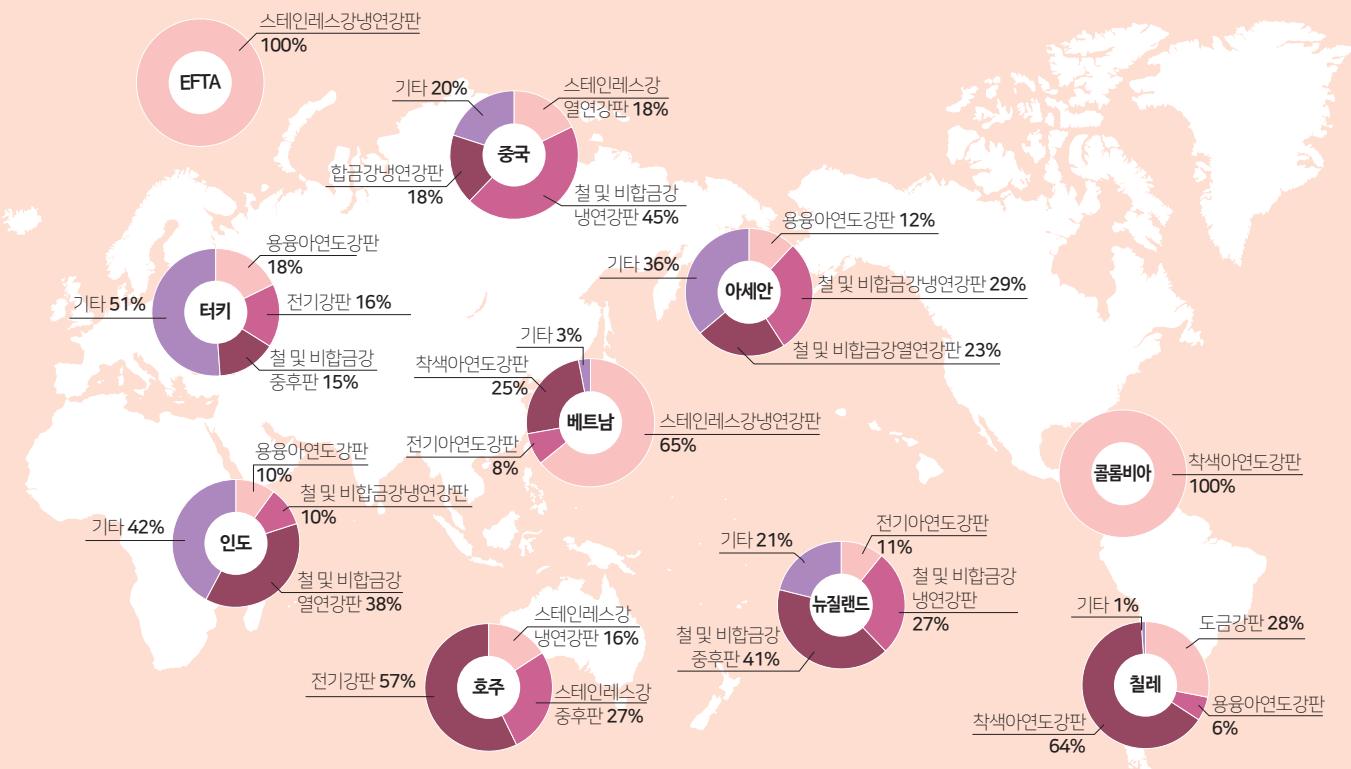
[단위 : %]

순위	품명	비중
1	제트유	42.2
2	윤활유	32.0
3	자동차 휘발유	17.3

순위	품명	비중
4	경유	7.4
5	기타 석유제품	1.1
6	기타 중유	0.00003

철강판

수출



■ 특혜적용실적 상위품목(MTI 6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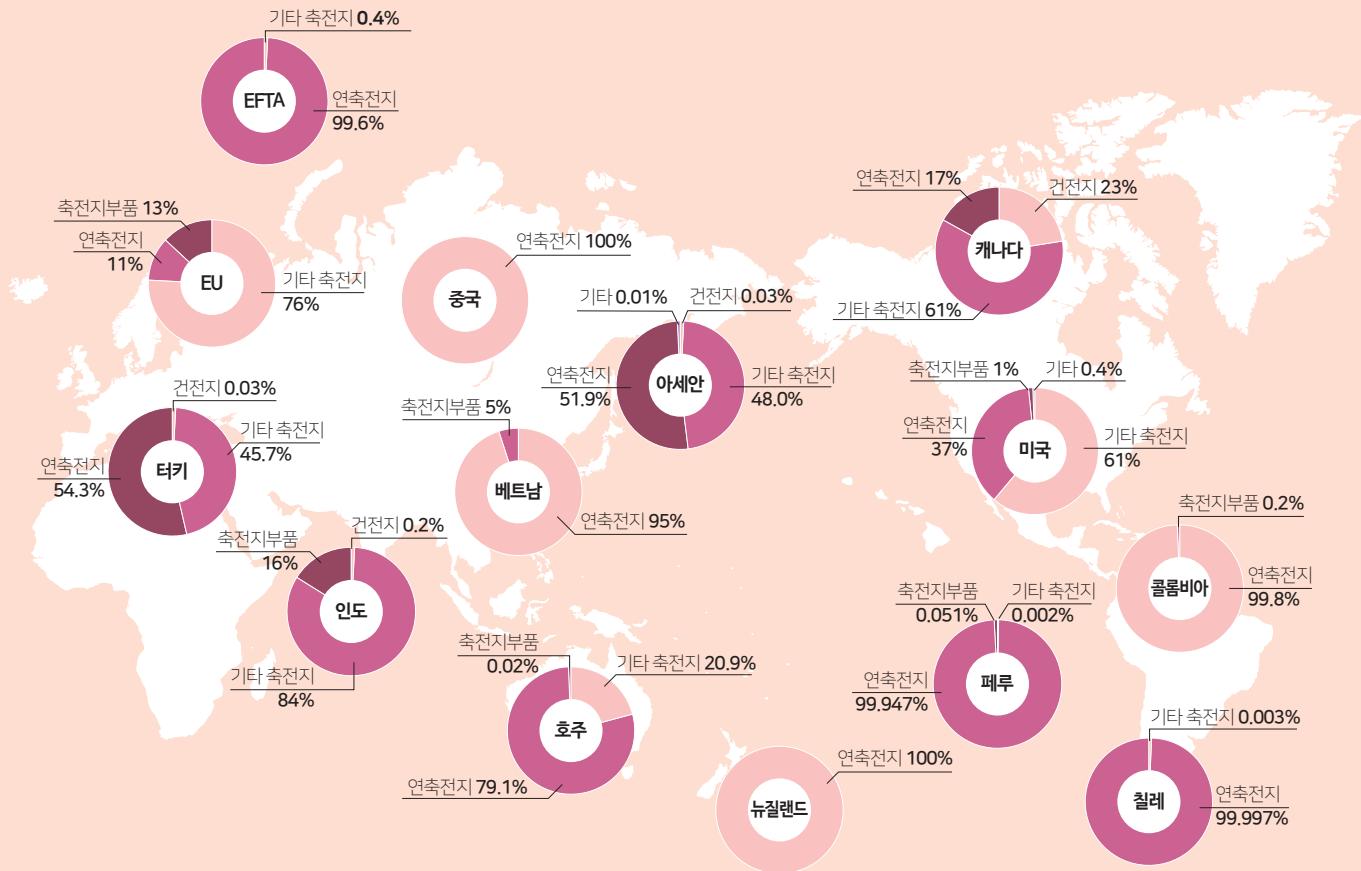
[단위 : %]

순위	품명	비중
1	철 및 비합금강열연강판	24.7
2	철 및 비합금강냉연강판	21.4
3	용융아연도강판	10.5
4	스테인레스강냉연강판	6.9
5	착색아연도강판	6.8
6	합금강냉연강판	5.8
7	전기강판	4.9

순위	품명	비중
8	철 및 비합금강중후판	4.7
9	합금강열연강판	4.1
10	스테인레스강열연강판	3.5
11	도금강판	3.0
12	전기아연도강판	2.0
13	석도강판	1.8
14	스테인레스강중후판	0.01

건전지 및 축전지

수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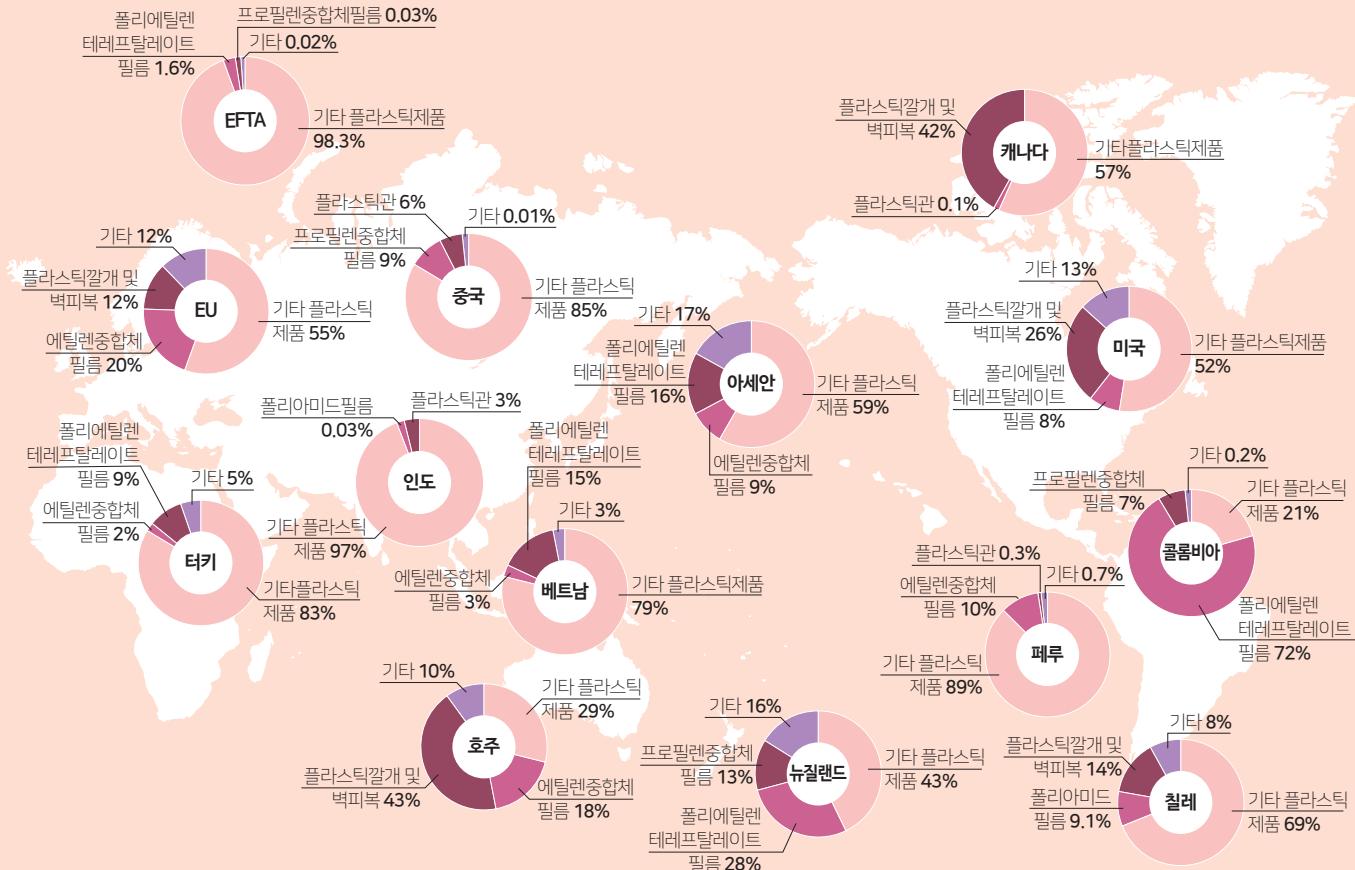
■ 특혜적용실적 상위품목(MTI 6단위)

[단위 : %]

순위	품명	비중
1	기타 축전지	68.1
2	연축전지	22.4
3	축전지부품	9.2
4	건전지	0.3

플라스틱 제품

수출



■ 특혜적용실적 상위품목(MTI 6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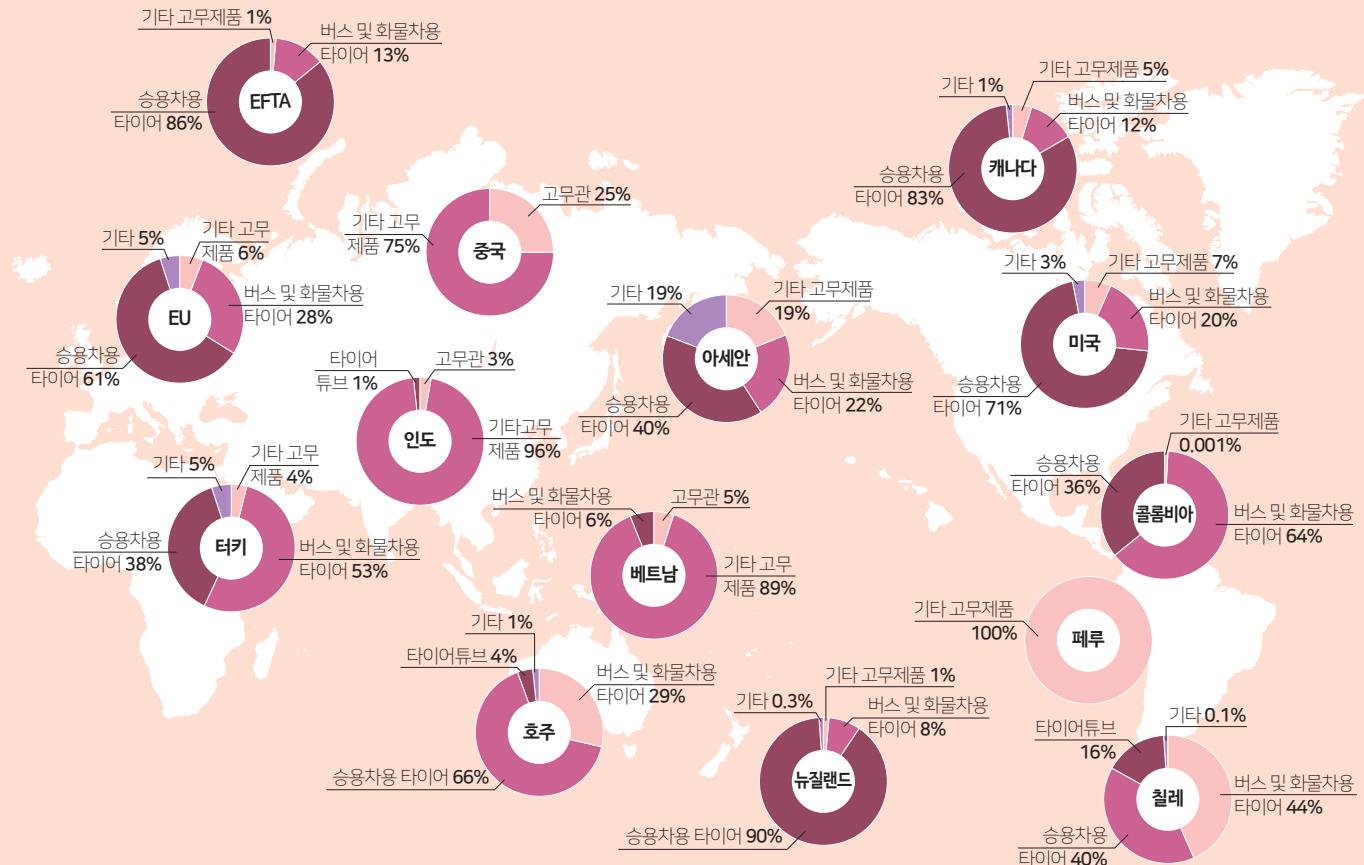
[단위 : %]

순위	품명	비중
1	기타 플라스틱제품	62.7
2	플라스틱깔개 및 벽피복	13.9
3	에틸렌중합체필름	9.6
4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필름	6.3

순위	품명	비중
5	프로필렌중합체필름	4.9
6	플라스틱관	1.8
7	폴리아미드필름	0.8

고무제품

수출



■ 특혜적용실적 상위품목(MTI 6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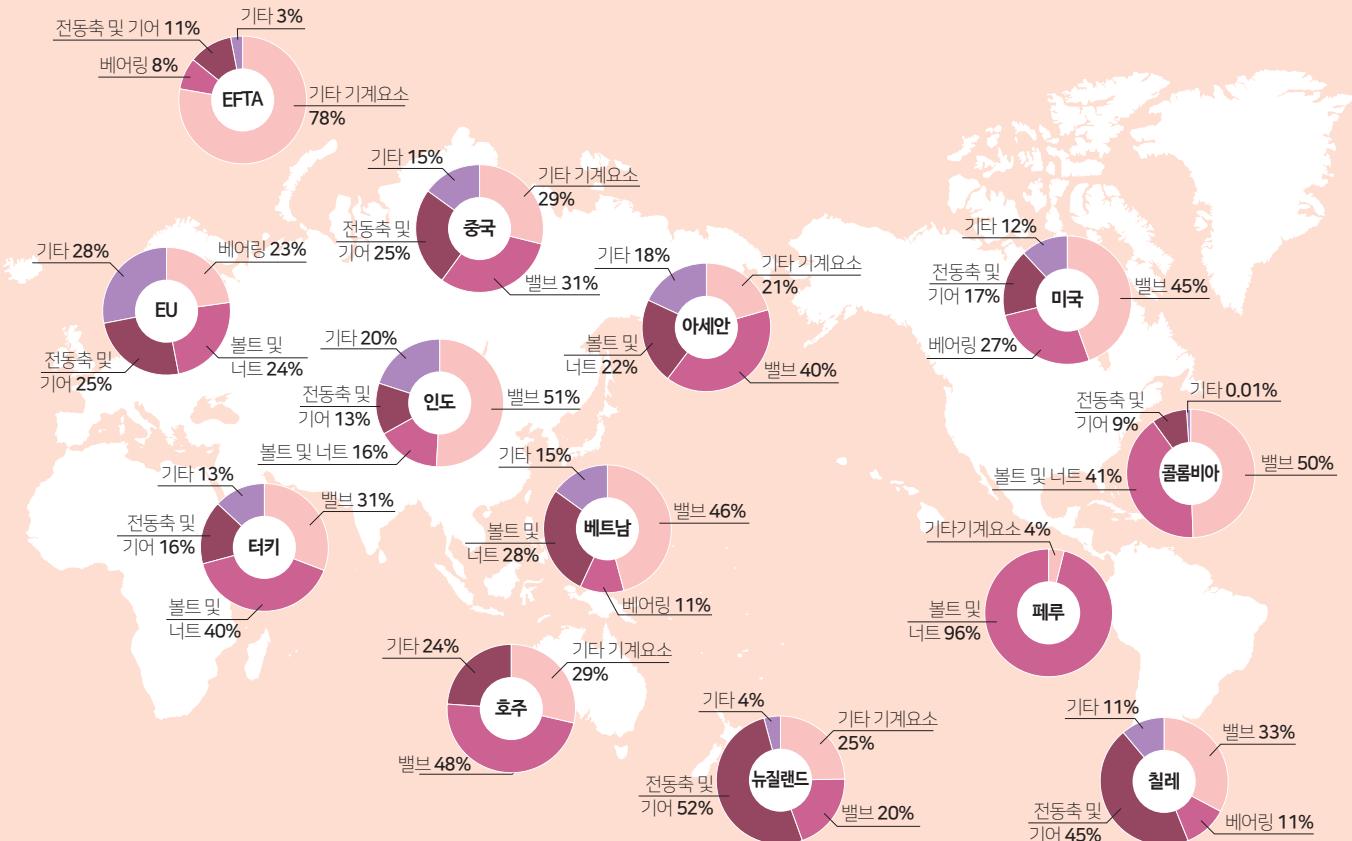
[단위 : %]

순위	품명	비중
1	승용차용 타이어	64
2	버스 및 화물차용 타이어	23
3	기타 고무제품	9

순위	품명	비중
4	고무관	3
5	타이어튜브	1

기계요소

수출



■ 특혜적용실적 상위품목(MTI 6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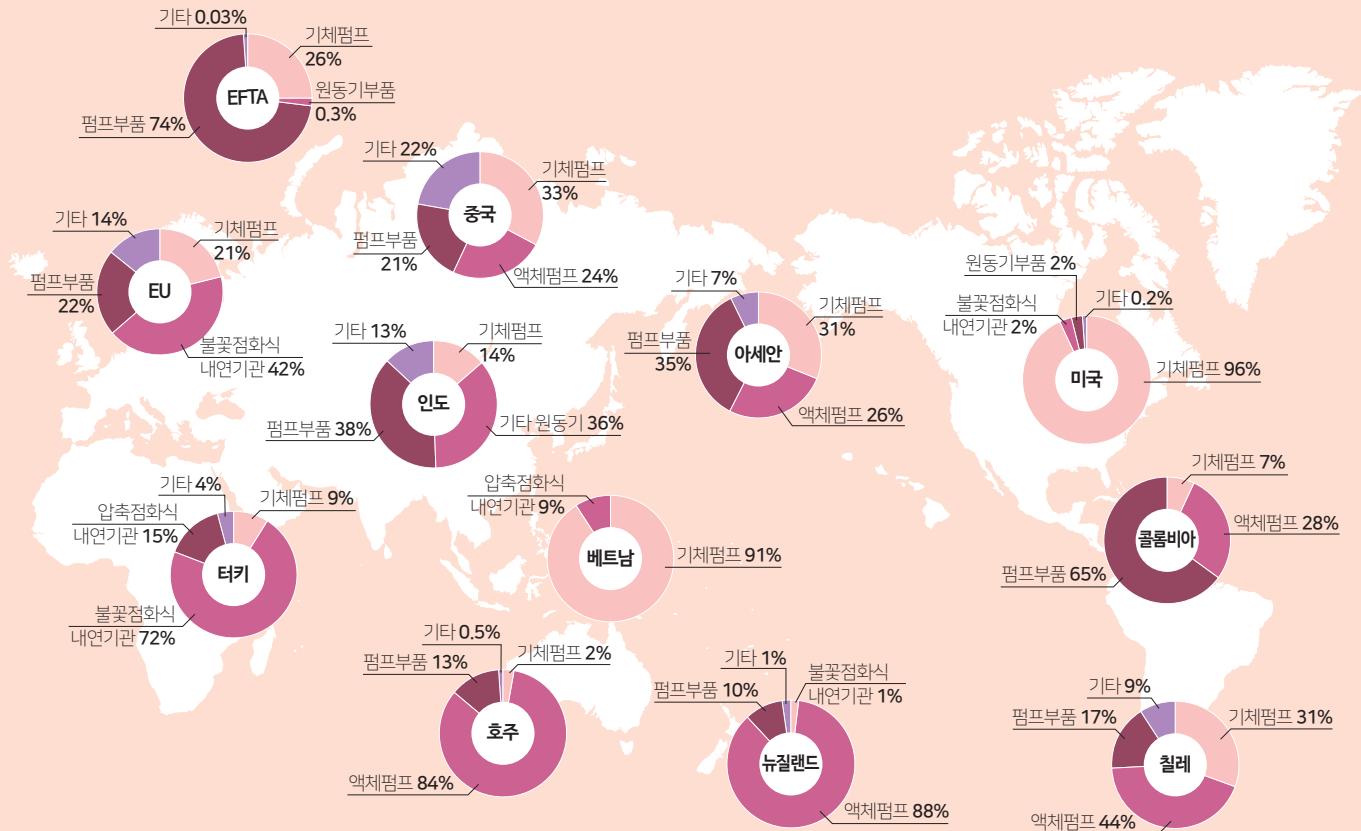
순위	품명	비중
1	밸브	32.5
2	전동축 및 기어	20.7
3	베어링	19.5

[단위 : %]

순위	품명	비중
4	기타 기계요소	16.9
5	볼트 및 너트	10.0
6	스프링	0.3

원동기 및 펌프

수출



■ 특혜적용실적 상위품목(MTI 6단위)

순위	품명	비중
1	불꽃점화식내연기관	30
2	기체펌프	25
3	펌프부품	21
4	액체펌프	10

순위	품명	비중
5	압축점화식내연기관	7
6	기타 원동기	6
7	원동기부품	2



MTI 3단위 기준 수입적용실적 10대품목²⁾

자동차

수입 7%

정밀화학원료

수입 6%

의류

수입 5%

천연가스

수입 5%

육류

수입 4%

원유

수입 4%

신변잡화

수입 3%

농약 및 의약품

수입 2%

알루미늄

수입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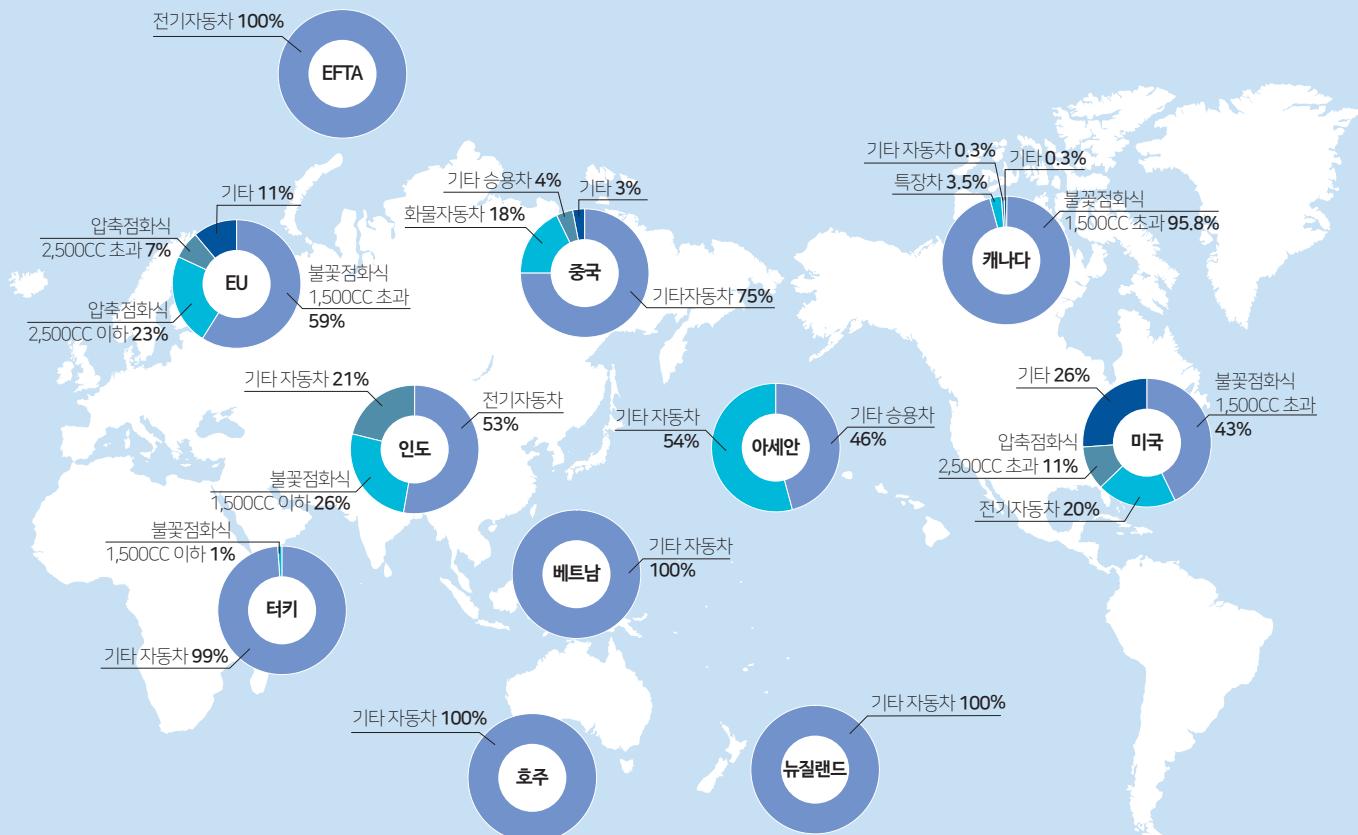
합성수지

수입 2%

2) FTA 지도의 품목은 MTI 3단위 상위 10대품목을 선정한 후 해당품목에서 MTI 6단위 상위 품목을 협정별로 추출하였음.(수입)

자동차

수입



■ 특혜적용실적 상위품목(MTI 6단위)

순위	품명	비중
1	불꽃점화식 1,500CC 초과	55.9
2	압축점화식 2,500CC 이하	20.1
3	압축점화식 2,500CC 초과	7.7
4	전기자동차	3.7
5	화물자동차	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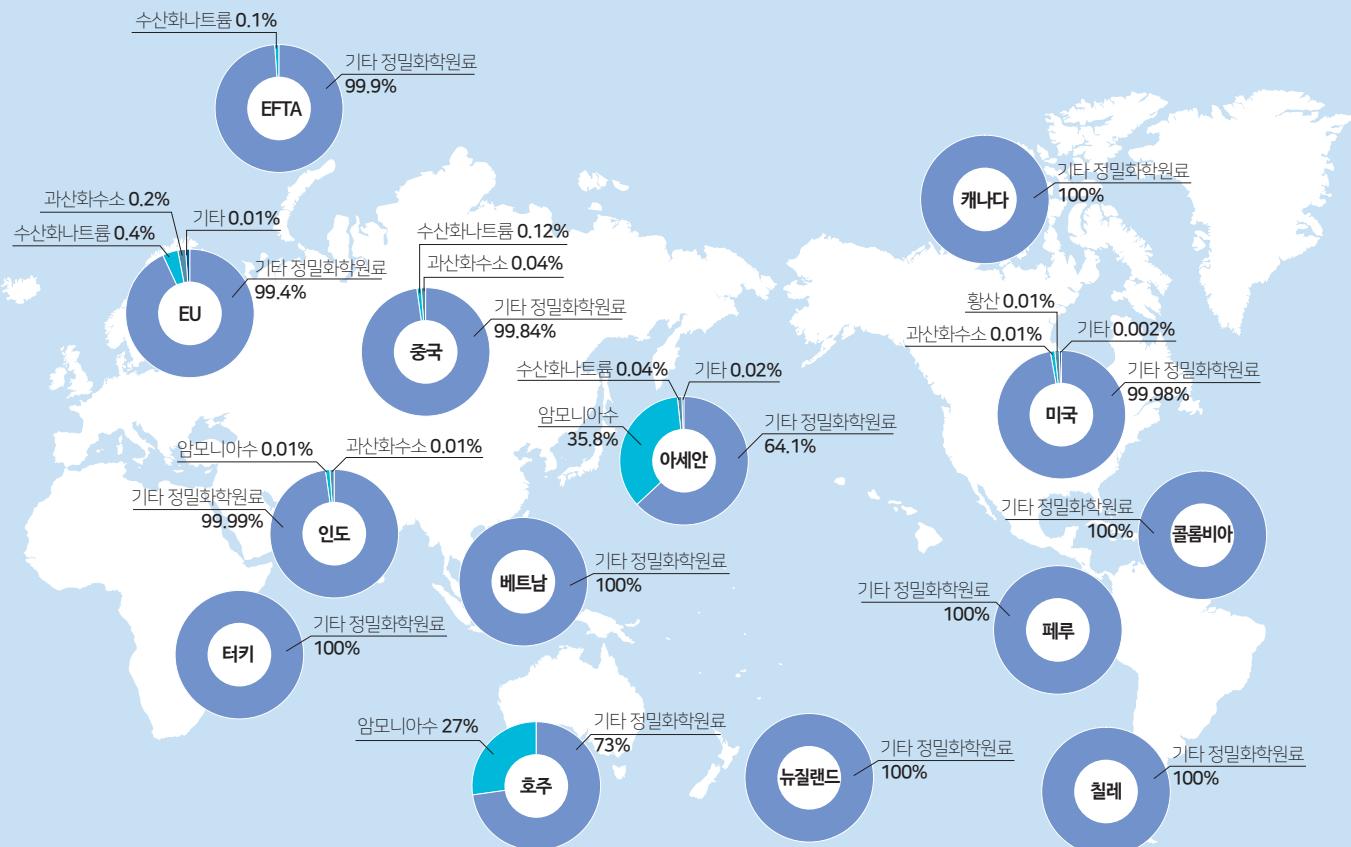
순위	품명	비중
6	기타자동차	2.9
7	기타승용차	2.9
8	불꽃점화식 1,500CC 이하	2.4
9	특장차	0.8

* 불꽃점화식 : 가솔린, LPG 차량

** 압축점화식 : 디젤 차량

정밀화학원료

수입



■ 특혜적용실적 상위품목(MTI 6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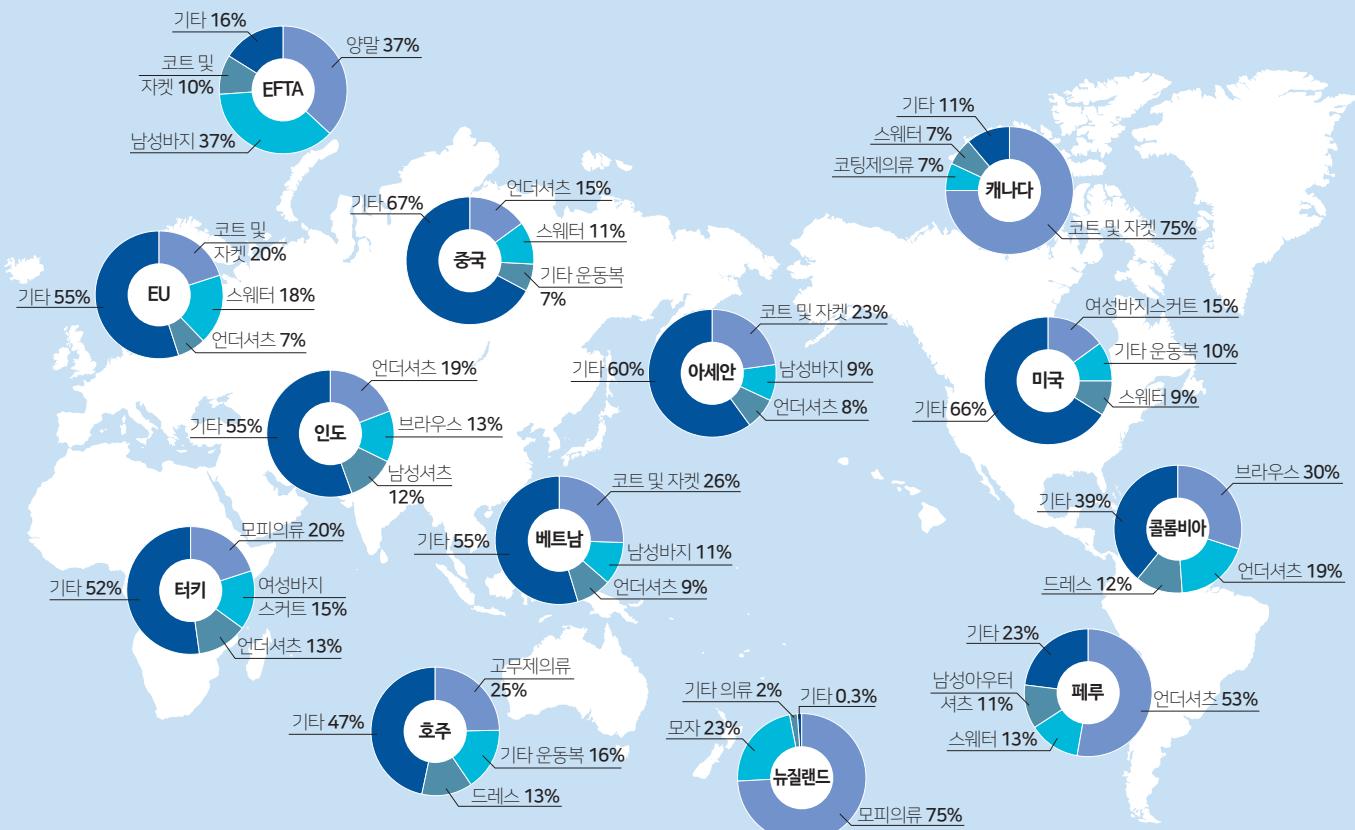
순위	품명	비중
1	기타 정밀화학원료	97.9
2	암모니아수	2.0
3	수산화나트륨	0.1

순위	품명	비중
4	과산화수소	0.1
5	황산	0.002

[단위 : %]

의류

수입



■ 특혜적용실적 상위품목(MTI 6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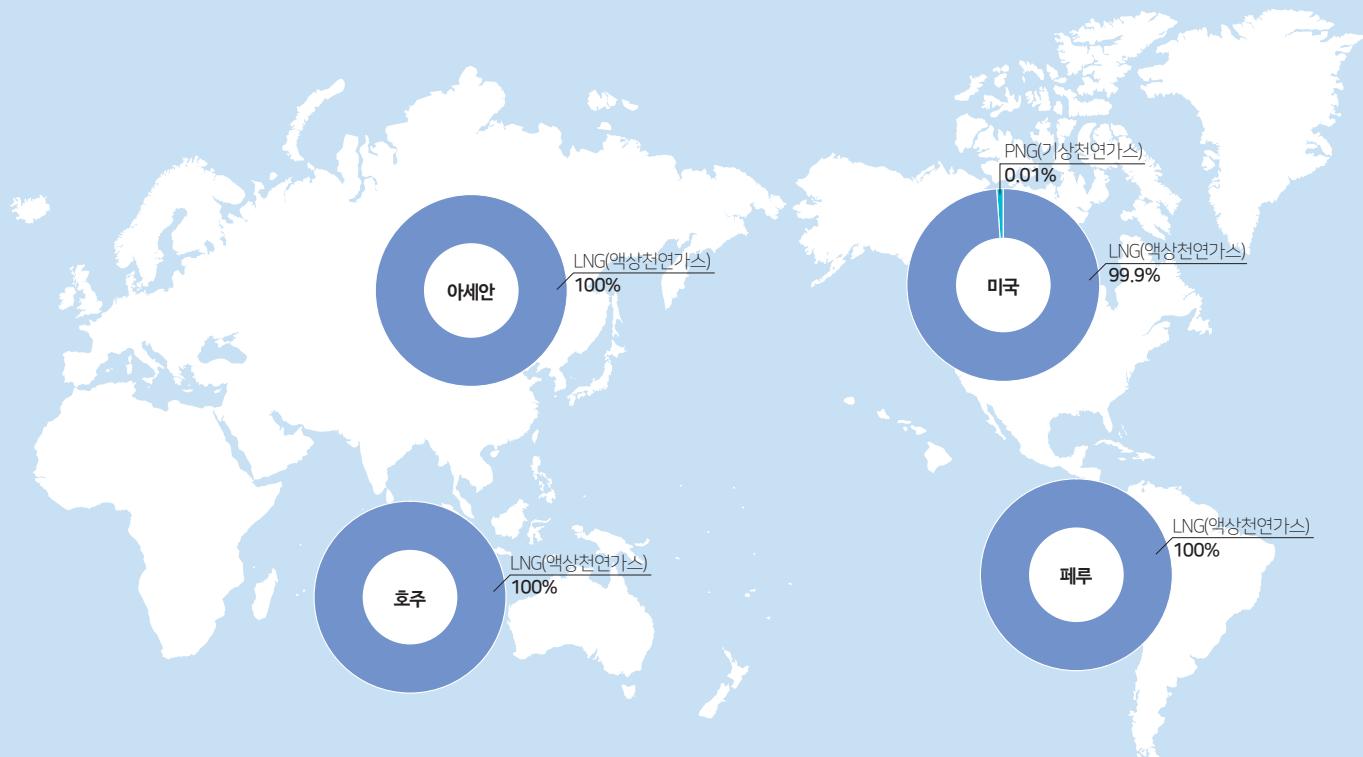
순위	품명	비중
1	코트 및 자켓	20
2	언더셔츠	10
3	스웨터	8
4	남성바지	7
5	기타 운동복	7
6	바지스커트	5

[단위 : %]

순위	품명	비중
7	여성바지스커트	4
8	코팅제의류	3
9	화운데이션	3
10	팬티	3
11	기타	30

천연가스

수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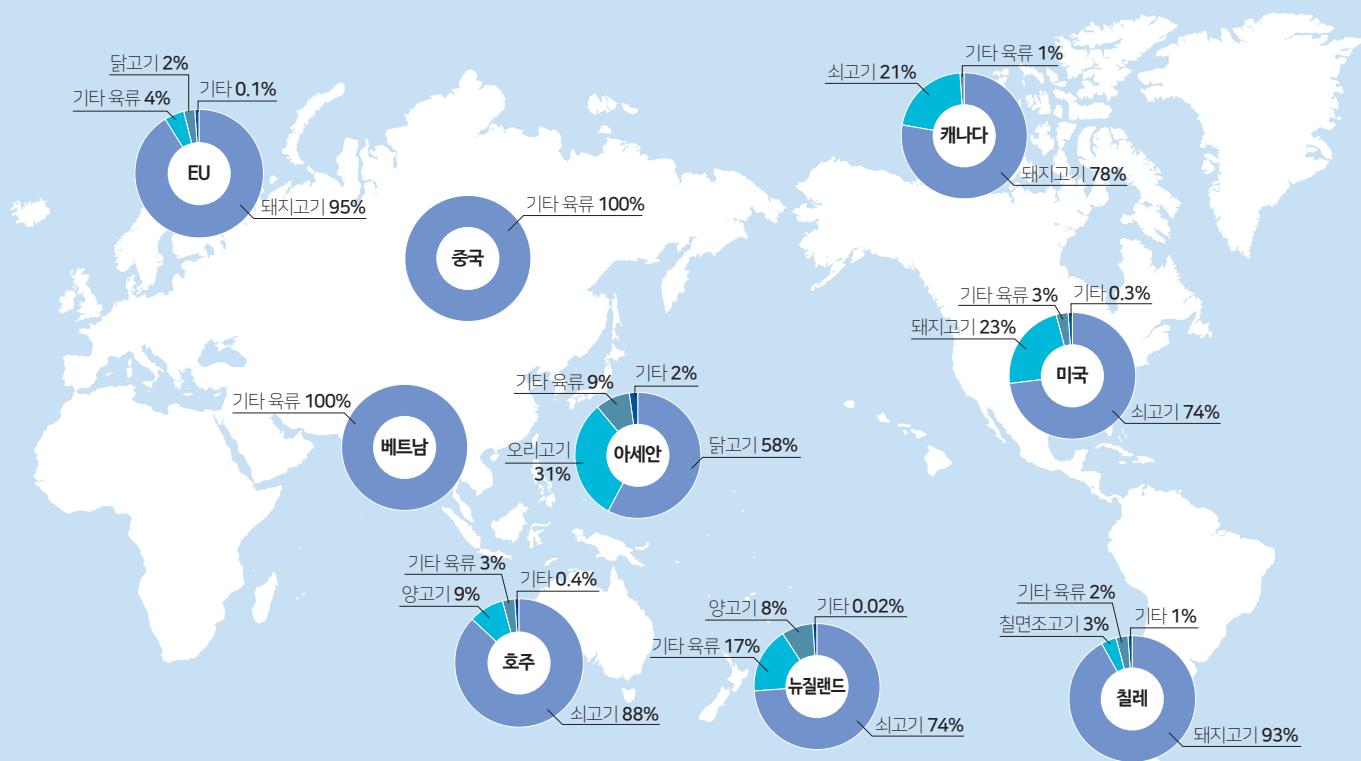
■ 특혜적용실적 상위품목(MTI 6단위)

[단위 : %]

순위	품명	비중
1	LNG(액상천연가스)	99.998
2	PNG(기상천연가스)	0.002

육류

수입



■ 특혜적용실적 상위품목(MTI 6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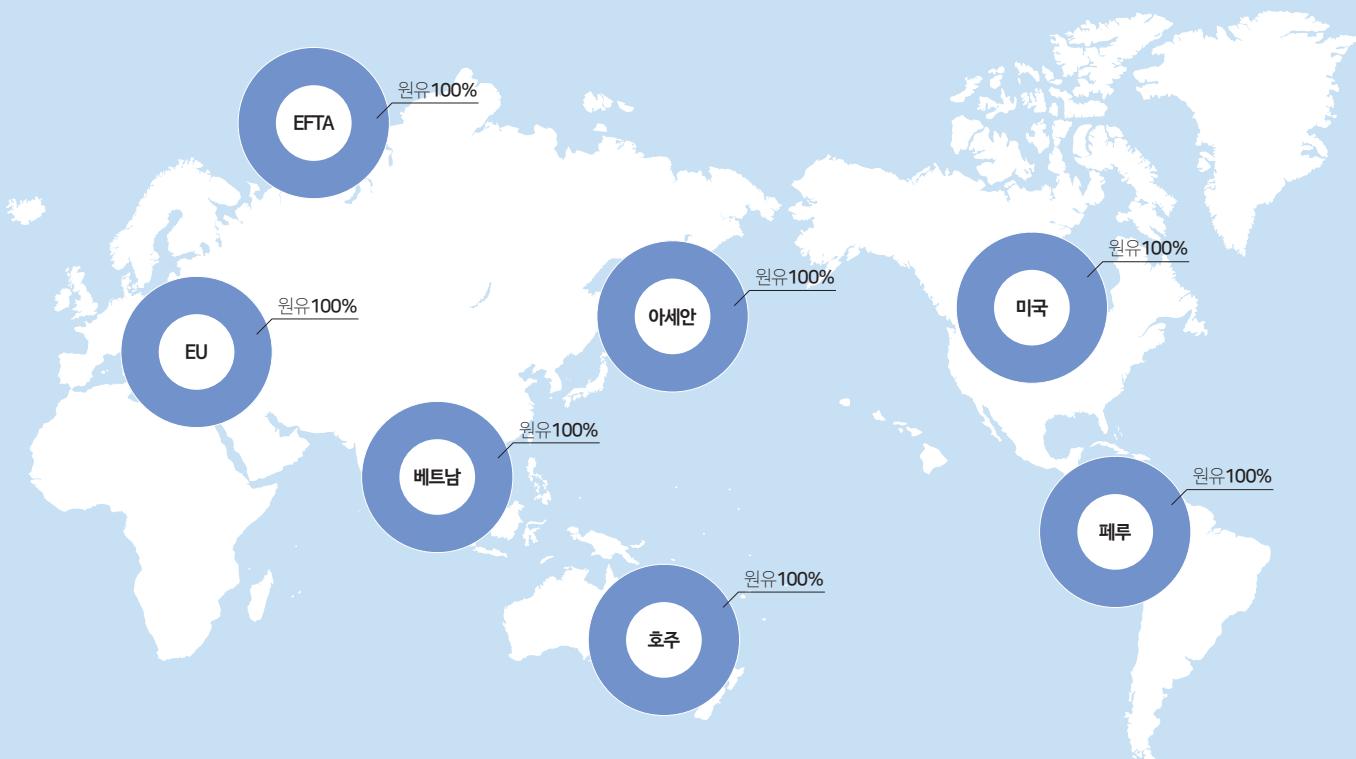
순위	품명	비중
1	쇠고기	60.8
2	돼지고기	32.7
3	기타 육류	3.1
4	양고기	2.6
5	닭고기	0.5

[단위 : %]

순위	품명	비중
6	침면조고기	0.1
7	오리고기	0.02
8	기타 가축육류	0.01
9	기타 가금육류	0.0005

원유

수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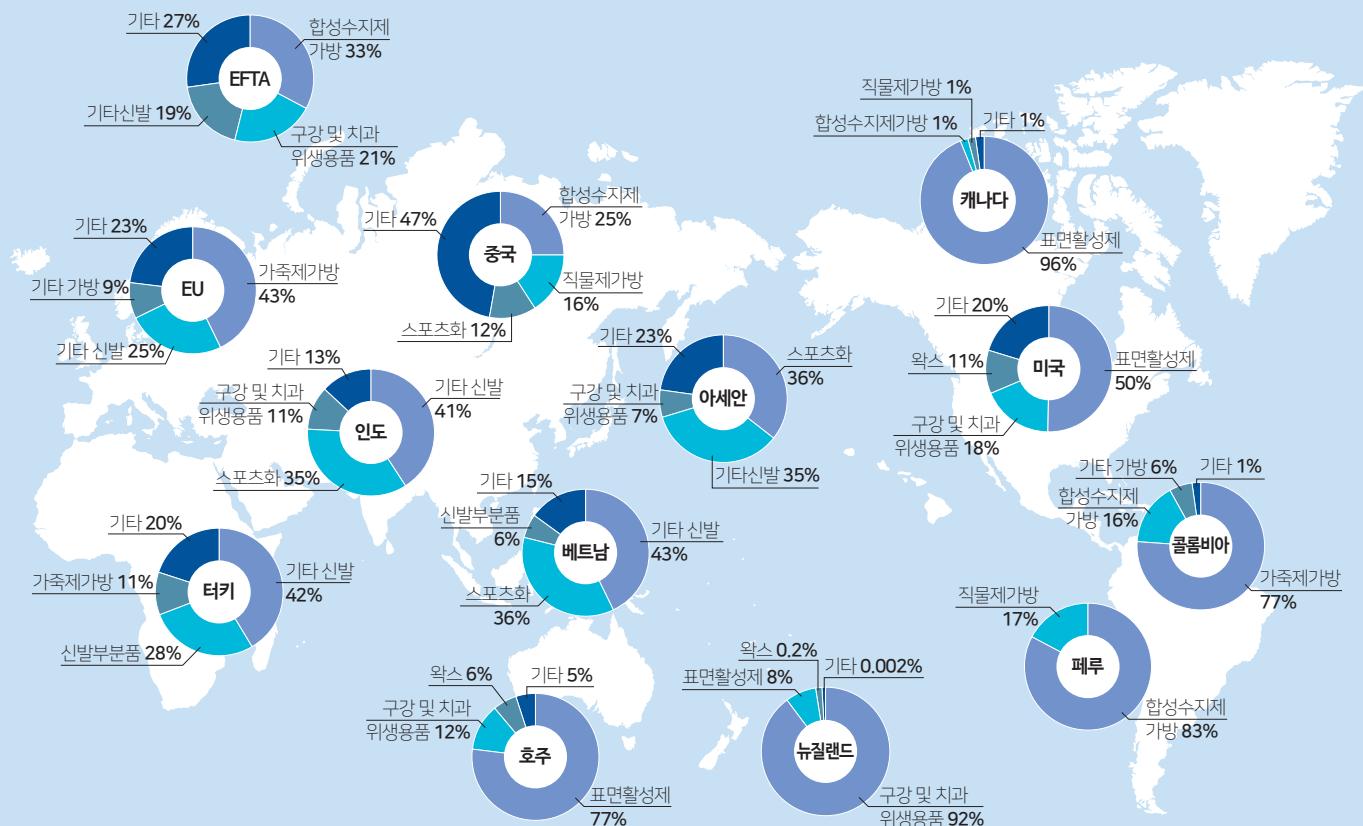
■ 특혜적용실적 상위품목(MTI 6단위)

[단위 : %]

순위	품명	비중
1	원유	100

신변잡화

수입



■ 특혜적용실적 상위품목(MTI 6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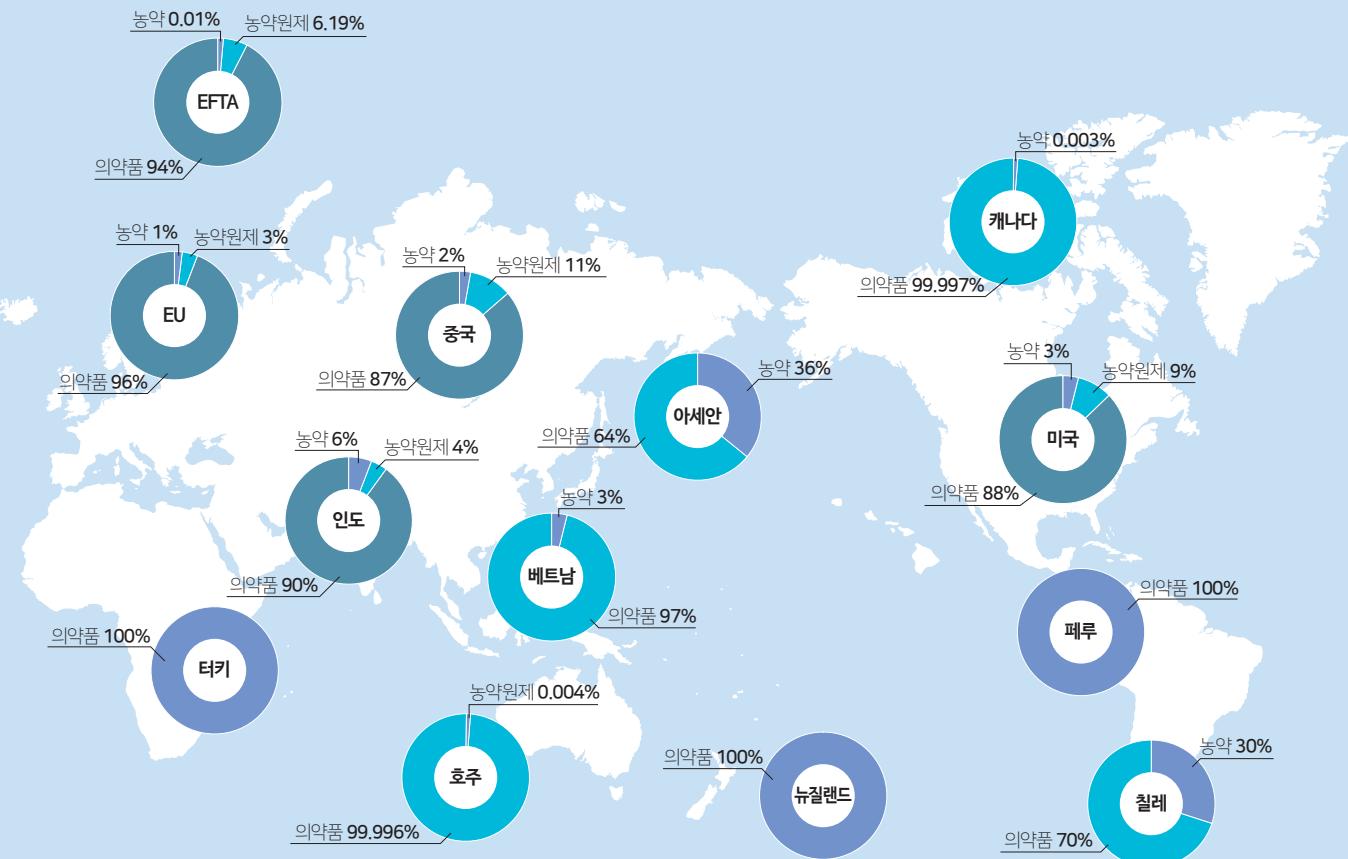
순위	품명	비중
1	기타 신발	25.8
2	스포츠화	16.9
3	가죽제가방	15.2
4	합성수지제가방	8.1
5	직물제가방	8.1
6	표면활성제	5.6
7	구강 및 치과 위생용품	3.9
8	기타가방	3.6
9	신발부분품	2.8
10	우산	2.4
11	왁스	1.3
12	면도용품	1.3

[단위 : %]

순위	품명	비중
13	화장용품	1.0
14	벨트	1.0
15	구두	0.7
16	광택제 등	0.5
17	라이터	0.5
18	등산화	0.5
19	장신구	0.3
20	빗자루	0.2
21	기타 휴대용품	0.1
22	화장지 등	0.1
23	스키부츠	0.1
24	양산	0.04

농약 및 의약품

수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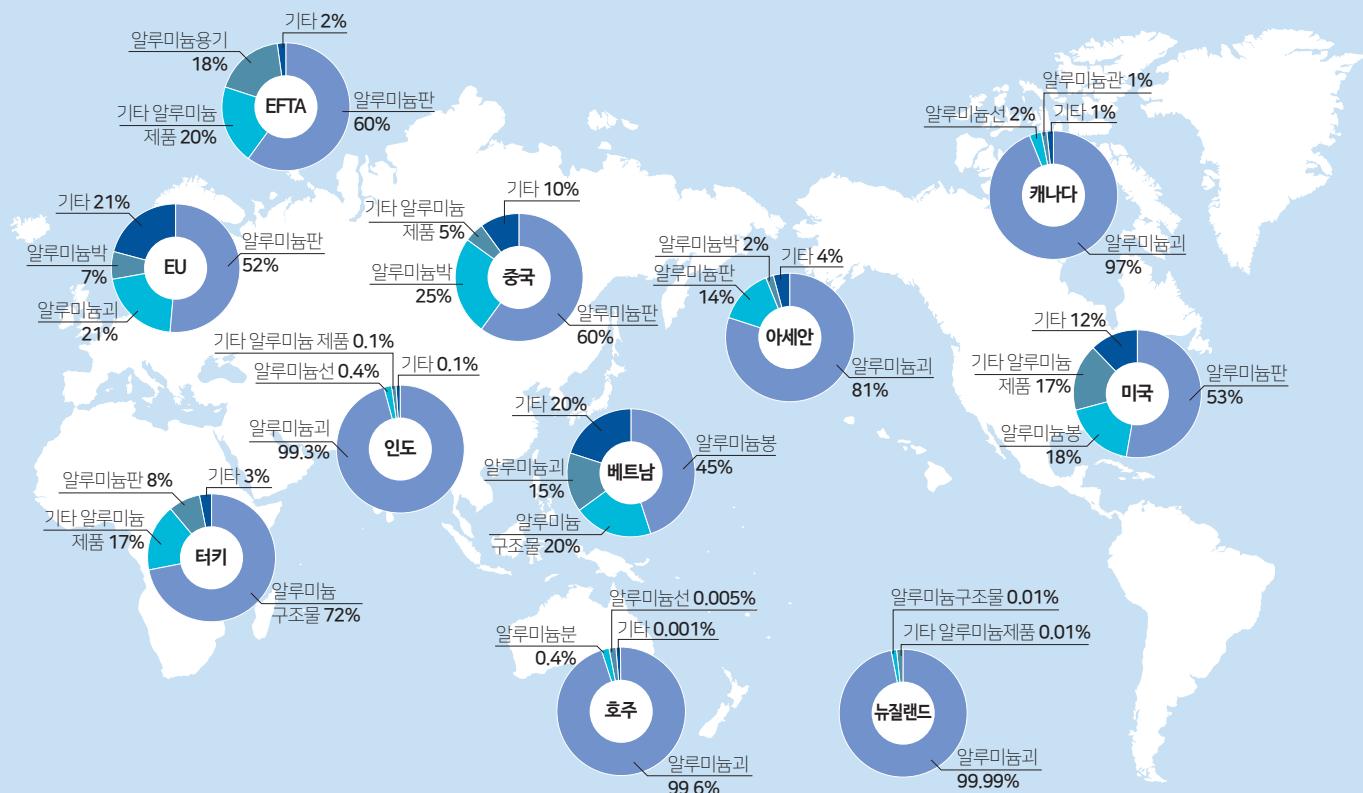
■ 특혜적용실적 상위품목(MTI 6단위)

[단위 : %]

순위	품명	비중
1	의약품	93.4
2	농약원제	5.0
3	농약	1.6

알루미늄

수입



■ 특혜적용실적 상위품목(MTI 6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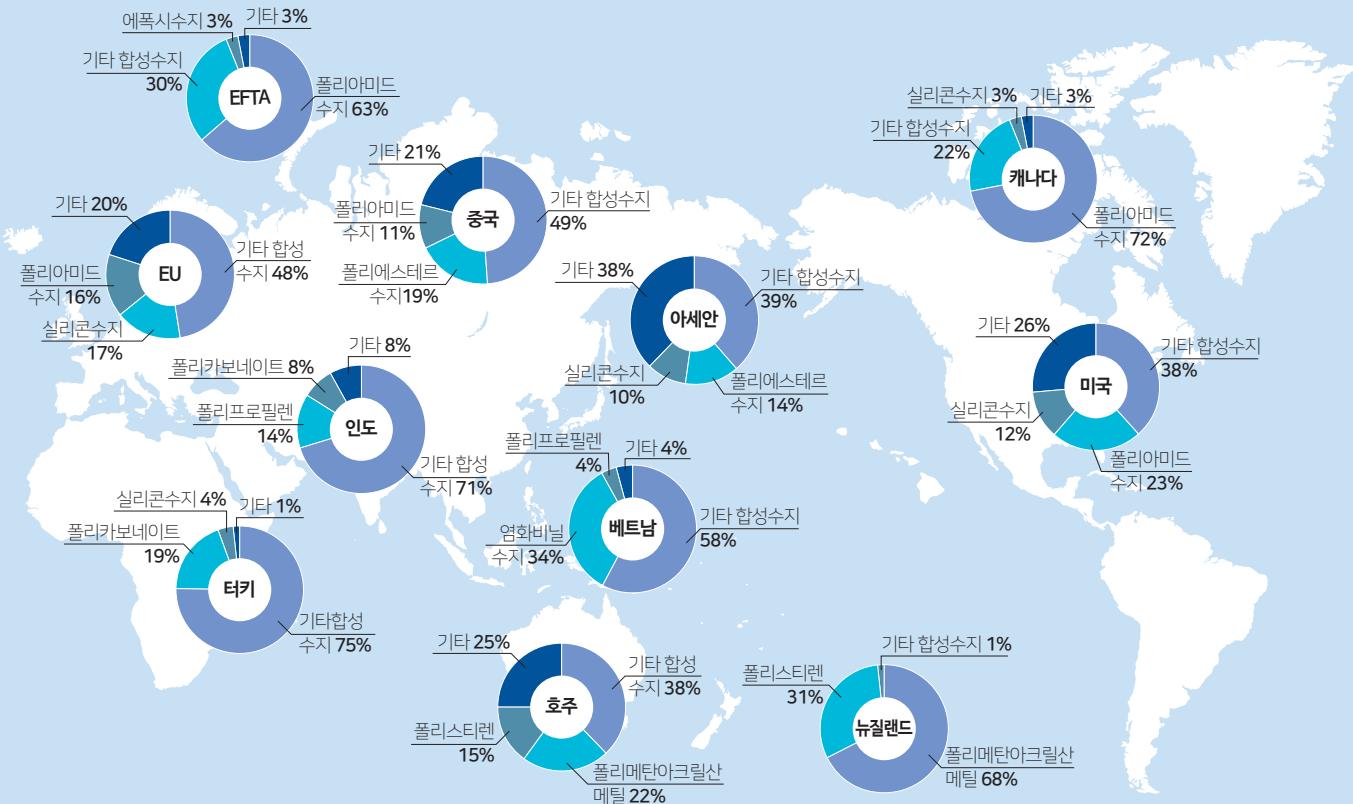
순위	품명	비중
1	알루미늄괴	55.2
2	알루미늄판	25.6
3	알루미늄박	7.7
4	알루미늄봉	3.6
5	기타알루미늄제품	3.2
6	알루미늄구조물	1.4
7	알루미늄용기	1.1

[단위 : %]

순위	품명	비중
8	알루미늄선	0.8
9	알루미늄관	0.6
10	알루미늄분	0.4
11	알루미늄관연결구류	0.3
12	알루미늄케이블	0.1
13	알루미늄스크랩	0.002

합성수지

수입



■ 특허적용실적 상위품목(MTI 6단위)

[단위 : %]

순위	품명	비중
1	기타합성수지	44.0
2	폴리아미드수지	16.1
3	실리콘수지	11.3
4	폴리에스테르수지	7.6
5	폴리메탄아크릴산메틸	3.8
6	폴리카보네이트	3.8
7	염화비닐수지	3.5
8	폴리프로필렌	2.0

순위	품명	비중
9	에폭시수지	1.9
10	발포성 폴리스티렌	1.3
11	고밀도에틸렌	1.1
12	아세탈수지	1.0
13	폴리페닐렌옥사이드	0.8
14	저밀도에틸렌	0.7
15	폴리스티렌	0.7
16	ABS수지	0.3

FTA TRADE REPORT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활용

FTA 원산지상품의 관세품목분류 : 수산물

**김용태 | 관세법인 탑스(대산지사) 관세사/컨설팅 & 연구본부장,
법학박사**



김용태

- 관세법인 탑스(대산지사) 관세사
- 컨설팅 & 연구본부장
- 법학박사

FTA 원산지상품의 관세품목분류 : 수산물

수산물이란

상품으로서의 부가가치가 있는

수산동·식물을 말한다.

대상이 되는 주된 수산자원은

어류, 연체류, 갑각류, 극피류, 해초류 등의

천연 및 양식 자원물이다.

수산물이란 상품으로서의 부가가치가 있는 수산동·식물을 말한다. 대상이 되는 주된 수산자원은 어류, 연체류, 갑각류, 극피류, 해초류 등의 천연 및 양식 자원물이다.

수산물은 관세율표상 제1부 ‘살아 있는 동물과 동물성 생산품’의 분류체계에 속하는 제03류(세번 제0301호부터 세번 제0308호 까지)에서 분류된다. 제03류의 분류조건은 원칙적으로 물속에서 서식되거나 양식되는 무척추동물로 제한된다. 또한 제03류에 분류될 수 있는 상품의 전제조건은 식용에 적합한 생산품이어야 한다. 그런 까닭에 비록 물에서 살고 있지만 척추동물의 한 강(綱)을 이루는 동물군(動物群)에 속하는 포유동물(mammal)과 그 육은 제03류의 분류범위에서 제외된다(류주1.가·나). 이것은 포유동물과 그 육이 제03류의 분류 조건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를 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즉, 관세율표상 세번 제0106호의 용어에서 고래·돌고래류(고래목의 포유동물), 바다소(바다소목의 포유동물), 물개·바다사자·바다코끼리(기각아목의 포유동물) 등이 특정·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고,

이러한 포유동물의 육은 관세율표상 제0208호 또는 제0210호에 분류하는 것이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의 적용 원칙에 부합되기 때문이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은 연유에서 죽은 것으로서 그 종류와 상태로 보아 식용에 적합 하지 아니한 어류(간과 어란을 포함한다)·갑각류·연체동물 또는 기타 수생무척추 동물도 제03류의 분류범위에서 배제되고 제05류의 분류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식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어류·갑각류·연체동물 또는 기타 수생무척추동물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 또는 펠릿(pellets)도 관세율 표상 제2301호의 용어에서 특정·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으므로 제03류의 분류범위에서 배제된다(류주1.다). 아울러 관세율표상 제1604호의 용어에서 특정·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 캐비아(caviar)¹⁾ 또는 어란으로 조제한 캐비아 대용물도 제03류의 분류범위에 포함될 수 없다(류주1.다).

한편, 제03류에서 “펠릿”(pellets)의 적용 범위는 직접 압축하거나 소량의 점결제를 첨가하여 응결시킨 생산품이 해당된다

1) 캐비어는 러시아, 유럽, 이란, 흑해, 카스피해 등에 분포하는 철갑상어알로 상어를 잡자마자 알을 꺼내 알 가장자리의 막을 제거하고 소금에 절여 냉동하거나 병조림한 것을 말한다. ▷ 철갑상어 이외에 연어·대구·잉어 등의 생선알을 이용하여 같은 방법으로 미국·독일·이탈리아 등지에서 만든 대용품도 캐비아라 하는 경우가 있다.

(류주2). 그리고 제03류의 어류·갑각류·연체동물과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은 밀폐용기에 든 것이라도 제03류에 분류되므로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예: 훈제연어 통조림)²⁾.

관세율표 제03류(어류·갑각류·연체동물과 그 밖의 수생 무척추동물)에서 수산물이 분류되는 해당 품목번호는 아래의 표와 같다.

품목번호	품명 (Description)	분류조건·범위
0301	활어	
0302	신선하거나 냉장한 어류	제0304호의 어류의 필레(fillet)와 그 밖의 어육은 제외한다.
0303	냉동어류	제0304호의 어류의 필레(fillet)와 기타 어육은 제외한다.
0304	어류의 피렛과 그 밖의 어육	잘게 썰었는지에 상관없으며 신선한 것, 냉장·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0305	건조한 어류, 염장이나 염수장한 어류	
	훈제한 어류	훈제과정 중이나 훈제 전에 조리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어류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와 펠릿(pellet)	식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0306	갑각류	껍데기가 붙어 있는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살아 있는 것과 신선한 것·냉장이나 냉동한 것·건조한 것·염장이나 염수장한 것, 훈제한 것(껍데기가 붙어 있는 것인지 또는 훈제 전이나 훈제과정 중에 조리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껍데기가 붙어 있는 상태로 물에 찌거나 삶은 것(냉장이나 냉동한 것·건조한 것·염장이나 염수장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갑각류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와 펠릿(pellet)(식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을 포함한다.
0307	연체동물	껍데기가 붙어 있는지에 상관없으며 살아 있는 것과 신선한 것·냉장이나 냉동한 것·건조한 것·염장이나 염수장한 것, 훈제한 것(껍데기가 붙어 있는 것인지 또는 훈제 전이나 훈제과정 중에 조리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연체동물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와 펠릿(pellet)(식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을 포함한다.

2) 하지만 밀폐용기에 든 것들의 대부분의 경우는 제03류의 각 호(세번)에 규정한 이외의 방법으로 조제되었거나 저장된 것이며 따라서 이들은 제16류로 분류한다.

1. 생선 제품

1. FTA 원산지상품의 인정요건

한-미 FTA에서 생선 제품이 원산지상품의 자격을 획득하려면 완전생산기준(WO)을 충족하지 못하는 한 그 상품은 제03류가 아닌 다른 류에 해당하는 비원산지 재료를 사용하여 한국이나 미국의 영역에서 생산되어야 한다. 즉, 원산지결정기준으로 이른바 CC기준인 품목번호 2단위 변경 기준이 적용된다. 따라서 비원산지 생물체를 배아로 이용하여 한국이나 미국의 영역에서 양식되지 아니한 생선 제품은 원산지상품의 자격을 획득할 수 없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비원산지 치어³⁾ 또는 유생으로부터 한국이나 미국의 영역에서 양식된 생선 제품은 원산지상품으로 간주된다.

한-아세안 FTA에서 생선 제품이 원산지 상품의 자격을 획득하려면 원칙적으로 그 제품은 한국이나 아세안 회원국의 수출 당사국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수출당사국이 아닌

아세안 회원국의 영역에서 양식되거나 어로된 활어를 원재료로 사용하여 수출 당사국의 영역에서 생산된 생선 제품은 원산지상품의 자격을 획득할 수 없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관세율표상 제0305.20호 (어류의 간장과 어란)이나 제0305.49호 (기타의 훈제한 어류, 피렛을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생선 제품은 수출당사국이 아닌 아세안 회원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된 것이라면 원산지상품의 자격이 부여될 수 있다. 또한 관세율표상 제0305.59호(기타의 건조한 어류)나 제0305.69호



3) 치어(Fry)란 마지막 유생단계(post-larval)로 아직 덜 자란 물고기를 말하며, 핑거링스(fingerlings), 파(parr), 스몰트(smolts) 및 엘버(elvers)를 포함한다.

(기타의 염장한 어류)에 해당하는 생선 제품은 역내가치포함(RVC) 비율이 그 상품의 FOB가격의 40%이상일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원산지상품의 자격이 획득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이나 아세안 회원국의 영역에서 생산된 생선 완제품이 FOB가격 기준으로 역내산 원재료를 사용한 가격의 비율(집적법으로 산출한 경우)이 100분의 40이상에 해당하거나 생산된 생선 완제품에서 비원산지 재료의 가격을 공제한 가격 비율(공제법으로 산출한 경우)이 100분의 40이상에 해당한다면 그 생선 제품은 원산지상품의 자격이 부여될 수 있다.

한-EFTA FTA에서 생선 제품이 원산지 상품의 자격을 획득하려면 그 제품에 사용된 제03류의 모든 원재료는 한국이나 EFTA 회원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어야 한다. 따라서 완전생산기준(WO)을 충족하지 못하는 한 생선 제품은 원산지 상품의 자격을 획득할 수 없다.

그런데 생선은 주로 육지의 강이 아닌 바다에서 어로되거나 포획되기 때문에 FTA 체약상 대국의 영역이 아닌 해양에서 어로되거나 포획된 수산물이 원산지상품으로 둔갑될 가능성이 상존하게 된다. 이에 따라 각 FTA 원산지규정은 영역(영해) 밖

바다 어획물 및 그 생산품과 이들의 가공품에 대한 원산지상품의 판정에서 어로선박의 FTA체약당사국 인정요건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하여 FTA체약당사국의 영역(영해) 밖의 바다에서 선박으로 잡은 어획물은 그 선박이 FTA체약당사국에 등록되고, 조업 당시에 FTA체약당사국 국기를 게양하고 있어야 완전생산품으로 인정될 수 있다. 이것은 FTA 체약당사국의 영역 밖, 즉 협정상 “무국적 영역”에서 획득되거나 생산된 상품에 대한 원산지판정에서 그러한 상품은 어느 국적인(人)의 노동 및 자본투입의 결과이며, 따라서 이러한 투입을 행한 국가의 경제에 그 결과를 귀속하여야 한다는 관념이 결정적이기 때문이다.

한-EU FTA와 한-터키 FTA는 선박이 FTA체약당사국에 등록되고 조업 당시 FTA체약당사국 국기를 게양하는 것과 더불어 선박의 소유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양 FTA체약당사국 중 하나의 국민에 의해 적어도 50퍼센트가 소유되거나, 또는 그 본점과 주영업소가 양 FTA체약당사국 중 하나에 있고 양 FTA체약당사국의 하나의 공공기관 또는 양 FTA체약당사국 중 하나의 국민에 의해 적어도 50퍼센트를 소유하고 있는 회사의 선박 및 가공선박으로 그 자격요건을 제한하고 있다.

반면에 한-EFTA FTA는 등록요건 없이 국기게양의 조건만 있어 매우 단순하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FTA체약당사국에 등록하지 않은 선박, 즉 외국에 등록된 선박을 임차하여 FTA체약당사국 국기를

달고 획득하면 완전생산 원산지물품이 된다. 아울러 역내선박이 영역(영해) 밖에서 획득한 어획물을 협정에서 인정하는 역내 가공선박에서 가공한 경우 영역 밖 어획물과 동일한 조건에서 완전생산품으로 인정된다.

2. 관세품목분류

관세율표상 제0301호부터 제0303호까지는 우리가 물고기라고 부르는 물에서 살면서 아가미를 가진 척추동물인 어류(fish)가 분류될 수 있는데, 그 분류범위는 조리하지 아니한 생선 즉, 물에서 잡아낸 그대로의 물고기로 제한된다. 따라서 가공한 어류는 세번 제0301호부터 제0303호까지의 분류범위에 포함될 수 없다. 세부적으로 분류품목을 살펴보면, 세번 제0301호에는 산 물고기인 활어(Live fish)가 분류되고, 세번 제0302호에는 어류의 저장상태가 신선하거나 냉장한 것으로 그 분류범위가 제한되며, 세번 제0303호에는 어류의 저장상태가 냉동한 것이 아니면 분류될 수 없다. 관세율표상 제0302호와 제0303호의 분류조건과 관련하여 “어류의 피렛과 기타 어육”은 가공한 어류에 속할 뿐 아니라 세번

제0304호의 용어에서 특정·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기 때문에 세번 제0302호와 제0303호의 분류범위를 벗어나게 된다.

관세율표상 제0304호와 제0305호의 분류조건은 조리하거나 가공한 어류가 해당된다. 이에 따라 세번 제0304에는 “어류의 피렛과 그 밖의 어육”이 분류될 수 있는데, 그 저장상태가 신선·냉장 또는 냉동하지 아니한 것은 분류범위를 벗어나게 되지만⁴⁾ 어류의 성상이 잘게 썰었는지의 여부는 분류조건의 제한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여기에서 ‘피렛(fillets)’은 조리의 한 방법으로 육류 또는 생선의 뼈를 빌라내고 저민 살코기를 말하고, ‘그 밖의 어육’에는 피렛 이외의 방법으로 조리한 생선의 고기가 해당될 것이다.

4) 따라서 조리한 피렛 및 단순히 배터(batter) 또는 뺨가루를 입힌 것(냉동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은 제1604호에 분류된다.

세번 제0305호에는 건조·염장·염수장한 어류, 훈제한 어류, 어류의 고운 가루 (flours)·거친 가루(meals)과 펠리트 (pellets)가 분류된다. 세번 제0305호의 분류조건과 관련하여, 훈제한 어류에 있어서는 훈제과정 또는 훈제 전에 열로 조리한 것인지의 여부를 가리지 아니하고 적용할 수 있으며, 식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어류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와 펠리트는 그 분류범위에 포함될 수 없다.

한편, 냉동어류 제품의 품목분류에서 그 부위에 따라 식용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식용에 부적합한 사료용으로 볼 것인지가 쟁점으로 제기될 수 있다.⁵⁾ 왜냐하면 식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어류 제품은 관세율표상 어류의 웨이스트가 분류되는 세번 제0511호에 분류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하나의 제품이 둘 이상의 품목번호에 분류될 수 있는 경우에는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가 적용될 여지도 있기 때문이다.



5) 주요 사례로는 ▶ 관세청 심사정책과-100060(2007.07.02.)호에서 냉동 참다랑어의 제2 등지느러미 부위를 절단한 것(육 약60%, 가시와 뼈 등 40%로 지느러미 일부는 제거됨)과 냉동 참다랑어의 아가미부위(일부 아가미가 붙어있으나 주로 연골로 이루어짐), 그리고 냉동 참다랑어 아가미부위와 식도가 연결된 부위를 채취한 것(육이 일부 붙어있음) ▶ 관세청 심사정책과-100026(2005.10.11.)호에서 참치(눈다랑어)의 어두에 몸통이 일부 붙어 있는 것을 절단하여 등뼈와 나란히 2등분한 것(가슴지느러미가 있는 부분에서 꼬리 쪽으로 약 7.5CM 정도 절단되었고, 중량은 어두 49.3%, 몸통 50.7%) ▶ 관세청 심사정책과-100020(2005.05.27.)호에서 육(肉)과 물령뼈로 된 홍어의 코 부위를 절단한 것(홍어의 뾰족한 주둥이 끝에서부터 눈 부위까지 절단되었고, 눈, 콧구멍, 입 등은 포함되지 않음)과 눈다랑어의 머리부분을 절단하여 등뼈와 나란히 2등분한 것(가슴지느러미를 컷팅후 중간 부분에서 절단함); ▶ 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과-106334(2006.01.12.)에서 참치(황다랑어)의 꼬리지느러미가 시작되는 부분부터 몸통쪽으로 약 30cm정도 절단된 것(꼬리지느러미가 일부 붙어있고, 육 함량은 약 78%, 뼈함량은 약 22%).

2. 새우류·오징어류 제품

1. FTA 원산지상품의 인정요건

한-미 FTA에서 새우류·오징어류 제품이 원산지상품의 자격을 획득하려면 완전생산 기준(WO)을 충족하지 못하는 한 그 상품은 제03류가 아닌 다른 류에 해당하는 비원산지 재료를 사용하여 한국이나 미국의 영역에서 생산되어야 한다. 하지만 훈제한 새우류·오징어류 제품은 그 제품에 사용된 훈제하지 아니한 관세율표상 제0306호의 새우류 또는 제0307호의 오징어류가 비원산지 재료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제품이 한국이나 미국의 영역에서 훈제되었다면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될 수 있다.

한-칠레 FTA에서 새우류·오징어류 제품이 원산지상품의 자격을 획득하려면 완전생산 기준(WO)을 충족하지 못하는 한 그 상품은 제03류가 아닌 다른 류에 해당하는 비원산지 재료를 사용하여 한국이나 칠레의 영역에서 생산되어야 한다. 따라서 비원산지 생물체를 배아로 이용하여 한국이나 칠레의 영역에서 양식되지 아니한 생선 제품은 원산지상품의 자격을 획득할 수 없다.

한-아세안 FTA에서 새우류·오징어류 제품이 원산지상품의 자격을 획득하려면 한국이나 아세안 회원국(경우에 따라서는 수출 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되어야 한다. 따라서 완전생산기준(WO)을 충족하지 못하는 한 새우류·오징어류 제품은 원산지상품의 자격을 획득할 수 없다. 또한 한-호주 FTA에서도 새우류·오징어류 제품이 원산지상품의 자격을 획득하려면 한국이나 호주의 영역에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완전생산기준(WO)을 충족하지 못하는 한 새우류·오징어류 제품은 원산지상품의 자격을 획득할 수 없다.



2. 관세품목분류

관세율표상 제0306호에는 갑각류(Crustaceans)가 분류된다. 갑각류는 기본적으로는 수중생활을 하며 아가미가 있고 물로 호흡하는 절지동물이다. 몸은 머리·가슴·배로 나뉘고 마디로 되어 있으며, 고등한 종일수록 머리와 가슴이 붙는다. 새우류는 갑각류에 속하므로 세번 제0306호의 분류범위에 포함된다. 세번 제0306호의 분류범위와 관련하여 껍데기가 붙어 있는 것인지의 여부는 그 분류범위의 제한에 상관이 없지만, 갑각류가 살아있지 않거나⁶⁾ 그 저장상태가 신선·냉장·냉동·건조·염장 또는 염수장한 것이 아니라면 세번 제0306호의 분류범위에 포함될 수 없으며, 껍데기가 붙어 있는 상태로 물에 찌거나 삶아서 냉장·

냉동·건조·염장 또는 염수장한 갑각류와 갑각류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와 펠리트(식용에 적합한 것에 한함)는 세번 제0306호의 분류범위에 포함된다.

관세율표상 제0307호에는 연체동물(Molluscs)이 분류된다.⁷⁾ 연체동물은 후생동물의 한 문으로 몸은 머리, 내장, 다리, 외투막의 네 부분으로 되어 있으며, 뼈가 없다. 근육이 풍부하고 대개 석회질로 덮여 있다. 물속에서 아가미로 호흡하고 모두 유성생식⁸⁾을 한다. 오징어류는 연체동물에 속하므로 세번 제0307호의 분류범위에 포함된다. 세번 제0307호의 분류범위와 관련하여 연체동물이 그 형체가 껍데기가

6) 식용(국물용)으로 수입한 흰다리 새우(머리부위만 절단하여 냉동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사료용 등에 사용됨)의 품목분류에서 관세당국은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검사결과 식용에 적합한 것은 “냉동 새우”(HSK 제0306.13-9000호)로 분류하고, 식용에 부적합한 것은 “갑각류(새우) 웨이스트”(HSK 제0511.91-9000호)로 분류한다고 판정하였다(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과-107165, 2006.05.12.).

7) 관세율표상 많은 수산물을 분류학상의 계통적 분류체계인 학명(과·속·종 등)에 따라 분류한다. 그리하여 동일한 범주에 속하는 수산물에 해당함에도 기타 수산물로 분류되어 세율차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런데 분류과학의 발달로 과거에 사용하던 학명이 변경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관세품목분류에서 이에 따른 쟁점이 제기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쟁점이 제기된 품목분류사례를 소개한다.
 ▷ ① 냉동한 창꼴뚜기(Swordtip squid), ② 냉동한 인디안 꼴뚜기(Indian squid), ③ 건조한 한치 꼴뚜기(Mitra squid), ④ 냉동한 대왕오징어(Jumbo flying squid)에 대한 품목분류에서 관세당국은 ①·②·③의 경우 한치 또는 꼴뚜기류로서 현재 *Uroteuthis* 속(屬, Genus)의 종(spp.) 뿐 아니라 *Loligo* 속의 종으로도 명명되고 있으며, ④의 경우 국제기구에서(예: FAO) 동의어로 ‘*Ommastrephes gigas*’를 사용하고 있어, 쟁점물품 4종 모두 ‘*Loligo* 속’과 ‘*Ommastrephes* 속’으로도 칭하고 있으며, 이들 속은 제0304.4호에 열거된 오징어류에 해당됨을 이유로 들어 ①·②·③은 관세율표상 ‘오징어[로리고종(*Loligo* spp.)]’에 해당되고, ④는 관세율표상 ‘오징어[옴마스트레페스종(*Ommastrephes* spp.)]’에 해당되므로 ①·②·④는 냉동한 오징어로 관세율이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를 적용하여 HSK 제0307.49-1020호에 분류되며, ③은 건조한 오징어로 HSK 제0307.49-3000호에 분류한다고 판정하였다(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2과-6955, 2013.09.06.).

8) 유성생식은 생식의 한 가지 방법으로서 주로 암수라고 하는 두 가지 성별을 이용해서 다음 세대에 자손을 남기는 방법을 말한다. 암수 개체는 감수분열을 통해 각각의 생식세포인 배우자(配偶子: gamete)를 만들고 이 두 배우자가 다시 결합하여 접합자(接合子: zygote)가 된다.

붙어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가리지 않지만, 죽은 것이거나 그 저장상태가 신선·냉장·냉동·건조·염장 또는 염수장한 것을 넘어선 조리한 상태라면 더 이상 세번 제0307호의 분류범위에 포함될 수 없다. 하지만 훈제한 연체동물은 세번 제0307호의 분류범위에서 배제되지 않는데, 훈제한 연체동물에 껍데기가 붙어 있는 것인지의 여부와 훈제과정 이전 또는 훈제과정 동안에 조리되었는지의

여부도 묻지 아니한다. 그리고 세번 제0307호의 분류범위에 연체동물의 가루·거친 가루와 펠리트도 포함하고 있는데, 그 전제조건으로 식용에 적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서 ‘훈제’는 소금에 절인 고기를 연기에 익혀 말리면서 그 연기의 성분이 흡수되게 하는 가공법을 말하고, 이러한 가공식품은 독특한 풍미가 있으며 방부성이 있어 오래 저장할 수 있다.



FTA TRADE REPORT



활용하기 쉬운 FTA-PASS

영문 FTA-PASS 서비스

곽재권 | 국제원산지정보원 전산관리팀 팀장



곽재권

국제원산지정보원 전산관리팀 팀장



영문 FTA-PASS 서비스

복잡하고 어려운 원산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
‘FTA-PASS’ 대해 알아봅시다.

이번 호에서는 해외에 진출한 국내기업 사용자 및 체약 상대국에서
한국으로 수출하는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영문 FTA-PASS
서비스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 10월부터 서비스되는 영문 FTA-PASS의 주요 내용

복잡한 원산지규정과 고도의 업무능력을 요구하는 원산지관리를 기업 담당자가 최소한의 지식으로 간편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FTA-PASS를 보급하고 있다. 현재 FTA-PASS는 국내의 수출/제조 기업이 회원으로 가입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해외에 진출한 기업들도 활용할 수 있는 영문 FTA-PASS 서비스가 개시되었다.

10월부터 FTA-PASS 사용 대상을 해외 진출 국내기업과 체약 상대국에서 한국으로 수출하는 기업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영문 서비스를 개시하였으며, 영문 서비스는 시스템 활용 목적에 따라 국내의 기본형과 같은 Standard Ver.과 국내의 간편형과 같은 Light Ver.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번 호에서는 영문 FTA-PASS 서비스의 주요기능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으며, 새롭게 개편한 영문 메뉴별 화면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다.

주요 개선 내용

- **(영문 초기 접속화면)** FTA-PASS 메인 화면에서 Language(KOREAN/ ENGLISH)를 선택할 수 있도록 UI 제공
 - KOREAN을 선택하면 국문서비스, ENGLISH를 선택하면 영문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음
- **(영문 회원가입)** 기업정보 입력에 따른 원산지관리기능 지원
 - 활용유형에 따른 영문 회원가입 입력 항목

Standard Ver.	기업정보 10개(필수 10), 사용자 정보 6개(필수 6)	Light Ver	기업코드, 법인명, TaxID NO, 대표자명, 전화번호, 이메일, 비밀번호
------------------	----------------------------------	--------------	--------------------------------------------

- 가입단계에서 영문 FTA-PASS 활용유형* 선택 지원

* Standard Ver. 및 Light Ver. 중 선택가능하며 사용자를 위한 세부설명 표기

Master	Transaction	Master Data	Determination	Doc	Extra Service	System	Help
Client Product BOM HS CODE Production Proc Client Product	Material price Received Doc Product price	Client BOM	Batch by Product Individual History	Self-Issued C/O Doc Storage Written register	PSR Search HS Linkage Table Statistics	User Info Signature card Authority Configuration Business Info	Notice User Manual FAQ Q&A
Standard Ver.	Light Ver.	공통 서비스					

- **(Rule D/B 영문화)** 원산지판정을 위한 협정별 Rule DB 영문 지원
 - 협정문상의 품목분류 부·류의 주,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등
- **(원산지증명서 발급)** 원산지판정을 기반으로 자율발급 C/O 제공
 - 체약국에서 한국으로 수출하는 해외 진출 국내기업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 판정
 - 자율발급(Self-Issued) C/O 작성 및 서류보관(Doc storage) 기능



2. 세부내용

영문 FTA-PASS 서비스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구분		기능	내용
Light Ver.	Master Data	Client	자사에서 물품구매 매입처나 물품판매 매출처 정보관리
		BOM	완제품, 원재료를 기반으로 자재명세서 구성
Standard Ver.	Master	Client	자사에서 물품구매 매입처나 물품판매 매출처 정보관리
		Product	원산지판정에 필요한 물품정보 관리
		BOM	물품정보에서 등록한 원재료 · 중간재 · 완제품 정보를 기반으로 자재명세서 구성
		HS CODE	자사 물품의 HS코드(세번) 관리
		Production proc	완제품에 대한 생산공정을 등록하여 상세내용 관리
		Client Product	고객사에서 관리하는 물품번호 관리
	Transaction	Material price	원재료에 대한 재료비 관리
		Received Doc	구매한 원재료의 원산지 근거서류 등록 관리
		Product price	완제품에 대한 EXW 및 FOB 가격 등록 관리
Determination		Batch by Product	완제품에 대한 전체협정의 일괄판정 기능
		Individual	완제품에 대한 전체협정의 개별판정 기능
		History	원산지판정이 완료된 완제품에 대한 세부 판정이력 조회
Doc		Self-Issued C/O	자율발급 원산지증명서 발급 기능
		Doc storage	독립적인 자료실로서 자율 원산지증명서 발급과 관련된 서류 보관
		Written register	서류발급과 관련된 증명서 목록 조회 및 출력 관리
Extra Service		PSR Search	FTA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 및 확인서 약어표 확인
		HS Linkage Table	HS 6단위 기준으로 연계표 조회
		Statics	원산지판정결과를 기반으로 다양한 요소별로 통계정보 확인

구분	기능	내용
System	User Info	FTA-PASS를 사용하는 사용자 및 서명정보를 등록하는 화면
	Signature card	서명권자의 서명정보 및 서명이미지 관리
	Authority	FTA-PASS를 사용하는 사용자별 화면접근 권한을 관리하는 화면
	Configuration	FTA-PASS 활용유형 전환(간편형↔일반형)
	Business Info	FTA-PASS를 사용하는 기업정보를 관리하는 화면
Help	Notice	FTA-PASS 관련 공지사항 안내
	User manual	FTA-PASS 사용자 매뉴얼 다운로드 및 주요기능 안내
	FAQ	FTA-PASS 사용과 관련된 자주 묻는 질문
Member Management	English member	영문 FTA-PASS 가입자를 위한 회원가입 관리 기능 - Standard Ver. 사용 : 16개 항목 입력 후 회원가입 - Light Ver. 사용 : 7개 항목 입력만으로 회원가입 ※ 기업코드, 사업자등록번호, 이메일, 비밀번호, 회사명, 사용자명, 연락처



3. 영문 FTA-PASS 서비스 이용절차

영문 서비스 활용유형에 따른 이용절차는 아래와 같다.

구분	Light Ver.(간편형)	Standard Ver.(기본형)	설명
비회원 서비스	FTA-PASS 사이트 접속(Language English 선택)		▪ 서비스 이용을 위한 사이트 접속
	[FTA-PASS 체험 및 HS정보조회]		
	원산지 간편판정 서비스, 원산지결정기준, HS연계표 (17→12→07) 조회,		▪ 최소한의 정보로 원산지 판정 기능을 체험해 볼 수 있는 서비스
회원 서비스	[회원가입]		▪ 회원가입
	필수 입력항목 7개	기업 및 사용자정보 16개	- 회원유형에 따라 7개~16개까지 정보 입력 후 영문 회원가입 진행
	[지원 서비스]		▪ 부가 서비스부터는 회원가입 필요
	활용통계		
	[정보등록 I]		▪ 정보등록 I - 원산지판정을 수행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엑셀양식을 작성하여 원산지정보 등록
	엑셀 2종	엑셀 7~9종	
	[원산지 판정]		▪ 원산지판정 - 수출(공급) 물품에 대한 원산지판정
	FTA 협정별 원산지판정		
회원 서비스	[정보등록 II]		
	기업정보 추가 입력 사용자(서명권자) 정보	없음	▪ 정보등록 II - 증명서류 발급을 위해서는 기업정보 및 사용자정보 추가 입력 필요
	[증명서류 작성 · 발급]		▪ 증명서류 발급
	FTA증명서(자율) 문서보관 / 작성대장		- 원산지증명서류 발급 · 원산지증명서 · 기타

※ 참고. 영문 FTA-PASS 활용유형

사용자는 기업환경에 따라 회원가입 시 선택 가능하며 이용 중에도 변경 가능하다.

Basic form	Export (Use inventory management feature)	<ul style="list-style-type: none"> Using method for inventory management (monthly weighted average, moving average, First-In First-Out) to calculate the cost of materials <p>-Information management: Origin information, purchase ledger, sales ledger, export department, Information management by FTA (13 Excel types) -Printing format: FTA certificate of origin (organization/ autonomous), declaration of origin, declaration of inward processing, origin verification questionnaire, material specification, production process drawing, register written, signature card</p>
	Export / Domestic supply (Inventory management feature unused)	<ul style="list-style-type: none"> Origin management by using cost of material that user has defined <p>-Information management: Origin information, purchase unit price, unit sales price (9 Excel types) -Printing format: FTA certificate of origin (organization/ autonomous), declaration of origin, declaration of inward processing, origin verification questionnaire, material specification, production process drawing, register written, signature card</p>
Simple form	Domestic supply (Small business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Minimal information and effort for managing origin <p>-Information management: Client, material specification (2 types of Excel) -Output form: FTA certificate of origin (autonomous), declaration of origin, declaration of inward processing, origin verification questionnaire, register written, signature card</p>
Experiential form	Determination of origin (Simul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Trial determination by entering minimum information without signing in <p>-After entering material specification (BOM) of exported(supplied) product proceed judgement of origin</p>

Standard Ver. 및 Light Ver. 활용절차는 다음과 같다.

[Standard Ver.]

- 사용 초기에 원산지정보(Master, Transaction)를 모두 입력해야 원산지관리 업무 수행 가능

* FTA-PASS는 제조 · 수출자 등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Supply Chain 전반에 걸친 원산지관리를 지원하고자 기능 확장을 고려하여 설계

- 업무 메뉴(기준정보, 거래정보) 단위로 각각 원산지 정보 입력 후 원산지판정 및 서류발급, 보관 등 원산지관리 전반 수행
- 원산지 정보 변경 시 최소한의 업데이트만으로 이력관리 가능
- 자율발급 C/O 신청, 원산지검증대응 자료 관리 등 FTA-PASS 주요 기능 활용 가능

[Light Ver.]

- Light 버전 가입 후 활용목적*에 따른 단계별 정보를 추가 입력하여 원산지관리 업무 수행

* 회원가입→정보조회→원산지정보 등록→원산지 판정→증명서류 발급

- 단일 원산지 정보(기업 BOM) 입력 후 원산지 판정 및 서류발급까지 기본적인 원산지관리 업무 수행
- 기업의 원산지 정보 변경 시마다 기업 BOM 변경 필요

[Trial Ver.]

- FTA-PASS 잠재 고객이 회원가입 없이 원산지판정 경험 가능

4. 맷음말

지금까지 10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영문 FTA-PASS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FTA-PASS의 영문 서비스를 통해 해외 진출 국내 기업과 체약 상대국에서 한국으로 수출하는 기업들이 폭넓게 활용해 볼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국제원산지정보원에서는 FTA-PASS 활용기업을 위해 원격지원 및 현장방문 지원, 품목분류(HS)자문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으니 활용애로가 발생할 경우 언제든지 문의해주시면 감사하겠다.

▣ FTA-PASS 상담문의

이메일	fta-pass@origin.or.kr	Q&A	인터넷 상담문의 [도움말 > Q&A]
팩스	031-600-0704		
콜센터	1544-0645 (문의시간 : 평일 09:00~18:00)	FAQ	자주묻는질문 [도움말 > FAQ]

FTA TRADE REPORT



원산지관리, 현장의 목소리

**중소기업의 FTA 활용 역량강화를 위한
내부 프로세스 정립 팁(Tip)**

신성훈 | 관세법인 드림 관세사



신성훈
관세법인 드림 관세사

중소기업의 FTA 활용 역량강화를 위한 내부 프로세스 정립 팁(Tip)

원산지 관리업무를 단계별로 목표를 세우고 내부 관리체계를 확보해나가면서 부족한 부분을 강화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FTA 원산지 관리업무를 반강제적이고 부수적인, 고객에 대한 서비스 차원의 업무로만 치부할 것이 아니라, 내부 역량강화를 통하여 하나의 실질적인 매출증대방안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할 시점이다.

1. 들어가는 글

“FTA 강국, 대한민국”, “FTA 경제영토 확장으로 수출길 활짝”

주요 포털사이트에 “FTA” 세글자만 검색 하여도 볼 수 있는 헤드라인이다. 이렇듯 우리나라의 FTA 체결은 나날이 확대되고 있다. 올해 한-중미 FTA가 발효되었고, 최근에는 세계최대 자유무역협정인 역내포괄적 경제 동반자협정(RCEP)이 타결되는 등 그간의 적극적인 FTA 추진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FTA 교역은 향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따른 우리나라 수출기업의 FTA 활용률 또한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관세청 통계에 따르면 전체 FTA 발효국으로의 수출실적 대비 실제 FTA 활용실적은 2016년 63.8%, 2017년 70.0%에서 2018년에는 73.5%에 이르는 등 지표상으로 보여지는 FTA 활용률은 향후에는 FTA 활용 없는 수출은 불가능해 보일 정도로 활발하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실무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수치가 먼나라의 이야기로 들릴 수도 있다. 실제로 기업규모에 따른 세부지표를 놓고 보면 이야기가 다르다. 중소기업이 우리나라의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 내외로 매년 큰 변화가 없는 상황이다. 또한 중소기업의 FTA 활용률은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에 비해 전반적으로 낮은 편이며, 특히 중소기업의 수출은 FTA 발효국 중 중국, 베트남 등 아시아 지역에 60% 이상 집중 되어 있고, 그 외 FTA의 활용률은 답보 상태 이거나 오히려 감소세가 나타나기도 한다.

그렇다면 FTA가 나날이 확대되고 있는 오늘 날의 무역환경에서 정작 중소기업의 FTA 활용 수출은 정체되고 있는 이러한 괴리는 어떤 이유에서 오는 것일까? 이하에서는 중소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에 대하여 짚어보고, FTA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한 내부 프로세스 정립 팁(Tip)을 소개하고자 한다.



2. 중소기업의 FTA 활용 애로

① “FTA를 활용하면 좋은데, 왜 안하시죠?”

“해외바이어에게서 요청도 없고, 우리회사가 얻는 이익도 없는데 굳이 먼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 줄 필요가 있나요?”

중소기업이 FTA를 활용하는 가장 큰 요인 중의 하나는 “고객이 요청해서”일 것이다. FTA를 통한 관세혜택은 해외수입자가 받는 것이지, 관세환급처럼 직접적으로 수출기업에 금전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부분이 없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그렇기 때문에 선제적인 FTA를 활용한 고객 유인, 협정관세 혜택의 제공을 통한 거래관계 향상 및 수출확대 등 FTA를 활용한 각종의 혜택은 현업에 치이는 실무자의 입장에서는 먼저 다가가기 힘든 부분인 것이다.

② “원산지 관리는 왜 안하고 계시죠?”

“시간도 없고, 사람도 없고, 다른 업무로 바쁜데 FTA까지 해야하니 여력이 없네요.”

중소기업의 FTA 활용은 대부분 해외바이어의 관세혜택을 위한 원산지증명서의 요청과, 국내 고객사의 원산지 판정을 위한 원산지 확인서의 요청에 건건이 대응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또한 기업의 규모가 작으면 작을수록 영업부서에서 구매업무까지 담당한다던지, 구매부서에서 생산이나 품질 관련 업무까지 담당하는 등 1명의 실무자가 여러 부서의 업무를 겸업

하는 경우가 흔하게 나타난다. 즉, 현업에 치이고 여건이 되지 않아 FTA 원산지 관리를 등한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원산지증명서나 원산지 확인서와 같은 증명서류만 고객에게 제공할 뿐, 정작 중요한 원산지 지위의 정합성 측면이나 증명서의 효력을 담보할 수 있는 소명서류의 관리 등 실질적인 관리가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③ “원산지 검증에 대비한 증빙서류 관리가 필요합니다.”

“관세혜택은 해외수입자가 받는 건데, 수출한 우리 회사도 처벌받나요?”

대부분의 중소기업에서는 원산지 검증에 대한 처벌 규정에 대하여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물론, 수출검증 시 일부 간접 검증의 경우에는 미미한 오류사항에 대해서는 자국민 보호 차원에서 행정지도, 권고 정도의 처분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수출물품에 대하여 근거없이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원산지 검증 시 고의성과 무관하게 과태료 등의 처벌이 따를 수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 실무자는 이러한 처벌규정 및 원산지 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자체가 부족한 경우가 대다수이다.



3. FTA 활용 역량강화를 위한 내부 프로세스 정립 팁(Tip)

① FTA 활용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FTA는 이를 활용하는 기업에서 이벤트성 업무가 아닌, 하나의 상시적인 업무로 자리 잡아야 한다. 모든 기업에서는 법인세, 부가 가치세 등의 세목에 대한 정확한 신고납부를 위하여 세무·회계 부서에서 정보를 축적하고 관리하고 있다. FTA 또한 수출자가 제공한

원산지증명서에 의해서만 납세의무자가 관세혜택을 제공받게 되므로, 유지·보수가 필요한 하나의 업무에 해당한다. 즉, 정확한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위한 원산지 관리 업무는 기업에서 담당해야 할 하나의 일상적인 업무로 인식되어야 한다.

② 원산지 “증명”이 아닌 원산지 “관리”에 초점을 맞추자.

FTA 관세혜택은 원산지증명서라고 하는 종이서류 한장으로 이루어진다. 즉, 수입 당시에는 수출자가 보내온 원산지증명서의 형식적 요건에 하자가 없고, 정확한 신고 행위만 있다면 충분히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는 FTA 협정문 이하 관련 법령이 사후조사의 체계를 갖추고 있기 때문이며, 원산지의 적정성에 대한 조사 및 검증은 대부분 수입통관 이후에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FTA 활용은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여 고객으로 하여금 당장의 관세혜택을 받게 하는 “발급 행위”에 급급한 경우가 많고, 실제로 원산지가 적정한지, 증명서류는 정확하게 발급된 것인지 등의 “관리 행위”에 대해서는 소홀한 경우가 많다.

그러나 세관의 원산지 검증 통지서를 받아 보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실제로 사후검증 대응 컨설팅을 나가보면 준비된 자료가 거의 없고, 모든 원산지 증빙서류를 새로이 만들어야 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운좋게 한국산으로 확인된 경우라면 각종의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기한 내에 제출하면 되지만, 만에 하나 한국산으로 인정될 수 없는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된 경우라면 전문가의 손길도 치별을 막을 방도가 없다.

이렇듯 현시점에서의 FTA 활용은 당장의 원산지증명서만 건건이 발급할게 아니라, 실제로 수출물품이 적정한 원산지 지위를 갖는지에 대한 원산지 관리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③ 원산지 판정을 위한 모든 자료는 기업 내부에 있다.

FTA의 활용은 서류로서 원산지를 입증해 나가는 절차라 할 수 있다. 거래당사자 간에 원산지 정보를 주고 받는 경우, 사후검증 등 실질적인 원산지를 소명해야 할 경우 등 어느 경우에나 모두 서류로서 원산지를 입증해야 한다.

이러한 FTA 원산지 판정과 소명서류의 작성에 필요한 대부분의 정보는 기업 내부에 존재하고 있는 데이터이다. 즉, FTA 원산지 판정은 거창하게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작업이 아닌, 기업 내부에 산재되어 있는 데이터(매출, 구매, 생산, 회계 등)를 하나로 취합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④ 인력의 부족은 협업으로 극복하자.

가장 이상적인 기업의 FTA 원산지 관리 방법은 FTA 전담부서와 관련 자격을 갖춘 전담인력을 구성하는 것이지만, 중소기업은 전담부서는 커녕 전담인력을 채용하거나 양성시키는 것 자체가 현실적인 여건 상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차선책으로 최소한 FTA 실무교육을 정기적으로 이수하는 원산지관리담당자 1인은 지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원산지 판정에 필요한 정보(기본적으로 매출, 구매, 생산 관련 데이터)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해당 정보를 관리하는 부서 및 담당자를 확인하여

필요한 정보만을 정기적으로 요청하는 방법이 있다. 아무리 현업에 바쁘다 하더라도 원산지 판정에 필요한 데이터는 생각보다 많은 가공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협업을 통한다면 부서별로 제공해야 할 정보의 양이나 업무에 투입되는 공수는 현업에 과도한 부담이 될 만큼은 소요되지 않을 것이다.



⑤ 정확한 HS CODE의 확정은 FTA 활용의 8할이다.

정확한 품목분류(HS CODE)를 확정한다면 FTA 활용을 위한 80%의 업무처리가 완성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품목 분류 또한 법령에 근거한 분류기준을 명확히 판단해야 하고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중소기업 실무자 입장에서 가장 난해하고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이며,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 부분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품목분류 사전심사 등의 제도를 통해 충분한 근거를 확보할 수 있다. 해당 제도는 관세당국에 품목분류를 질의하여 법적 효력이 있는 HS CODE를 회신받는 제도로써, 신청서와 물품설명서, 필요시 물품 견본의 제출을 통해 어렵지 않게 HS CODE를 확정지을 수 있다.

다만, 부품 및 원재료의 종류가 방대하게 많아서 일일이 물품별로 품목분류 사전 심사를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기능과 용도, 재질 및 성분이 동일한 물품을 하나의 카테고리화 하여 대표 물품에 대하여 신청하는 방법이 있다. 품목분류의 법령 체계상 동일한 기능과 용도에 사용되고, 재질과 성분이 동일하다면 동일한 HS CODE로 분류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동종동질의 물품에 대하여 충분한 분류근거를 확보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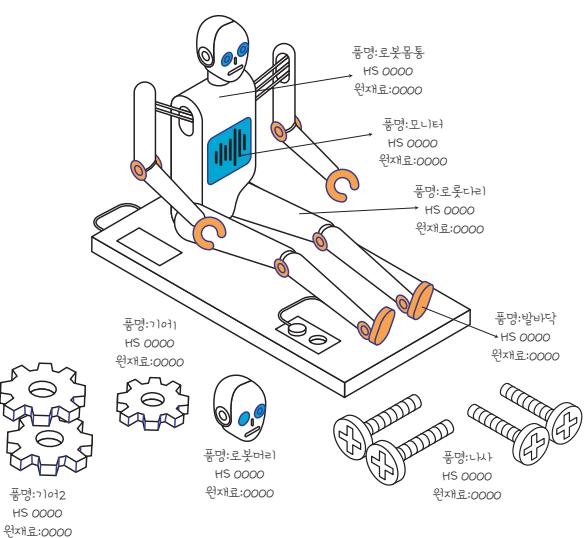
HS CODE의 확정은 첫째, 해당 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 및 정확한 원산지 결정 기준을 특정하기 위함이고, 둘째로는 세번 변경기준의 판정근거로 사용하기 위함이다. 한-인도 CEPA와 특정 산업군(화학, 자동차 부품)에 부가가치기준이 적용되는 일부 협정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세번변경기준이 가장 많이 적용되고 있으므로, 정확한 품목 분류 근거의 확보는 FTA의 활용을 위한 80%의 완성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⑥ 원산지 이력관리의 핵심은 BOM이다.

원재료명세서(Bill of Materials)는 원산지 판정의 가장 기초가 되면서 실질적으로 원산지 검증 시 가장 중요한 근거자료가 된다.

많은 중소기업에서는 제품의 설계 및 개발 당시에 작성된 개발 BOM 또는 표준 BOM을 원산지 판정에 적용하고 있으나, FTA 원산지 판정에 필요한 BOM은 실제로 생산 당시에 어떤 공급업체로부터 매입한 어떤 부품이 얼마만큼 사용되었는지가 확인될 수 있는 실적 BOM이 필요하다. 개발 BOM이나 표준 BOM은 일반적으로 제품의 설계, 디자인, 개발 계획 단계에서 파생된 정보가 담기기 때문에, 실제 원재료의 수급, 공급업체, 소요량 등 제품 생산 단계에서 파생된 정보와 차이가 발생하기 마련이다.



예컨대, 화학물질을 제조하는 기업의 경우, 실제로 투입된 원재료의 소요량이 아닌 성분 표에 근거한 함량을 원산지 판정에 적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 특히 부가가치 기준의 판정에 있어서 동일한 제품에 대한 판정 결과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생산 현장에서 일부 원재료를 대체 가능한 다른 원재료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도 해당 원재료의 원산지 지위 여하에 따라 완제품의 원산지가 뒤바뀔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실제로 원산지 검증 시에는 BOM과 작성의 근거가 되는 소명서류(원재료 매입데이터, 수불내역, 거래증빙서류 등)들의 상호간 연계성 및 적정성을 검증하게 되므로 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이러한 이유로 표준 BOM만을 관리하는 중소기업에서는 생산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실적 BOM과 표준 BOM의 차이를 월별로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좋다. 상기 예시와 같이 생산팀에서 투입 원재료와 소요량을 일시적으로 변경하는 이벤트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이 발생하는지 여부를 월별로 체크하여 원산지 판정 시 반영하고 이력관리를 수행해야 한다.



⑦ 단계별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한다.

FTA 원산지 관리업무는 ①원산지 판정 단계, ②원산지증명서 발급 단계, ③원산지 이력관리 단계 등 크게 세 가지 단계로 구분된다.

첫째로, 원산지 판정 단계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기업 내부에 산재되어 있는 원산지 판정을 위한 정보를 취합하여 정확한 원산지를 판단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매출정보(판매가격 및 운송료 등 부대비용 정보 등), 생산정보(생산일자, 실적 BOM에 따른 원재료 투입내역 및 소요량 정보 등), 구매정보(원재료 매입일자, 매입단가, 공급업체, 수불정보 등)가 필요하며, 부가적으로 원재료의 원산지 정보와 HS CODE의 확정이 필요하다. 둘째로, 원산지증명서 발급 단계는

고객이 요청하는 증명서류 상에 형식적 요건 등의 하자가 없도록 발급하는 단계이다. 셋째로, 원산지 이력관리 단계는 고객에 발급한 원산지증명서에 대한 실질적인 판정내역과 원산지의 정합성에 대한 히스토리를 관리하는 단계이다.

중소기업의 원산지관리담당자가 상기의 원산지 관리 단계에 따른 정확한 인지를 통해 업무를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원산지 관리 또한 사람이 하는 일이고, 가령 시스템을 활용한다 하더라도 판정내역의 검토 등 사람의 판단이 반드시 수반되기 때문에 어느 단계에서든 휴먼 에러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건강검진과 같이 우리 회사의 원산지 관리 각 단계에서 확신이 없는 부분이 어디 인지, 미흡한 부분이 어디인지를 진단하여 부족한 부분을 정확히 판단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중요하다.

물론, FTA 활용 전 단계에 걸쳐 전문가의 종합컨설팅을 받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관리 방법이라 할 수 있으나, 중소기업 실무자의 입장에서는 회사의 매출과 영업이익에 직결되지 않는 FTA 업무에 많은 비용을 투입하거나 대표자의 결재를 득하는 것 또한 쉽지 않은 일이다.

따라서 부족한 부분에 대한 정확한 진단 하에 선택적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예를 들어 세번변경기준만이 적용되는 협정을 활용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품목분류의 정합성을 검증하는 조력을 구한다던지, 기본적인 관리체계가 갖춰진 기업의 경우에는 원산지판정시스템을 도입하여 원산지 관리 수준을 한층 업그레이드 하는 등 선택적으로 부분적인 조력을 구하는 방법이 있다. 또한, 정부 예산으로 집행되는 교육, 컨설팅 등의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다.

4. 마치는 글

기업에서 발생하는 어떠한 업무든 하루 아침에 뚝딱 체계가 잡혀서 원활하게 돌아가는 일은 없을 것이고, 새롭고 생소한 업무는 언제나 시행착오를 겪기 마련일 것이다. 또한 기업의 모든 업무가 매출신장과 영업 이익으로 직결되지는 않는다. 이렇듯 원산지 관리업무 또한 단계별로 목표를 세우고 내부 관리체계를 확보해나가면서 부족한 부분을 강화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FTA 활용의 효과가 기업의 영업적인 측면에서 즉각적으로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고 하여, FTA 원산지 관리업무를 반강제적이고 부수적인, 고객에 대한 서비스 차원의 업무로만 치부할 것이 아니라, 내부 역량강화를 통하여 하나의 실질적인 매출증대방안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할 시점이다.

FTA 활용 UP!!

국내유일의 원산지 전문기관, 국제원산지정보원

국제원산지정보원은 FTA시대의 핵심과제인 “국내외 원산지 정보관리”를 위해 설립된

국내유일의 원산지정보 수집·분석 전문기관입니다.

이제 국내를 넘어 세계적인 FTA전문기관으로 도약하겠습니다.



국제원산지정보원

대표전화 ☎ 031.600.0701~3
www.orgin.or.kr

FTA 무역리포트

Vol.04 December 2019

(비매품)

발 행 일 2019년 12월

발 행 처 관세청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1304호

TEL : 042)481-3282 / FAX : 042)481-7753

<http://www.fta.customs.go.kr>

국제원산지정보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205번길 8

TEL : 031)6000-701~3 / FAX : 031)6000-704

<http://www.origin.or.kr>

편 집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관실

국제원산지정보원

디자인·인쇄 화신문화(주)

발간등록번호 11-1220000-000342-08

「FTA 무역리포트」에 게재된 글은 저자의 견해로 발행처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보내는 사람

주소

이름

연락처

E-mail

우표

받는 사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205번길 8 성남세관
5층 국제원산지정보원

FTA 무역리포트 담당자 앞

1 | 3 | 5 | 0 | 3

FTA TRADE REPORT

독자의 소리

〈FTA 무역리포트〉 독자의 소리를 2020년 3월 20일까지 보내주세요.
의견이 채택되신 분에게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FTA 무역리포트〉를 보신 소감을 적어 주세요.



〈FTA 무역리포트〉에서 가장 좋았던 부분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FTA 무역리포트〉에서 다루었으면 하는 내용을 알려주세요.





yesfta.customs.go.kr
ftapass.or.kr

관세청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Tel. 042-481-3282 Fax. 042-481-7753

국제원산지정보원

13503,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205번길 8(야탑동 성남세관 5층)
Tel. 031-600-0701~3 Fax. 031-600-0704